| 발간등록번호 |
| --- |
| 11-1620000-000262-01 |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연 구 기 관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김 상 균

2010년 10월

국가인권위원회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0. 10.


연구기관 :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0. 4. 1 - 2010. 10. 18
연구책임자 : 김 상 균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송 병 호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나 달 숙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조 용 철 (백석대학교 법정학부 교수)
노 호 래 (군산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 승 철 (혜천대학 경찰행정학과 교수)

# <요 약 문>


1. 서 론

○ 민간부분 CCTV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법률적/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됨

○ 민간부분 CCTV 설치 실태에 관한 현장조사의 필요성
-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등의 시설에 설치된 CCTV 현장조사 연구의 내용
- 민간부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연구의 내용

2. 이론적 논의

○ CCTV의 개념과 기능에 관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됨
- 범죄예방 및 사고발생 시 관련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긍정적 기능이 있으나,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은 현실임

○ CCTV의 기술과 성능이 발달함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심각함
- 공공기관은 약 24만대, 민간부분은 약 250만대 설치된 것으로 추정됨
- 적외선 촬영(야간촬영), 줌기능(가시거리, 해상도), 팬틸트기능(상하좌우 회전), 핀홀카메라(초소형으로 은닉가능), 차량용 카메라 등 일상생활 곳곳에 설치됨

○ CCTV 설치에 관한 국내외 관계법률 및 추세
- 영국, 미국, 일본 등에서는 CCTV 설치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및 규제 강화
-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실태가 미흡한 상황임

3. 민간부분 CCTV 조사분석 및 결과

○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CCTV 실태조사
- 수도권 및 지방소재 목욕탕, 찜질방 420여개 시설을 현장방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시설 중 약 70%가 CCTV를 설치하고 있었음

- 주로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 찜질방 공용부분 등에 CCTV가 설치되었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탈의실(락카 주변), 수면실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

○ 민간부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대학생, 일반인 등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1일 평균 60여회에서 110여회까지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상업시설, 주거시설(아파트단지),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CCTV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었으며, CCTV의 촬영거리, 촬영각도, 촬영주체 등에 따라 사생활 침해적 요소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음

4. CCTV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의

○ 헌법상 사생활불가침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고찰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불가침에 관한 의미는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인정보의 분류를 종합해 보면,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개인의 영상정보는 기본권적 침해의 주요 요소로 분류할 수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의 및 관련 과제

- 개인정보보호법은 국제적인 논의를 통하여 이미 1990년대부터 EU 등에서 민간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발전해왔음
-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은 현행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는데 의의가 있음

5.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해결과 개선방안

○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

- CCTV에 촬영 및 기록되는 개인정보는 프라이버시권 침해, 초상권 침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현실임
- 민간설치 CCTV의 경우 개인의 권리 침해시 구제방안이 미흡하고 각종 손해

배상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규제가 요구됨

- 관련 판례를 통하여 CCTV 설치에 따른 기본권 침해의 법률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음

○ CCTV 기본권 침해에 관한 개선방안

- 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의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신체가 노출되는 탈의실 및 수면실 등에 설치가 불가능한 바, 정기적인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체제 구축이 요구됨
- 민간부분 CCTV의 공적영역 투영과 관련하여 촬영주체 및 촬영대상자에게 고지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함
- 이를 위하여 국제적인 가이드라인 등을 참조하여 CCTV설치에 따른 기본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제정할 필요가 있음

○ 결 론

- CCTV에 순기능과 함께 역기능을 함께 인식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 기본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국제적인 지침과 관련 규정에 입각하여 CCTV에 관한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목 차

제1장 서 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2
1. 연구의 내용 ····· 2
2. 연구의 방법 ····· 3

제2장 이론적 논의 ····· 5
제1절 CCTV에 대한 논의 ····· 5
1. CCTV의 개념 ····· 5
2. CCTV의 기능 ····· 6
3. CCTV의 기술 및 특징 ····· 12
제2절 외국의 CCTV 현황 ····· 22
1. 영국 ····· 22
2. 독일 ····· 24
3. 일본 ····· 25
제3절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26
1. CCTV 설치현황 ····· 26
2. CCTV에 대한 시민인식 ····· 29
3. CCTV의 관련법규 ····· 30

제3장 민간부분 CCTV 조사분석 및 결과 ····· 37
제1절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CCTV 실태조사 ····· 37
1. 조사설계 ····· 37
2. 조사결과 ····· 38
제2절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74
1. 조사설계 ····· 74
2. 조사결과 ····· 74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94

제4장 CCTV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의 ····· 101
제1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논의 ····· 101
1. 사생활불가침과 개인정보보호 ····· 101
2. 개인정보의 분류와 보호범주의 확대 ····· 104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의 현황 ····· 108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 108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논의 ····· 110
3.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에 대한 논의 및 과제 ····· 114
제3절 CCTV 관련기관의 의견 ····· 115
1. CCTV와 개인정보 권리 관련 ····· 115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관련 ····· 117

제5장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 ····· 119
제1절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 119
1. CCTV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전제 ····· 119
2. CCTV와 기본권침해 ····· 121
3. 민간설치 CCTV의 기본권 침해 해결 ····· 123
제2절 CCTV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 133
1. CCTV 관련 법규의 정비 ····· 133
2. CCTV의 제한 및 관리 운용 ····· 135
3. CCTV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 137

제6장 결 론 ····· 139

참 고 문 헌 ····· 141

부 록 ····· 146

# 표 목 차

<표 2-1> 방범용 CCTV 운용실적 ····· 8
<표 2-2>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장소 ····· 22
<표 2-3> 설치기관별 분류(2009년 4월 기준) ····· 27
<표 2-3-1> 설치목적별 분류(2009년 4월 기준) ····· 27
<표 2-4> 지방청별 방범용 CCTV설치 현황(2009년 8월 기준) ····· 28
<표 2-5> 자치제 CCTV설치 현황(2009년 4월 기준) ····· 28
<표 2-6> CCTV 설치관련 언론기관 여론조사 ····· 29
<표 3-1> 조사대상의 시설유형과 남·여탕 및 지역의 빈도 ····· 38
<표 3-2> 조사대상목욕시설의 CCTV설치유무 ····· 39
<표 3-3> 조사대상목욕시설의 유형별 CCTV설치유무 ····· 40
<표 3-4> 조사대상 남여목욕시설별 CCTV설치유무 ····· 41
<표 3-5> 조사대상 목욕시설 내 CCTV설치장소 ····· 42
<표 3-6>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출입문 CCTV설치현황 ····· 44
<표 3-7>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신발장 CCTV설치현황 ····· 44
<표 3-8>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카운터 CCTV설치현황 ····· 45
<표 3-9>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탈의실 CCTV설치현황 ····· 46
<표 3-10>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화장실 앞 CCTV설치현황 ····· 47
<표 3-11>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목욕실 CCTV설치현황 ····· 47
<표 3-12>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복도 CCTV설치현황 ····· 48
<표 3-13>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수면실 CCTV설치현황 ····· 49
<표 3-14>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발한실 CCTV설치현황 ····· 50
<표 3-15> 1차 조사대상 중 CCTV설치 고지유무와 고지 장소의 수 현황 ····· 50
<표 3-16> 1차 조사대상 중 인권침해우려장소의 CCTV설치현황 ····· 51
<표 3-17>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출입문 CCTV설치현황 ····· 52
<표 3-18>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신발장 CCTV설치현황 ····· 53
<표 3-19>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카운터 CCTV설치현황 ····· 53
<표 3-20>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탈의실 CCTV설치현황 ····· 54
<표 3-21>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화장실 앞 CCTV설치현황 ····· 55

<표 3-22>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목욕실 CCTV설치현황 ····· 55
<표 3-23>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찜질방 공용시설 CCTV설치현황 ····· 56
<표 3-24>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수면실 CCTV설치현황 ····· 57
<표 3-25>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발한실 CCTV설치현황 ····· 58
<표 3-26> 2차 조사대상 중 CCTV설치 고지유무와 고지 장소의 수 현황 ····· 58
<표 3-27> 2차 조사대상 중 인권침해우려장소의 CCTV설치현황 ····· 59
<표 3-28> 목욕시설 유형별 CCTV설치 차이분석 ····· 61
<표 3-29> 출입문의 사후분석 ····· 62
<표 3-30> 신발장의 사후분석 ····· 63
<표 3-31> 카운터의 사후분석 ····· 63
<표 3-32> 화장실의 사후분석 ····· 63
<표 3-33> 발한실의 사후분석 ····· 64
<표 3-34> 탈의실의 사후분석 ····· 64
<표 3-35> 인권침해장소의 사후분석 ····· 65
<표 3-36> 고지유무의 사후분석 ····· 65
<표 3-37> 설치유무의 사후분석 ····· 66
<표 3-38> 지역구분과 탈의실의 교차분석 ····· 67
<표 3-38-1> 지역구분과 탈의실의 카이제곱 검정 ····· 67
<표 3-39> 지역구분과 화장실의 교차분석 ····· 68
<표 3-39-1>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카이제곱 검정 ····· 68
<표 3-40>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교차분석 ····· 68
<표 3-40-1>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카이제곱 검정 ····· 69
<표 3-41> 지역구분과 CCTV설치유무의 교차표 ····· 70
<표 3-41-1> 지역구분과 CCTV설치유무의 카이제곱 검정 ····· 70
<표 3-42> 성별과 탈의실의 교차표 ····· 71
<표 3-42-1> 성별과 카운터의 카이제곱 검정 ····· 71
<표 3-43> 성별과 인권침해장소유무와의 교차표 ····· 72
<표 3-43-1> 성별과 인권침해장소유무와의 카이제곱 검정 ····· 72
<표 3-44> 성별과 고지유무와의 교차표 ····· 73
<표 3-44-1> 성별과 고지유무와의 카이제곱 검정 ····· 73

<표 3-45> A 남학생, 방학중 실습장소 중심 CCTV 노출실태 ····· 75
<표 3-46> B 여학생, 강남구 쇼핑몰 중심 CCTV 노출실태 ····· 77
<표 3-46-1>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1) ····· 78
<표 3-46-2>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2) ····· 79
<표 3-46-3>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3) ····· 80
<표 3-47> D 직장인, 출퇴근장소 중심 CCTV 노출실태 ····· 82
<표 3-48> E 직장인, 직장 및 주거지역 중심 CCTV 노출실태 ····· 83
<표 3-49> F 주부,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중심 CCTV 노출실태 ····· 84
<표 3-50>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OECD) ·· 99
<표 4-1> 개인정보 분류표 ····· 107

# 그 림 목 차

<그림 2-1> 최신 CCTV의 기술과 성능 사례 ····· 13
<그림 2-2> IP카메라 시스템 영상처리과정 ····· 14
<그림 2-3> 웹상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1) ····· 15
<그림 2-4> 웹상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2) ····· 16
<그림 2-5> 스마트폰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1) ····· 17
<그림 2-6> 스마트폰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2) ····· 18
<그림 2-7> CCTV의 주요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1) ····· 19
<그림 2-8> CCTV의 최신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2) ····· 20
<그림 3-1> 대학생 사례연구 CCTV 주요사진 ····· 81
<그림 3-2> 일반인 사례연구 CCTV 주요사진 ····· 85
<그림 3-3> 일반인 동선중심 CCTV 주요사진 ····· 87
<그림 3-4> CCTV 촬영거리 사례 ····· 91
<그림 3-5> CCTV 촬영각도 사례 ····· 92
<그림 3-6> CCTV 촬영주체 사례 ····· 92
<그림 3-7> 상업지역의 CCTV 설치사례 ····· 94
<그림 3-8> 주거지역의 CCTV 설치사례 ····· 96
<그림 3-9> 대중교통시설의 CCTV 설치사례 ····· 97
<그림 4-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 110
<그림 4-2> 개인정보보호법 체계표 ····· 111

# 제1장 서 론

## 제1절 연구의 목적

CCTV에 의한 감시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CCTV가 범죄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적인가에 대한 논쟁은 계속 중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공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에 설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입장은 CCTV를 범죄예방에 활용하면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적절한 법적 규제가 요구된다는 관점이다.

현재 CCTV를 규제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250만대 이상의 민간 부문 CCTV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생활침해의 심각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법률적/제도적 보완장치가 요구된다 하겠다. 특히 목욕탕과 같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공간에도 CCTV를 설치하여 공중위생법을 위반하고 있음에도 이를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서 CCTV를 설치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상쇄된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설치한 CCTV가 공적인 영역을 비추더라도 사생활 침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낮아 일반시민들의 인식의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CCTV 설치와 운용의 문제가 우리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서가 범죄예방과 수사를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통행인들의 초상과 동작을 촬영할 뿐만 아니라 설치되는 CCTV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서 비롯되었다. 범죄예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것이고, 공공장소에까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에 반해 인권보호를 중요시하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위험성이 있고, 개인의 생체정보를 무작위로 수집하여 악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제한되거나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부분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한 찬반논의는 범죄예방 목적과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어느정도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아직도 민간부분에 설치되는

CCTV에 대해서는 인권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등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대한 기초조사는 아직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으며, 민간 설치 CCTV의 공적 영역 투영 실태 조사 또한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시민들의 CCTV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제도적 보완을 위해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앞으로 민간부분 CCTV 관리에 요구되는 법률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1.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CCTV의 활용과 관련하여 범죄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간부분에 설치된 실태를 조사하고 CCTV의 사생활 침해 해소방안, CCTV 설치 및 기능상의 해소방안을 찾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CCTV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방범용 CCTV의 이론적 근거와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이와 관련된 기본권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외국의 현황과 우리나라의 실태를 살펴보고 국내에 이미 소개된 여러 가지 연구들을 검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CCTV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살피고자 하는 것은 CCTV의 효과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최근 무분별한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소지와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연구의 이론적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먼저 CCTV의 정의와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간부분에서 범죄예방 CCTV의 이론적 근거와 외국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CCTV 설치 운용실태와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CCTV 도입에 따른 사생활 침해여부와 그 활용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해보고, CCTV 설치의 문제점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위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민간부분의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CCTV 기능상의 개선방안, 그리고 CCTV 설치 및 유지상의 방안과 착안사항 등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발전적 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방법

### 1) 현장조사

민간부문 CCTV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및 관리 파악을 위하여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지역 소재 목욕탕 및 발한실·탈의실 등과 상업시설, 금융시설, 숙박시설 등을 표본추출하여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샘플링 추출방법을 통하여 목욕시설 남녀 400개 이상을 방문 조사대상으로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물 출입문, 엘리베이터 등 공적영역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조사 샘플로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목욕시설 및 공적 투영에 대한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조사자 교육을 사전 실시하고 전체적인 조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현장 조사의 대상 및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및 연구진행과정에 대한 검증자료 및 Raw Data를 연구용역 발주기관에 한하여 제공하되, 일체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현장조사자 등에게 보안유지 및 보안각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 2) 문헌조사

민간 설치 CCTV 관련 외국 기준 문헌조사를 통하여 현장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 주요 국가의 민간 설치 CCTV와 관련한 문헌조사와 일본, 중국 등 인근지역 주요 국가의 민간 설치 CCTV와 관련한 문헌조사를 추가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CCTV 관련 근거규정 및 관련 법률 등을 검토해보고, 인권

전문가인 헌법전공자를 공동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 및 관련 문헌조사를 추가할 계획이다.

### 3) 포커스그룹 간담회 및 시연회

민간부문 CCTV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시민 및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한 포커스그룹 간담회 및 시연회 개최를 연구방법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남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간사, 관련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민간부문 CCTV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및 공적 영역 투영 문제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교류하고자 한다.

또한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에 즈음하여 민간부문 CCTV의 사생활 침해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연회를 통하여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고, 민간부분의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에 대한 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 CCTV 기능상의 개선방안, 그리고 CCTV 설치 및 유지상의 방안과 착안사항 등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홍보하고자 하고자 한다.

# 제2장 이론적 논의

## 제1절 CCTV에 대한 논의

### 1. CCTV의 개념

범죄예방 및 억제, 심리적 안전감의 향상 등의 목적으로 널리 상용되고 있는 CCTV의 개념을 살펴보면, 폐쇄회로텔레비젼(closed circuit television) 이란 특수한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젼 전송시스템을 가리키는 화상통신용어이다. 교육·의료 및 지역정보서비스 등 산업분야 전반에 이용되고 있는 CCTV는 송신측에서 수신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무선 전송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대중은 마음대로 수신할 수 없으며, 산업용 텔레비전(IVP) 또는 전용 텔레비전이라고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

또한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2조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영상정보를 폐쇄적인 유선 또는 무선 전송로를 통해 특정한 수신자에게만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강동범 등(2003: 5)에 의하면 텔레비전 시스템은 수신자의 범위에 따라 보통 폐회로시스템(closed circuit system)과 개회로시스템(open circuit system)으로 분류될 수 있다. 후자는 얼굴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TV방송이 여기에 속한다. 이에 반하여 폐쇄회로시스템은 얼굴정보를 특정의 목적으로 특정의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을 가르키며 이것을 CCTV라고 부른다.

이와 같이 CCTV는 특정 수신자에게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TV시스템으로서, 송신자측에서 수신자측까지 유선 또는 특수한 무선전송로를 연결하여 관계없는 사람이 쉽게 시청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CCTV의 기본구조는 피사체 및 이것을 촬영하여 전기신호로 변환하는 촬영계, 변화된 전기신호를 원격체로 전송하는 전송계 그리고 전송된 얼굴신호를 재생하여 표

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 두산동아(2001: 1467).

시하는 수상계 등 크게 3부분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작은 시스템일지라도 이들 3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빠져서는 시스템이 구성되지 않으며, 대형시스템이 되려면 이들 각 계의 내용이 복잡하게 되어 이들을 통괄 제지하기 위한 제어계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각계의 내부 및 상호간에 얼굴의 기록·재생이 요구되며 또 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얼굴의 해석·처리를 요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로 인하여 얼굴의 기록·재생·가공·처리를 포함하는 얼굴처리계를 결합하여 CCTV시스템이 구성된다(표창원·박기남, 2001: 586).

그 밖에도 복수의 카메라 운영의 조정과 통제, 영상의 기록·재생·해석을 담당하는 정보처리장치 등으로 구성되는 제어계가 추가될 수 있다. 기능적으로는 죄우회전을 가능게 하는 pan 기능과 상하회전을 가능게 하는 tiit 기능 그리고 거리를 조절하는 zoom in, out, 기능을 가지고 있고 부가적으로 야간조명, 원격조정, 동작탐지, 자동자기방어 등을 갖출 수도 있다고 한다(황영선, 2009: 15).

이와 같은 정의를 정리하면 CCTV란 “일정한 공간에서 촬영기기로 촬영된 영상정보를 특정한 목적으로 특수한 수신자만이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수신하는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 CCTV의 기능

### 1) 긍정적 기능

CCTV의 긍정적 기능을 살펴보면, CCTV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해설서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아동의 보호 등과 같은 목적범위내로 설치목적이 제한되고 있다.

Phillips(1999: 124)에 의하면, CCTV의 일반적인 목적은 범죄예방과 억제를 통한 무질서의 예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감시기능을 통한 억제, 둘째, 민간경비와 경찰의 배치의 적절성, 셋째, 범죄두려움을 감소하고 공식적인 안전감을 제공함으로써 공식적인 장소이용의 증가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내무부에서는 CCTV의 기능을 범죄예방 이외에도 미아 및 가출인 찾기(Missing persons), 무기나 폭발물사고(Weapon incidents), 범죄 및 무질서관련 정보수집(Inteligence gathering), 불법노점상 단속과 길거리관리(Illegal street

traders/street management), 테러방지(counter terrorism)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박현호, 2004: 28-29).

Goold(2004: 22-5)에 의하면, CCTV는 범죄행위를 억제하고 수사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융통성이 있으며, 범죄를 현장에서 발견하고, 법률위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유죄가 선고되도록 도와준다고 하였다(임준태, 2009: 252).

**(1) 범죄의 예방과 억제**

CCTV가 수행하는 주요역할 중의 하나인 범죄의 억제와 예방은 범죄의 기회를 감소시키는데 있다. 즉 범죄가 발생하는 기회구조를 줄임으로써 범죄를 억제 및 예방하는 것이다. 감시의 기능을 증가시켜 잠재적인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 범죄의도를 줄이거나 차단시키고 범죄를 저지른 중이나 직후에 체포될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다(Mayhew, 1979: 340). 따라서 범죄의 억제는 범죄대응수단으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실질적인 체포나 구금의 가능성이 약화되었음에도 잠재적 범죄자들이 이를 인식하는 못하여 범죄활동을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Clarke and Weisburd, 1994: 172).

이와 관련된 연구인 천안경찰서와 아산경찰서 구금자를 중심으로 한 면담조사에서는 CCTV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참가자들 중 70%가 CCTV로 인하여 범죄를 그만 둔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범죄의 예방적 기능을 확인하였다(이주락, 2008: 117-119). 또한, 상습적인 침입절도자의 면담결과에서도 참가자들은 방범CCTV의 유무가 침입절도 목표설정 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나타나 이를 확인하고 있다(이주락·강민완, 2009: 214).

Brown(1995)의 연구에서는 CCTV가 재산범죄를 범하는 몇몇의 사람에게 범죄억제기능을 수행한다고 하였다. 또한, French(1996)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결과 특히, 성인범죄자들은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Ditton and Short(1998)의 연구에 의하면, 범인들은 일정수준 범행을 저지당하고 일부는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덜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질러 행동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긍정적인 현상을 발견하였다. Gill and Loveday(2003)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범인들은 CCTV를 자신들의 범행에 큰 장애로 인식하지 않지만 카메라에 포착된 경험이 있는 범인들의 경우에는 CCTV를 위협적 요소로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고 하였다.

### (2) 범죄용의자의 파악

CCTV는 범죄의 현장에서 범인은 물론 범행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촬영하여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하면 범죄용의자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범죄상황에 대한 생생하고 선명한 화면은 수사기관에 의해 범인확인을 용이하게 해 줄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에 따른 제보를 증가하게 할 수 있다. 이는 범인의 체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범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화면을 보게 되면 도주 등을 단념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03년 1월에 발생한 농협현금카드 위조 인출사건에서, 범인들은 CCTV에 찍힌 자신들의 얼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겁을 먹고 자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2](강동범 등, 2003: 24-26).

<표 2-1> 방범용 CCTV 운용실적

| 연도별 | 계 | 범인검거현황 | | | | | | | 수배자 | 도난 차량 회수 |
|---|---|---|---|---|---|---|---|---|---|---|
| | | 소계 | 살인 | 강도 | 강간 | 절도 | 폭력 | 기타 형사범 | | |
| 2004 | 23 | 23 | 0 | 1 | 0 | 5 | 2 | 15 | 0 | 0 |
| 2005 | 94 | 84 | 2 | 3 | 2 | 46 | 7 | 24 | 8 | 2 |
| 2006 | 236 | 152 | 5 | 6 | 3 | 72 | 10 | 56 | 72 | 12 |
| 2007 | 494 | 270 | 3 | 14 | 3 | 130 | 21 | 99 | 190 | 34 |
| 2008.8 | 547 | 318 | 7 | 19 | 6 | 126 | 15 | 145 | 189 | 40 |
| 총계 | 1,394 | 847 | 17 | 43 | 14 | 379 | 55 | 339 | 459 | 88 |

자료: 강기정, (2008: 3)

2) <농협 현금카드 위조 및 인출사건 중국동포 2명 자수> 동아일보(2003, 1. 23), 전국 단위농협과 부산 광주은행의 카드위조 현금 인출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 본격화되자 현금인출 용의자인 이모(25)와 전모(22)씨는 '한국인 3명의 심부름으로 농협 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했다.'며 자수해옴에 따라 사실여부 등을 조사중이다. 이씨는 □□22일 숙소에서 뉴스를 보고 사건을 비로소 알게 됐으며, 뉴스에 나온 CCTV화면에서 내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 (3) 범죄두려움 감소(안전감 증대)

CCTV는 범죄예방 및 억제와 더불어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 결과도 있다. Chartterton and Frenz(1994)는 노인보호주택에서 CCTV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응답자에 46%가 CCTV 설치이전에는 자신들의 주거가 불법침입을 당할지도 모른다고 매우 또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었음이 보고되었다. 설치 후 인터뷰에 의하면 거주자에 74%가 불법침입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고 더 많은 응답자는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하였다.

Musheno 등(1978)은 뉴욕의 주택단지에 설치된 CCTV시스템이 범죄를 억제하지는 못했지만 야간에 불안감을 느낀 비율이 CCTV설치 이전에는 응답자의 50%이었지만 설치 후에는 41%로 감소하였다.

Bennett and Gelsthorpe(1996)에 의하면, 캠브리지 거주자의 73%가 CCTV는 범죄두려움을 감소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믿었다. 또한 Sarno and Bulos(1999)는 CCTV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감을 증대시켜준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Ditton(2000)은 CCTV가 이미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안전감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욱이 Spriggs 등(2005)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공공장소 CCTV로 인해 증대된 안전감 덕분에 해당 공공장소를 전보다 더 자주 이용하겠다고 응답하였다.

강석진 등(2009: 241)은 CCTV 설치 전·후 주야간 불안감에 대한 연구에서 설치 후 불안감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박웅규(2008: 107-108)의 연구에서는 서울지역과 수도권지역 사람들의 안전감강화에 대한 비교에서 서울지역 사람들이 안전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이 상대적으로 CCTV가 타 지역보다 많이 설치되어 있어 CCTV의 존재를 인식한 시민들이 범죄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CCTV가 안전감 강화에 효과가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한국에서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강남구에서 2005년 8월에 실시한 방범용 CCTV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CCTV의 설치목적을 범죄예방(48.1%), 안전감제공(29.5%), 범죄감소(14.5%)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민들도 CCTV가 범죄두려움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4) 유죄판결의 증거자료

CCTV에 의해 녹화된 테이프는 증거로서 역할을 하며, 경찰로 하여금 범죄인을 색출하고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CCTV에 의한 촬영은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얼굴은 현장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 있어 촬영한 후에 인위적인 조작이 가해지지 않는 한 유력한 물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물론 비디오테이프 증거로서 성질에 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고 그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이 달라질 것이다(강동범 등, 2003: 28).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CCTV를 통해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내용이 증거능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대단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CCTV화면이 유죄판결에 대한 증거로 활용된 외국의 사례로는 1997년 9월 5일에 영국 중부의 소도시 Wakefield에서 발생한 10대 소녀 Rachel Barraclough 살인사건에서 CCTV에 기록된 영상이미지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적이 있다. 또한, 2001년 4월에 런던의 밤거리에서 발생한 BBS 방송국 소속 의상디자이너 Liz Sherlock 강도살인사건 역시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에 찍힌 범인들의 모습이 뉴스 등 미디어에 방영된 후 이들을 알아본 시청자의 제보로 해결되었다. 한국에서는 2000년 3월 15일에 종로구 무악동 H아파트 11층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중생이 흉기로 목을 찔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출입구의 CCTV에 녹화된 영상을 토대로 범인을 검거한 경우가 있었다(표창원·박기남, 2001: 631). 또한 Levesley and Martin (2005: 5-6)의 연구에서도 경찰관들은 CCTV 영상을 체포 증거로서 활용한다고 하였다.

### (5) 교통흐름 파악 및 통제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 도로에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공사, 폐쇄, 방해물, 사고 등 도로에 관한 정보를 수신하고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됨으로써 도로상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확보하고 있다(허형석, 2003: 384).

교통흐름조사용 CCTV는 2009년 2월말 전국적으로 총 1,200대가 있으며 경찰이 1,019대 지방자치단체에서 181대를 관리하고 있다. 이들 CCTV는 「도시지역 광역 교통정보 기방확충사업」(UTIS : Urban Traffic Information System)의 일환으로 자치단체별 교통정보센터와 경찰청의 중앙정보교통센터를 연계한 광역교통관리체계에 포함되어 운영되고 있다(황영선, 2009 : 24).

우리나라 경찰에서는 과속차량, 신호위반, 무인주정차, 버스전용차선 위반 등의 교통법규차량을 단속, 수배차량 감지 등의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이철호, 2005: 30-31).

#### (6) 행정목적

자치단체에서는 행정목적을 위하여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쓰레기투기 방지, 시설물관리, 주차관리, 공항 및 항만관리, 기차·지하철 등 공공시설, 산불·하천·공원관리 등에도 상용되고 있다.

### 2) 부정적 기능

CCTV의 부정적 기능은 바로 CCTV에 노출될 수 있는 있는 시민들의 인권침해 요소와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보호 문제의 대두가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의 주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의 반론으로 CCTV 설치에 따른 범죄발생의 풍선효과 현상도 CCTV 설치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적 요소

일반적으로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①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권리, ②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발전을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 그리고 ③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 할 수 있는 권리(정보자기결정권) 등을 포함한다고 이해되고 있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CCTV 설치에 따른 사생활보호 문제 및 인권침해적 요소는 CCTV의 대표적인 부정적 기능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CCTV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이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초상 및 활동 정보가 일정 기간 수집·보관됨으로써 무단공개·유출 등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으며, 이에 대한 통제와 개인의 권리 주

장의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리하면, CCTV 촬영 및 저장은 국민 개인의 영상정보에 대한 수집·처리의 배제 및 열람·정정 등에 대한 권리를 부당히 제한하고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를 무력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생활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할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2) 범죄전이효과

CCTV 설치를 통한 긍정적인 측면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근거는 바로 잠재적 범죄발생의 감시효과를 통하여 범죄의 사전예방 또는 사후 증거확보에 매우 유용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발생의 사전예방 효과는 CCTV 촬영의 가시거리 내에서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나, CCTV 촬영의 가시거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CCTV 촬영의 가시거리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었던 범죄의 가해자들로 하여금 가시거리 이외의 지역에서 잠재되었던 범죄발생 현상을 표출하게 되는 '범죄전이효과(풍선효과)'의 한계가 나타날 수 있다.

그 외에도 사회 곳곳에 CCTV 설치가 보편화될 경우, 사회 전반에 걸쳐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타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부정적인 사회관을 갖게 되는 문제 등도 CCTV의 부정적 기능으로 간주할 수 있다.

## 3. CCTV의 기술 및 특징

### 1) CCTV의 기술 및 성능

#### (1) 지능형 CCTV의 기술 및 성능

기존의 CCTV는 VCR을 이용한 아날로그 시스템을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성능과 화질이 뛰어난 DVR(Digital Video Recorder)를 이용한 디지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개발된 CCTV는 대부분 지능형으로 움직임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영상추적 장치로 영상을 보내주며 차로상에서 통행하는 자동차를 실시간 촬영하는 고정용

카메라를 구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영상과 음성 테이터를 압축하고 전용회선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송하여 최대 3채널의 입력영상으로부터 다수의 물체를 동시에 검지하고, 불체에 대한 추적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회전형카메라에 의한 장동추적을 수행 할 수 있는 '지능형 CCTV 감시제어시스템'까지 구비하고 있다.

<그림 2-1> 최신 CCTV의 기술과 성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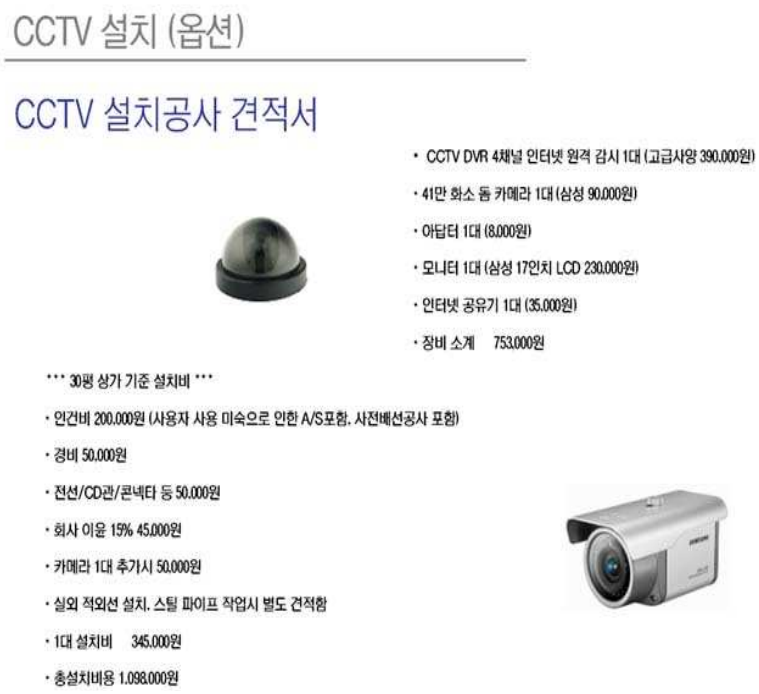


<그림 2-1>에서와 같이 일반형 CCTV외에도 첨단기술의 발달로 다음과 같은 성능을 구비하고 있는 제품들도 시중에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 자동영상저장 및 백업 기능
· 무선환경이나 저속의 전용회성 환경에서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원활한 영상 전송이 가능하도록 멀티캐스트 프로토콜 지원
· 자동영상추적 S/W를 통한 영상추적, 저장, 원격제어 기능을 지원
· 차량번호인식용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1개월 이상 저장도 가능하도록 설계

<그림 2-2> IP카메라 시스템 영상처리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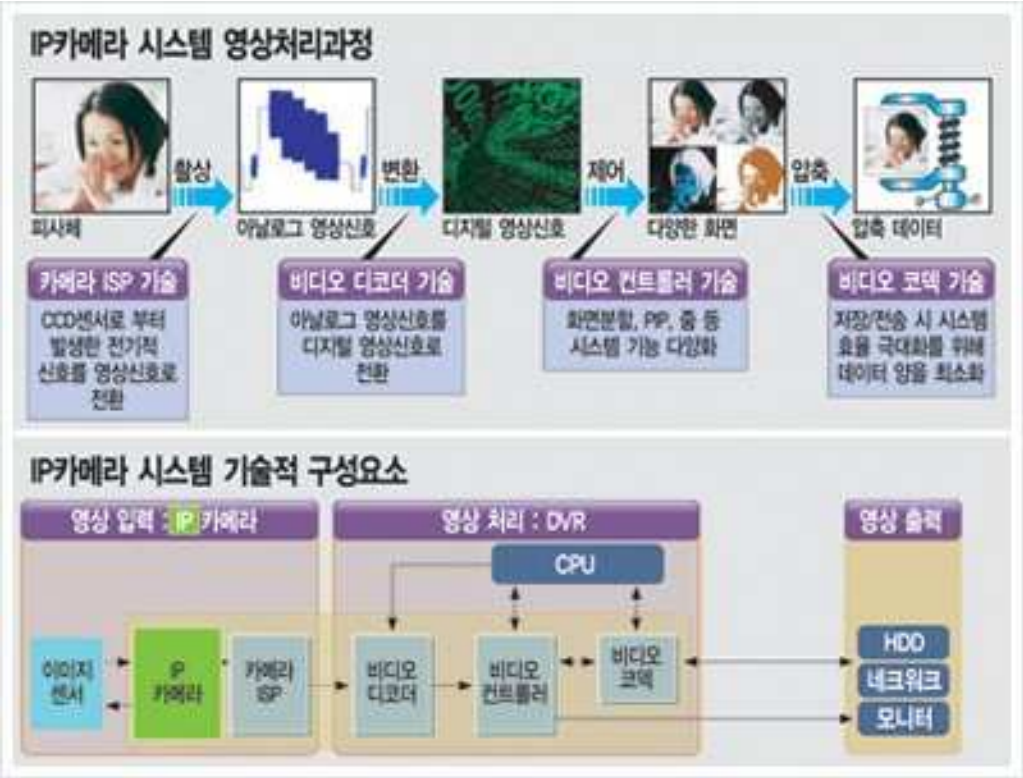


### (2) 네트워크 CCTV의 기술 및 성능

최근 CCTV의 기술은 네트워크를 이용한 원격제어 및 실시간 전송을 주요 성능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및 무선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송이 가능한 HD급 고화질 웹캠(web cam)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든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CCTV 영상이 노출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CCTV에 네트워크 기능을 적용하는 기술은 초기에는 네트워크 환경에 따른 다양한 연상압축전송-네트워크 전송효율 확보를 위하여 개발되었으나, 노트북PC 또는 스마트폰에 영상촬영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카메라의 촬영정보가 네트워크 CCTV의 역할을 함에 따라 IP주소 노출 등을 통하여 인터넷 상에 무분별하게 영상촬영 정보가 정기적 또는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상에 제공되고 있는 실시간 CCTV 영상사이트는 약 20여개가 확인되고 있고, 국내에도 스키장, 워터파크 등 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대학 홈페이지에서

도 실시간으로 CCTV 촬영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3> 웹상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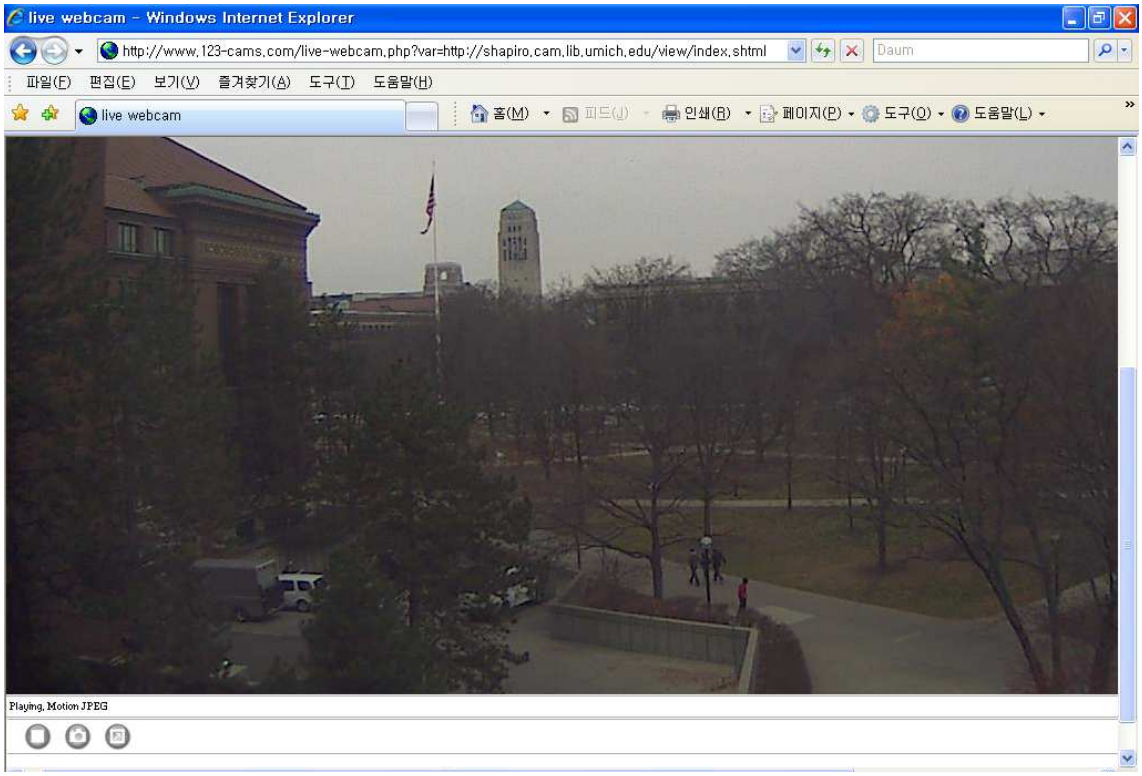

<그림 2-4> 웹상에 노출된 외국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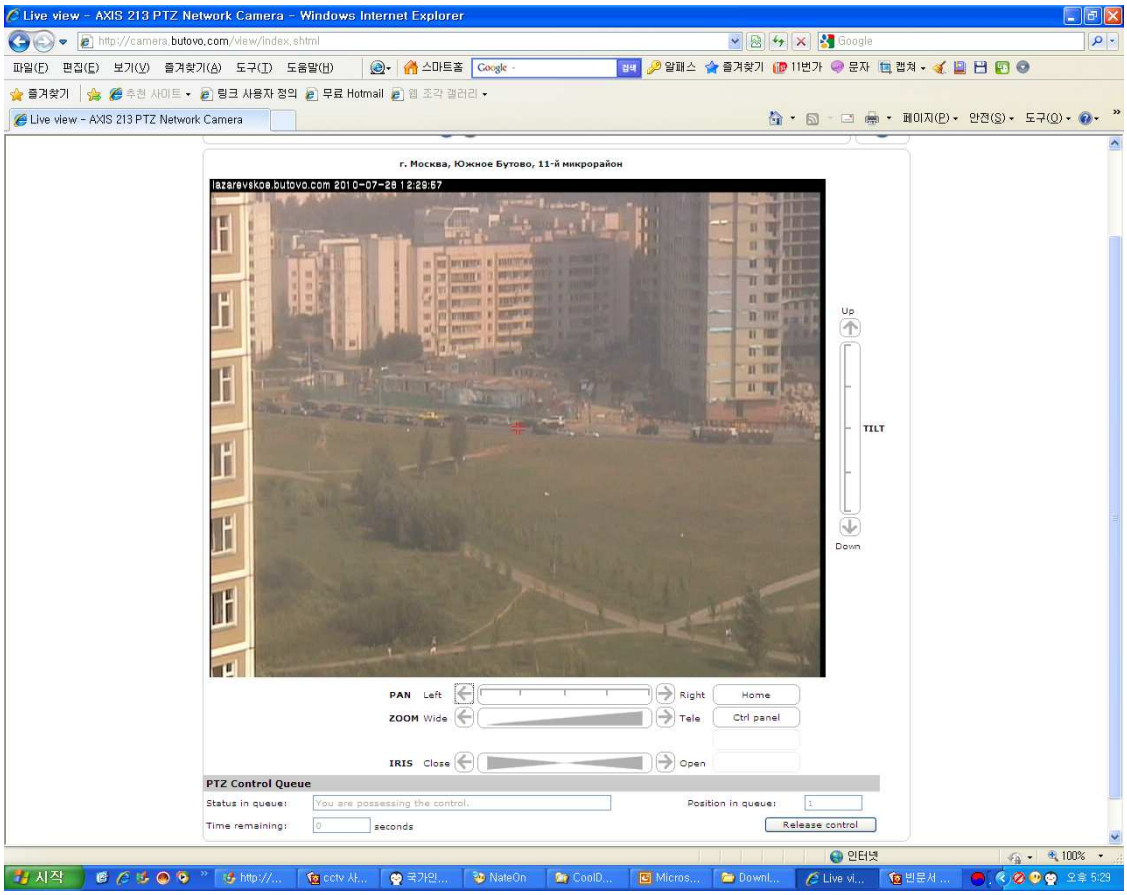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최근에는 가정이나 사무실의 컴퓨터상에서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IP가 노출된 CCTV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센터에서 'Live cam' 또는 'Spy cam'을 검색하면 약 20여개의 실시간 CCTV 영상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설치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IP가 노출된 전세계 CCTV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네트워크 카메라와 동일하게 각도조절, 줌기능 등의 조절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CCTV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접근 가능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CCTV영상의 촬영대상자 대부분이 본인의 영상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세계에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인권침해의 심각한 우려가 있다 하겠다.

<그림 2-5> 스마트폰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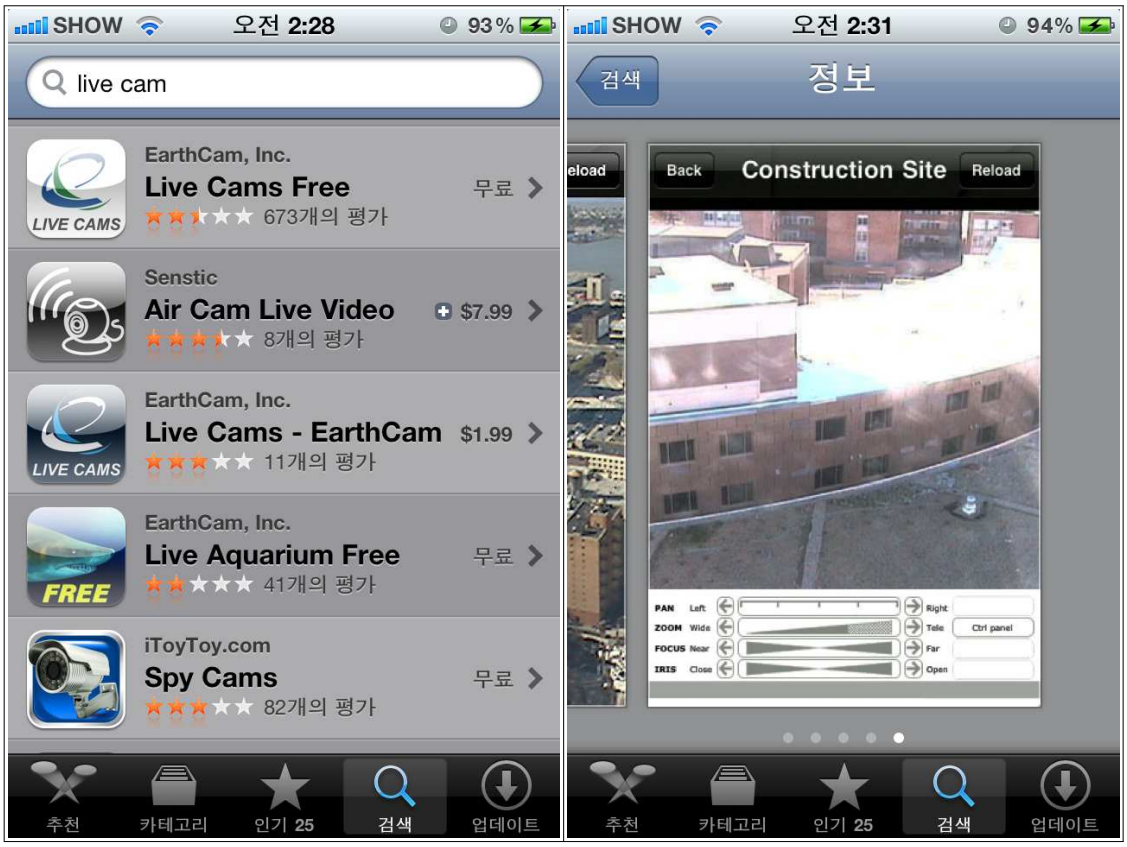

<그림 2-6> 스마트폰의 CCTV 사이트 및 조절화면(2)

## 2) CCTV의 주요 유형 및 특징

### (1) CCTV의 주요 유형

최근에 있어 기술적 변화는 CCTV에서 IP 카메라 (IP camera)로의 전환이다.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카메라. 카메라 모듈, 디코더, 영상 압축칩, CPU, 네트워크 전송 칩 등으로 구성된다. 카메라 모듈로부터 받은 아날로그 신호는 디코더를 통해 디지털로 바뀌고, 압축칩에서 압축을 거쳐 전송되는 흐름이다. IP 카메라는 외부에서도 집안 상황을 휴대폰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와 홈네트워크를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 초고속 무선인터넷망을 이용한 IP 카메라는 360도 회전과 상하 160도 회전시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고 DVR보드와 모니터를 별로로 구매하지 않아도 돼 설치비 및 시공비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2-7> CCTV의 주요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1)

| 구 분 | 주요 유형 | 주요 특징 및 인권침해적 요소 |
|---|---|---|
| 일반형 카메라 | | 1. 주로 건물외곽, 실외용으로 활용<br>2. 모형만 설치하는 경우도 있음 (저가 보급형)<br>3. 인권침해적 요소 : 주택가, 상업시설 등 주로 건물외곽 및 실외용으로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사례임 |
| 팬틸트 카메라 | | 1. 상하좌우 고속회전, 야간 노출보정<br>2. 물체 자동 추적, 양방향 음성지원<br>3. 인권침해적 요소 : 촬영대상의 이동에 따라 자동으로 상하좌우 회전하면서 촬영하므로 실내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출입구 방향의 도로 등 민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사례가 될 수 있음 |
| 네트워크 카메라 | | 1. 고성능, 고해상도 광학 줌 렌즈 가능<br>2. 다양한 해상도의 실시간 고화질 영상 및 음성 전송 가능<br>3. 인권침해적 요소 : 안정적인 하드웨어 및 고성능 줌렌즈 탈부착이 가능하며, 음성녹음 기능을 포함하는 기종은 대상자의 직접적인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로 볼 수 있음 |

또한 IP 카메라는 감지기 센서로 연결할 수 있어 취약 시간에 센서 감지지를 통해 실시간 문자 및 전화통보도 확인 가능해 방범활용도가 크게 개선될 수 있으며 실시간 음성지원이 가능하고 현장 확인 후 경찰에게 연락되기 때문에 오작동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IP카메라를 통해 사용자가 영상을 보려면 촬상-변환-제어-압축 등 4가지 과정을 거쳐야 한다. 먼저 `촬상'은 카메라의 이미지센서를 통해 영상을 촬영하고, 생성된 전기 신호를 영상신호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미지센서에서 생성된 영상신호는 아날로그 방식이라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주는 `변환'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가 비디오디코더이다. 생성된 디지털 신호는 비디오콘트롤러 칩을 통해 사용자의 지시를 받는 `제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제어 과정을 통해 사용자는 화면

분할이나 화면확대, 다중화면(PIP) 등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제어 과정을 마치면 비디오 코덱 칩을 통해 영상 정보를 `압축'하게 된다. 그리고 영상정보는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컴퓨터로 전송되게 된다.

### (2) CCTV의 최신 유형

최근에는 CCTV의 기술과 성능이 더욱 발전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을 장점으로 하는 첨단 CCTV에서부터 초소형 핀홀카메라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반에 보급되고 있다. 특히 '차량용 블랙박스'로 통칭되는 차량용 카메라는 주행중 또는 24시간 공공영역인 도로를 촬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림 2-8> CCTV의 최신 유형 및 인권침해적 요소(2)

| 구 분 | 주요 유형 | 주요 특징 및 인권침해적 요소 |
|---|---|---|
| 적외선 카메라 | | 1. 적외선(야간용) 기능<br>2. 광학 30배(디지털10배) 줌기능<br>3. 물체 자동 추적, 양방향 음성지원<br>4. 인권침해적 요소 : 적외선 기능을 활용하여 야간에도 촬영이 가능하며, 줌기능 외에도 스피커폰을 통하여 경고메세지 등을 전하는 등 대상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핀홀 카메라 | | 1. 초소형 핀렌즈 사용<br>2. 무선송신 가능, 30만화소 지원가능<br>3. 인권침해적 요소 : 초소형으로 다양한 형태로 은닉하여 설치가 가능하며, 무선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이상성욕자 등에 의해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
| 차량용 카메라 | | 1. 주행중 또는 24시간 촬영(전원연결)<br>2. 디지털 저장방식, 2채널(후면) 가능<br>3. 인권침해적 요소 : 주행중 또는 24시간 공공영역인 도로를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상의 차량운행정보 및 인도의 일반 시민의 모습도 무차별적으로 촬영하고 있다. |

### (3)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우리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그동안 교통단속, 범죄예방, 공공시설관리, 재난 및 산불관리 등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다. 특히 2002년 강남경찰서 관할지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주택가의 방범용 CCTV 설치이후 공적영역 CCTV의 보급이 크게 확산되었고, 이에 대한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다행히 2007년 1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CCTV에 대한 규정이 삽입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설정함에 따라 공공기관 CCTV는 그나마 법적 테두리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민간영역에서도 CCTV의 보급이 확산되어 우리 일상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며, 개인의 하루일과 중 동선에 따라 수십회이상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CCTV에 적용되는 첨단기술의 발달로 CCTV의 해상도가 HD급으로 높아지고 음성인식기술, 적외선 촬영기술, 네트워크 전송 등 성능을 갖춤에 따라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도 점차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는 중이다.

공적영역과 민간영역을 포함하여 일반 시민이 CCTV에 노출될 수 있는 사안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공적영역에서는 주택가 및 학교주변의 방범용 CCTV를 포함하여, 교통단속 카메라, 공공시설 관리용 CCTV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쓰레기투기 단속방지 등의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민간영역에서는 주차장 CCTV를 포함하여 아파트, 상업용건물 등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 등에 보안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편의점을 포함한 상점의 경우 계산대, 출입구, 진열대 등에 도난방지용 CCTV 설치되어 있는 것을 빈번하게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음성인식 기능이 추가된 차량용 블랙박스 등이 택시를 포함한 대중교통 시설에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바, 대중교통 이용 승객이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CCTV 촬영영상 및 음성데이터가 녹화 및 녹취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하겠다.

특히 이러한 민간영역 CCTV 기술의 발달과 CCTV 설치 대수의 양적 확대에 비

추어 관련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에 대한 법적 보호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영역의 CCTV를 관리감독하고 관련 데이터에 대한 개인의 접근 및 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표 2-2> CCTV의 설치목적별 유형 및 장소

| 설치목적별 | | 유형 및 장소 | 비 고 |
|---|---|---|---|
| 공적영역 | 방범용 | 주택가, 학교주변, 도로입구 등 | 관련 법률 및 가이드라인 제정 |
| | 교통단속용 | 주정차금지 지역, 교통밀집지역, 주요사거리 등 | |
| | 시설관리용 | 공공시설(주차장 포함), 공항 등 | |
| | 기 타 | 쓰레기투기 방지용, 산불 및 재난관리 등 | |
| 민간영역 | 보안용 | 아파트, 상업용건물(엘리베이터, 계단, 주차장 등) | 관련규정 없음 |
| | 도난방지용 | 상점 내(계산대, 출입구, 진열대 등) | |
| | 기 타 | 은행, ATM기기, 차량용 블랙박스(음성녹취) 등 | |

## 제2절 외국의 CCTV 현황

### 1. 영국

1) CCTV 기본정책

영국은 2008년 기준 약4,285,000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 이것은 인구 14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런던에서는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에 약 300번이 된다고 한다(BBC News, 2008).

영국의 CCTV에 관련한 정책은 초기부터 중앙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내무부(Home Office)는 주무부서 경시청과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하기위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논란에 대응하면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

영국의 CCTV 정책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도입시기, 둘째, 확대시기, 셋째, 재조정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도입시기(1990년대 초-1990년대  중반)에서는 중앙정부 주도하에 CCTV에 의한 범죄대응을 정책적인이니셔티브로 표방하였다. 내무부는 다양한 시험을 거쳐서 기본적인 범죄예방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 성과와 기술평가를 통해 CCTV 설치의 정당성을 확보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범죄예방을 최고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니셔티브로 CCTV 시스템을 도심이나 주차장에 설치하였다.

둘째, 확대시기(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이다. 이 시기에서는 CCTV 정책이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수준까지 확대된 시기이다. 중앙정부에 의한 많은 재정지원과 설치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지면서 CCTV가 범죄에 대항하는 가장 핵심정책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지방정부와 경시청 간의 파트너쉽이 구성되었고, CCTV를 중심으로 하는 경찰의 네트워크가 만들어 졌다. 초기 범죄예방이라는 목표를 넘어 반사회적인 행위(Antisocial Behavior)까지 확대되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기술의 도입을 통해 도심이나 주차장 뿐만 아니라, 기차역, 공항, 버스터미널 등 대부분 공공시설에서부터 주택지까지 CCTV가 설치되었다.

셋째, 재조정기시기(2000년대 중반이후)이다. 지방정부와 경찰에 의해 운용되던 다양한 시스템을 중앙정부가 만든 표준시스템으로 통합을 시도하였다. 중앙정부-경찰 간의 파트너쉽이 강화되었고, 범죄예방이나 반사회적인 행위제어에서 벗어나 그 역할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CCTV에 대한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CCTV 정책에 대한 전환이 요구되기 시작했다(이종업, 2009: 52-54).

2) CCTV 관련규정

영국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CCTV에 관한 법적 근거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방의회가 CCTV를 설치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형사사법및공공질서법 제163조라고 볼 수 있다.

CCTV의 운영은 1998년에 개정된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98, 2000. 3. 1일 시행)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검거, 공중의 안전 등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설치·이용에 관하여 정보보호관에 대한 통지하여 등록하고, 설치사실을 해당지역에 표시해야 한다.[3)]

CCTV전반에 관한 구체적 규제는 1996년 지방자치정보부(LGIU) 발행 □□감시요령서(A Watching Brief)-CCTV실행규준□□에 의한다. 이는 □□정보보호위원회□□가 인정한 권고안이지만, 그 내용 중 정보보호에 관한 조항은 1998년의 정보보호법에 의해 대체되었다(표창원, 2003: 49-50).

이 법률은 정보관리책임자(Data Protection Commissioner)에 대해 정보관리수칙(code of practice)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가이드라인은 CCTV운영자들에게 법적의무를 이해시키고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게 되지만, 법적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한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도시연구방범센터, 2002: 17 참고; 김형훈, 2004: 40재인용).

그 외에도 미국은 비디오감시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 캐나다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공공기관에 의한 비디오감시기술 이용에 관한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Privacy Guidelines for Use of Video Surveillance Technology by Public Bodies), 호주에서는 호주 카메라 가이드라인(Australia Cameras Guidelines) 등이 있다(손찬호, 2007: 18-19).

## 2. 독일

CCTV에 대한 법적규제는 오랫동안 사진, 음반, 녹음테이프를 보호대상인 정보(Date)가 아닌 문서(Akten)로서 정의하던 연방보호법(Buvdesdatenschutzgesetz, 1977) 제3조 제3항 제1문을 폐기하고, 2001, 5, 23일 비디오감시에 대한 규율을 제6조로 추가하면서 구체화 되었다(고시면, 2003: 29).

개정법의 특징은 비개방공간에서의 비디오감시활동을 제외한 개방공간에서의 비

---

3) Criminal Justice and Public Order Act 1994, 제163조(지방공권력의 CCTV공급권)① 지방공권력은 다른 법력상의 목적을 위해 실행하는 어떠한 권한에도 구애받지 않고, 그들의 지역과 관련하여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의 복지를 증진하려고 할 때 다음의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
1. 그들 관할에서 어느 지역에서든 일어나는 사건의 시각적 이미지를 녹화하기 위한 장치의 설치
2. 1984년 전기통신법 제2장에서 면허 없이 가동되는 전기통신시스템의 관할내의 설치
② 설비를 설치하거나 규정을 마련할 권한은 그 설비를 유지 또는 운영하거나 때에 따라 유지 또는 운영을 위해 준비할 권한을 포함한다. ③ 이 조항에 의한 단계를 취하기 전에 지방공권력은 단계가 취하여질 경찰관할의 경찰기관의 장과 상의하여야 한다. ④ (축약: 지방공권력은 군의회나 구의회를 말한다. 기타 경찰장등의 용어 정의)

디오 감시활동만을 그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구체적인 비디오감시활동은 형사소송법, 각종 경찰법에 의한 특별규율들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은 이 영역외에서의 공권력에 의한 일반적·지속적 비디오감시활동 및 사인에 의한 비디오감시활동에 대해서 적용된다.

비디오감시활동이 허용되는 목적을 공공기관의 과제이행, 가택권의 행사, 구체적으로 확정된 목적들에 대한 정당한 이익을 열거함으로써 향후 이 기술의 응용범위 확장에 대비하여 매우 개방적인 구성요건을 도입하고 있다. 비디오가 설치된 장소에 비디오감시사실 및 그 책임자를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비디오화면상의 영상을 특정인의 것으로 판정한 경우 이 사실을 그 개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이 자신의 행태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 권리구제상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며, 정보조사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 및 예방 수단으로 그 침해유형에 따라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행정질서법, 형사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목적구속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등 개인정보자결권 제한에 필요한 정당화 요건을 대체로 충실히 준수하고 있는 점 등을 볼 수 있다(정태호, 2003: 165; 김형훈, 2004: 42-43 재인용).

그외에도 덴마크는 비디오감시금지법(Consolidation Act), 스위스는 개인에 의한 비디오 감시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ideo Surveillance by Private Individuas), 대중교통에서의 비디오감시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Use of Video Surveillance Public Transportation), 대중교통에서의 비디오감시의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the Use of Video Surveillance at the Workplace) 등이 운영되고 있다(손찬호, 2007: 18-19).

## 3. 일본

일본의 경우 공적인 영역인 경찰은 동경도공안위원회 규정 및 가두방범카메라시스템 운영요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운용한다. 운영책임자의 관리 하에서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 가두방범카메라의 설치구역임을 표지판으로 명시한다. 영상테이터 활용 상황을 매월, 동경공안위원회에 보고 한다.

민간부문에서 운영하는 방범감시카메라에 대한 규제로는 2004년 3.19일 동경도

스기나미구가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스기나미구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살펴보면,

제1조 목적은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해서 기본원칙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범카메라의 유용성을 배려하면서 구민 등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4조 설치 및 이용기준의 신고에서는 다음 단체는 도로, 공원 그 밖의 규칙으로 정한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방범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규정한 방범대상의 구역, 그 밖의 방범카메라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것을 구장에게 신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단체는 이하와 같으며, 설치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

스기나미구, 상점가진흥조합법에 기초한 진흥조합 및 진흥조합연합회, 중소기업 등의 협동조합법에 기초한 상점가협동조합. 지방자치법 제260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연에 의한 단체. 그 외 규칙에서 정하는 단체.

위의 설치신고 의무자가 방범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방범대상 구역별로 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책임자의 성명을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신고 의무자와 관리책임자는 화상 및 화상으로부터 얻는 정보를 유출해서는 안되면, 이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목적이외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장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화상으로 식별된 특정 개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 구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긴급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밖에 화상데이터의 보존, 훼손 등 에 관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을 어겼을 때, 구장은 방범카메라 이용 중지를 권고하거나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김종욱, 2009: 58-60).

## 제3절 우리나라의 CCTV 현황

### 1. CCTV 설치현황

현재 CCTV 설치는 공공기관이 약 24만대, 민간은 약 250만대로 추정하고 있다. 공공기관 CCTV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CCTV News, 2009.10.15).

<표 2-2> 설치기관별 분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30.3%, 교육기관 26.6%, 중앙행정기관 21.7%, 기타공공기관 21.4%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차 감시 등의 행정목적으로 CC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2-3> 설치기관별 분류(2009년 4월 기준)

(단위: 대, %)

| 설치기관 | 설치대 수 |
|---|---|
| 중앙행정기관 | 52,437(21.7%) |
| 지방자치단체 | 73,289(30.3%) |
| 교육기관 | 64.450(26.6%) |
| 기타 공공기관 | 51,239(21.4%) |
| **합 계** | **241,415** |

<표 2-3> 설치목적별로 살펴보면 일반시설관리 33.6%, 공공안전 27.1%, 특수시설관리 24.4%, 기타 8.6%, 사회질서유지 6.1%순으로 나타났다.

<표 2-3-1> 설치목적별 분류(2009년 4월 기준)

(단위: 대, %)

| 설치목적 | 설치대 수 | 비고 |
|---|---|---|
| 공공안전 | 65,597(27.1%) | 방범, 재산·산불관리 등 |
| 사회질서유지 | 14,769(6.1%) | 과속, 주정차 단속 등 |
| 일반시설관리 | 81,136(33.6%) | 시설 및 주차관리 등 |
| 특수시설관리 | 59,143(24.4%) | 지하철·공항시설관리 등 |
| 기타 | 20,770(8.6%) | 기타 |
| **합 계** | **241,415** | |

<표 2-4> 지방청별 방범용 CCTV설치 현황(2009년 8월 기준)

(단위: 대)

| 지역 | 소계 | 지역 | 소계 |
|---|---|---|---|
| 서울특별시 | 2,914대 | 충청북도 | 347대 |
| 부산광역시 | 248대 | 충청남도 | 917대 |
| 대구광역시 | 840대 | 전라북도 | 457대 |
| 인천광역시 | 1,615대 | 전라남도 | 955대 |
| 광주광역시 | 147대 | 경상북도 | 1,345대 |
| 대전광역시 | 206대 | 경상남도 | 1,005대 |
| 울산광역시 | 250대 | 제주특별자치도 | 1,544대 |
| 경기도 | 2,981대 | **합 계** | **16,563대** |
| 강원도 | 792대 | | |

<표 2-5> 자치제 CCTV설치 현황(2009년 4월 기준)

(단위: 대)

| 기관/설치목적 | 설치대 수 | 공공안전 | 사회질서유지 | 시설관리 | 특수시설관리 | 기타 |
|---|---|---|---|---|---|---|
| 서울특별시 | 20,464 | 4,979 | 2,511 | 5,651 | 6,889 | 434 |
| 부산광역시 | 7,369 | 388 | 485 | 2,934 | 3,387 | 175 |
| 대구광역시 | 4,290 | 993 | 993 | 1,249 | 1,593 | 75 |
| 인천광역시 | 2,784 | 979 | 358 | 924 | 460 | 63 |
| 광주광역시 | 1,688 | 172 | 172 | 830 | 402 | 38 |
| 대전광역시 | 1,492 | 248 | 133 | 978 | 124 | 9 |
| 울산광역시 | 1,674 | 194 | 194 | 1,211 | 4 | 46 |
| 경기도 | 13,709 | 3,191 | 3,191 | 8,690 | 18 | 237 |
| 강원도 | 2,848 | 575 | 575 | 1,970 | 0 | 116 |
| 충청북도 | 2,056 | 492 | 482 | 1,001 | 0 | 81 |
| 충청남도 | 2,303 | 813 | 194 | 1,191 | 50 | 100 |
| 전라북도 | 1,855 | 530 | 530 | 1,103 | 0 | 30 |
| 전라남도 | 2,671 | 1,017 | 193 | 1,403 | 1 | 57 |
| 경상북도 | 3,202 | 963 | 963 | 1,946 | 10 | 74 |
| 경상남도 | 3,726 | 1,031 | 337 | 2,117 | 34 | 207 |
| 제주특별자치도 | 1,158 | 74 | 525 | 539 | 0 | 20 |
| **합 계** | **20,464** | **4,979** | **2,511** | **5,651** | **6,889** | **434** |

## 2. CCTV에 대한 시민인식

CCTV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3년 6월말부터 7월초 사이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찬성이 59%부터 71.5%로 나타났다.

<표 2-6> CCTV 설치관련 언론기관 여론조사

| 계 | 여론조사결과 | | | | 비고 |
|---|---|---|---|---|---|
| | 계 | 찬성 | 반대 | 모르겠다 | |
| 조선일보 | 967명 | 691명 (71.5%) | 276명 (28.5) | | 6/30-7.7 |
| 연합뉴스 | 847명 | 584명 (68.9%) | 257명 (28.5%) | 6명 (0.7%) | 6/30-7/6 |
| 한국일보 | 2,093명 | 1,468명 (70.1%) | 599명 (28.6%) | 26명 (1.2%) | 7/1-7/8 |
| 한겨레 | 4,568명 | 2,700명 (59%) | 1,868명 (41%) | | 6/30-7/4 |

자료 : 송갑수(2004: 35-36)

2003년 7월7일부터 7월10일까지 서울시가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생활침해에 따른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총 1,310명 중 CCTV 설치에 찬성이 975명(75.4%), 반대 256명(19.5%), 모르겠다 79명(6%)로 나타났다.

2005년 8월22일부터 8월24일까지 3일간 방범용 CCTV 설치·운용과 관련한 강남구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278명 가운데 아주효과적이다 514명(40.2%), 효과적이다 647명(50.6%), 그저그렇다 95명(7.4%), 별 효과가 없다 22명(1.7%)로 나타나 효과적이라고 인식한 응답자는 90.8%이상으로 나타나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김석기, 2007: 49-50).

2005년 4월 한달간 128명의 대구시민 및 경찰관을 대상으로 CCTV의 사생활 침해정도를 묻는 설문결과 '별로 침해하지 않는다' 68명(53.1%), '약간 침해한다' 40명(31.3%),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9명(7.0%), '모르겠다' 7명(5.5%), '매우 심하게 침해한다' 4명(3.1%),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CCTV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홍철, 2006: 52).

2009년 9월 한달간 강남구 도봉구 주민 500여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방범용 CCTV가 범죄예방, 범인검거 등에 도움이 되면 사생활침해를 감수할 수 있습니까 ? 라는 질문에 ′그런 편이다′ 56.6%, ′매우 그렇다′ 17.8%, ′보통이다′ 15.8%, ′그렇지 않은 편이다′ 8.2%, ′전혀 그렇지 않다′ 1.6% 순으로 나타나 CCTV의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관대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승철, 2009).

2009년 9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불법적인 CCTV(목욕탕 및 사우나) 설치에 대한 시민인식에서 417명 중 ′알고 있다′ 130명(31.2%), ′잘 알지 못한다′ 103명(24.7%), ′보통이다′ 97명(23.3%), ′전혀 모른다′ 56명(13.4%), ′매우 잘 알고 있다′ 31명(7.4%)로 나타나 불법적인 CCTV 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 등의 피해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식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홍석, 2009: 44-45). . 또한 지역내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해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별로 침해되지 않는다′ 134명(32.1%), ′보통이다′ 133명(31.8%), ′침해된다′ 107명(25.6%), ′전혀 침해되지 않는다′ 32명(7.7%), ′매우 침해된다′ 12명(2.9%)로 나타나 응답자들은 방범용 CCTV의 설치 및 운영행위가 개인의 정보 프라이버시권을 그다지 침해한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최홍석, 2009: 67-68).

## 3. CCTV의 관련법규

###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 (1) 법률

한국의 현행법령 가운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0012호, 2010. 2. 4 개정)이 있다. 같은 법률 제2조 제5호의2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고 CCTV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조의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서는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

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법 제4조의3(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위탁)에서는 ①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요건, 위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2) 시행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1025호, 2008. 9. 22 개정)에 의하면,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법 제4조의 2의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다른 방법으로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장소 안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의 대표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방법. 2.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자·보안책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법.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공청회의 개최. 나. 그 밖에 해당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설문조사·여

론조사 등의 실시.

시행령 제4조의 2 (안내판의 설치)에서는 ①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건물 안에 다수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원거리 촬영, 과속·신호위반단속 또는 교통흐름조사 등의 목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침해의 위험이 적은 경우. 2. 산불감시용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장소적 특성으로 인하여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안내판을 설치하더라도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알아볼 수 없는 경우. ③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대하여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2.「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3.「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른 보안목표시설.

시행령 제4조의3 (설치·관리 사무의 위탁)에서는 ①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 장비 및 기술을 갖출 것, 2. 수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위탁대상이 되는 사무의 범위,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제한 등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후 이를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안내판에 수탁기관의 명칭, 담당자 및 연락처를 게재하여야 한다.

### 2)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개정) 제2조(시설 및 설비기준)에서는 공중위생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별표 1과 같이 규정하면서 <별표 1> 1. 목욕장법 사. 목욕실·발한실 및 탈의실 외의 시설에 무인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할 수 있으며,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설치여부를 이용객이 잘 알아볼 수 있게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3)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국토행양부령 제219호, 2010. 2. 17 개정)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의하면,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54호, 2010. 5. 4 개정) 제14조(카지노업의 영업에 관한 제한 등)에 의하면, ② 카지노사업자는 호텔의 내부 및 외부의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10호 일부개정 2008.6.13)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촬영)에 의하면, ①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6.10.27> ② 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6.10.27>[본조신설 1998.12.28]

### 6)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국회규칙 제113호, 2000. 12. 1 개정) 제11조(폐쇄회로시스템)에 의하면, 의장은 본회의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등 국회의 주요의사진행과정을 국회구내에서 시청하고 음성 및 영상자료를 중계방송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폐쇄회로 시스템을 연차적으로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 7) 외국인보호규칙

외국인보호규칙(법무부령 제580호, 2005. 9. 23 개정) 제37조(안전대책)에 의하면, ① 소장은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긴급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호시설과 인원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하며 폐쇄회로영상장치 등의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소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반하는 보호외국인의 언행 또는 증거물 등에 대하여 비디오테이프에 녹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보호외국인의 사생활, 초상권 등의 침해가 없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 운영 또는 시행되어야 한다.

### 8) 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

남북회담업무 보안관리지침(대통령훈령 제148호, 2005. 4. 29제정) 제3조(정의)

에 의하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회담상황실"이라 함은 비공개로 개최되는 남북회담의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위하여 전화·폐쇄회로 등 통신설비를 설치·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 9)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474호, 2005. 10. 7 제정)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의하면,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2.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다. 민방위기관·소방기관·경찰기관·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 10)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제4조의 3에서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2(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고장·노후 등으로 교체·수리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조의 2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은 아동에 대한 범죄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해당 아동보호구역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화상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의4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1) 법무부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2005. 8. 17. 법무부예규 제731호)

법무부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제53조의 엄중격리대상자 수용과 관련하여서 ③ 자해·자살 등으로부터 엄중격리대상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엄중격리 사동 수용거실에는 CCTV 카메라 및 자해·자살 방지용 비품 등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12) 기타

이외에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2008. 4)에서 제1장 총칙, 제2장 CCTV설치 시 준수사항,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4장 보칙 등의 내용으로 총19조를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민간부분 CCTV 조사분석 및 결과

## 제1절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CCTV 실태조사

### 1. 조사설계

#### 1) 조사방법

본 연구는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 CCTV의 설치 현황 및 사생활침해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에 1차 조사로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16일까지 15일간 서울,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소재 남녀 목욕시설 150여개소와 천안, 대전, 대구를 포함한 지방 소재 남녀 목욕시설 60여개소 등 총 220여개 시설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CCTV 설치현황 및 사생활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어서 2차 조사로 2010년 8월 23일부터 9월 17일까지 1차 조사와 동일한 지역구분으로 총 210여개 시설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CCTV 설치현황 및 사생활 침해 실태를 조사하였다.

실태조사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조사한 이유는 (1) 지역별, 성별, 시설유형별 무작위 표본 추출방식으로 진행되는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2) 대부분의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 등이 8월 초중순의 여름휴가기간을 이용하여 시설보수 후 재개장하기 때문에 상반기와 하반기의 시설간 차이를 평균하기 위해서였다. 이 중에서 통계처리에 부적합한 10여개소를 제외한 총 420개 시설을 조사분석 대상으로 삼아 SPSS 11.0 통계처리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2) 개념의 정의

본 연구조사에 있어서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을 대상으로한 실태조사의 성격상 장소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목욕중앙회협회를 비롯하여 관련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대형 찜질방, 사우나 등의 조사대상 시설에서도 휴게실, 수면실, 만남의 광장 등 각각의 장소 개념이 모호한 곳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휴게실과 탈의실의 구분, 출입문과 카운터의 구분, 신발장과 탈의실의 구분, 복도의 범위 등 다양한 장소 개념의 편차가 존재하는 바, 이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1. 휴게실, 수면실의 경우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체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의 개념으로 포함시켰다.
2. 출입문, 카운터, 신발장의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구분이 가능하지만, 일부시설에서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체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의 개념으로 포함시켰다. 단, 카운터가 출입문 외부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제외하였다.
3. 복도의 범위는 탈의실과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 한정하였으며, 탈의실과 연결되어 있을 경우 신체노출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탈의실의 개념으로 포함시켰다.

## 2. 조사결과

### (1) 목욕시설유형과 남·여탕 및 지역구분

<표 3-1> 조사대상의 시설유형과 남·여탕 및 지역의 빈도

(단위: 곳, %)

| 특성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시설유형 | 목욕탕 | 116 | 27.6 |
| | 사우나(찜질방) | 264 | 62.9 |
| | 기타(수영장 등) | 40 | 9.5 |
| | 합계 | 420 | 100.0 |
| 남녀구분 | 남탕 | 218 | 51.9 |
| | 여탕 | 202 | 48.1 |
| | 합계 | 420 | 100.0 |
| 지역 구분 | 수도권 | 298 | 71.0 |
| | 지방 | 122 | 29.0 |
| | 합계 | 420 | 100.0 |

이번 조사대상인 목욕시설에는 목욕탕, 찜질방을 포함한 사우나, 수영장이나 놀이시설을 포함한 기타 유형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목욕탕에는 사우나시설이 있지만 이 조사에서 분류한 사우나시설은 목욕탕내에 있는 사우나시설은 물론 소위 찜질시설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00사우나로 명명되는 시설에는 욕탕내의 사우나 시설 외에 별도의 찜질시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타로 분류된 경우는 욕탕시설, 사우나(찜질을 포함)시설은 물론 놀이시설까지 완비된 경우였다.

이 조사의 대상이 된 목욕시설은 총 420곳에서 사우나 264곳 62.9%로 가장 많았으며, 목욕탕이 116곳으로 27.6%, 기타 수영장 등이 40곳으로 9.5%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사대상인 목욕시설은 남탕이 218곳으로 51.9%였고, 여탕은 202곳으로 48.1%였다. 또한 조사대상 지역은 서울 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이 298개 시설로 71.0%를 차지하였고, 대전과 대구 등 지방이 122개 시설로 29.0%를 차지하였다.

### (2) CCTV설치유무

<표 3-2> 조사대상목욕시설의 CCTV설치유무

(단위: 곳, %)

| CCTV설치유무 | 빈도 | 퍼센트(%) |
|---|---|---|
| 없 음 | 118 | 28.1 |
| 있 음 | 302 | 71.9 |
| 합 계 | 420 | 100.0 |

이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CCTV가 1대라도 설치되어 있는 경우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목욕시설 총 420곳 중 302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CCTV의 편리성 등 각종 혜택에도 불구하고 탈의실에의 설치 등 무분별한 사용에 따른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예상할 때, 조사대상 목욕시설의 71.9%에서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에서 그 오남용의 가능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3-3> 조사대상목욕시설의 유형별 CCTV설치유무

(단위: 곳, %)

| 구 분 | | | 유무 | | 전체 |
|---|---|---|---|---|---|
| | | | 없음 | 있음 | |
| 시설 유형 | 목욕탕 | 빈도 | 67 | 49 | 116 |
| | | 시설유형중% | 57.8% | 42.2% | 100.0% |
| | | 유무중% | 59.8% | 15.9% | 27.6% |
| | 사우나(찜질방) | 빈도 | 47 | 217 | 264 |
| | | 시설유형중% | 17.8% | 82.2% | 100.0% |
| | | 유무중% | 41.9% | 70.5% | 62.9% |
| | 기타(수영장 등) | 빈도 | 4 | 36 | 40 |
| | | 시설유형중% | 10.0% | 90.0% | 100.0% |
| | | 유무중% | 3.6% | 11.7% | 9.5% |
| 전체 | | 빈도 | 112 | 308 | 420 |
| | | 시설유형중% | 26.7% | 73.3% | 100.0% |
| | | 유무중% | 100.0% | 100.0% | 100.0% |

이번에는 조사대상 목욕시설의 유형별로 CCTV설치유무를 조사하였다. 즉 목욕탕, 사우나, 기타 유형별 CCTV의 설치정도를 조사한 것이다. 그 결과 목욕탕은 전체 116곳 중 49곳으로 42.2%가 CCTV시설을 1대 이상 설치하고 있었다.

사우나(찜질방)시설에서는 264곳 중 217곳(82.2%)에 CCTV시설을 1대 이상 설치하고 있어 거의 대부분의 사우나시설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기타(수영장 등)시설에는 40곳 중 36곳(90.0%)에 CCTV시설을 1대 이상 설치하고 있어 기타시설에서도 대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 조사결과 CCTV가 1대라도 설치되어 있는 목욕시설의 순위는 사우나시설, 기타시설, 목욕탕시설 순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4> 조사대상 남여목욕시설별 CCTV설치유무

(단위: 곳, %)

| 구 분 | | | 유 무 | | 전 체 |
|---|---|---|---|---|---|
| | | | 없음 | 있음 | |
| 구분 | 남탕 | 빈도 | 54 | 164 | 218 |
| | | 구분중% | 24.8% | 75.2% | 100.0% |
| | | 유무중% | 45.4% | 54.5% | 51.9% |
| | 여탕 | 빈도 | 65 | 137 | 202 |
| | | 구분중% | 32.2% | 67.8% | 100.0% |
| | | 유무중% | 54.6% | 45.5% | 48.1% |
| 전 체 | | 빈도 | 119 | 301 | 420 |
| | | 구분중% | 28.3% | 71.7% | 100.0% |
| | | 유무중% | 100.0% | 100.0% | 100.0% |

또한 조사대상 남녀 목욕시설별 CCTV설치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남탕은 218곳 중 164곳에 CCTV가 1대라도 설치되어 조사대상 중 75.2%의 시설에서 CCTV가 발견되었다. 한편 여탕의 경우도 조사대상 202곳 중 137곳에 CCTV가 설치되어, 조사대상 여탕시설 중 67.8%의 시설에서 CCTV가 발견되었다. 여탕이 남탕보다 CCTV의 설치된 경우가 적지만, 절반을 훨씬 상회하는 여성목욕시설에서 CCTV가 발견되는 것은 오남용을 떠나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고 하겠다.

### (3) CCTV설치장소

<표 3-5> 조사대상 목욕시설 내 CCTV설치장소

(단위: 곳, %)

| 출입문 | | | 카운터 | | | 신발장 | | |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없음 | 229 | 54.5 | 없음 | 219 | 52.1 | 없음 | 323 | 76.9 |
| 있음 | 191 | 45.5 | 있음 | 201 | 47.9 | 있음 | 96 | 23.1 |
| 전체 | 420 | 100.0 | 전체 | 420 | 100.0 | 전체 | 420 | 100.0 |
| 탈의실 | | | 화장실 | | | 목욕실 | |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없음 | 341 | 81.2 | 없음 | 407 | 96.9 | 없음 | 414 | 98.6 |
| 있음 | 79 | 18.8 | 있음 | 13 | 3.1 | 있음 | 6 | 1.4 |
| 전체 | 420 | 100.0 | 전체 | 420 | 100.0 | 전체 | 420 | 100.0 |
| 찜질방공용부분 | | | 수면실 | | | 발한실 | |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없음 | 317 | 87.3 | 없음 | 231 | 86.5 | 없음 | 388 | 92.4 |
| 있음 | 46 | 12.7 | 있음 | 36 | 13.5 | 있음 | 32 | 7.6 |
| 전체 | 363 | 100.0 | 전체 | 267 | 100.0 | 전체 | 420 | 100.0 |

다음으로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구체적으로 CCTV를 설치한 장소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는 조사대상 420곳의 목욕시설 중 CCTV가 1대라도 발견된 장소를 계산한 것으로 예컨대 출입문에서 CCTV가 3대 발견되었다고 해서 3건으로 계산하지 않았다. 각 발견된 장소별 CCTV설치대수 및 그 특성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설명할 것이다.

조사결과 <표 3-5>에서 보듯이 출입문에 CCTV 설치된 경우는 총 420곳의 목욕시설 중 191곳으로 45.5%의 시설에서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카운터에 CCTV 설치된 경우도 출입문에 설치된 경우와 같은 결과치를 보였다. 즉 총 420곳의 목욕시설 중 201곳으로 47.9%의 시설에서 카운터에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이들의 경우는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탈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비교적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부분으로 이해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용자가 탈의하는 과정이나 탈의 후에 CCTV에 노출되는 문제는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탈의 후 사용자가 주로 머무는 찜질방 공용부분에 CCTV가 발견된 경우는 공용부분이 없는 시설을 제외한 시설 전체 363개 시설 중 46곳 12.7%의 시설에서 발견되었다. 찜질방 공용시설은 사용자가 탈의한 상태는 아니지만 수면을 취하는 등의 개인적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할 공간이므로 매점 등 특히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라고 보인다.

마지막으로 발한실에 설치한 경우도 32곳으로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7.6%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욕탕시설과 사우나(찜질방)시설 및 기타시설에서 발한실의 위치가 다를 수 있다. 목욕탕시설의 경우 대부분 목욕탕안의 욕조 옆에 위치한 경우지만, 사우나시설의 경우는 욕탕과는 별도로 층을 달리하거나 구분된 독립공간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조사에서는 이러한 위치의 차이를 무시하고 발한실의 유무만을 조사하였다. 발한실에 CCTV가 발견된 경우는 사우나(찜질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 (4) 1차조사의 장소별 특성

이하에서는 1차조사의 CCTV가 발견된 장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목욕시설 중 출입문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93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6> 1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출입문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14 | 54.3 |
| 1개 | 78 | 37.1 |
| 2개 | 16 | 7.6 |
| 3개 | 1 | .5 |
| 5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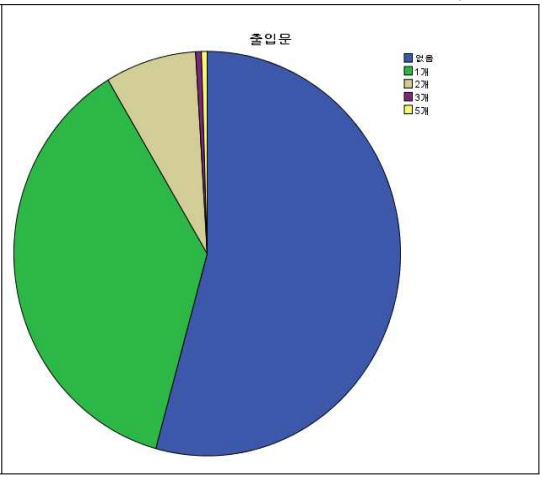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78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출입문에 2개설치한 경우는 16곳, 3개 혹은 5개 설치한 곳은 각각 1곳 이었다.

<표 3-7> 1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신발장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58 | 75.2 |
| 1개 | 42 | 20.0 |
| 2개 | 3 | 1.4 |
| 3개 | 5 | 2.4 |
| 4개 | 1 | .5 |
| 5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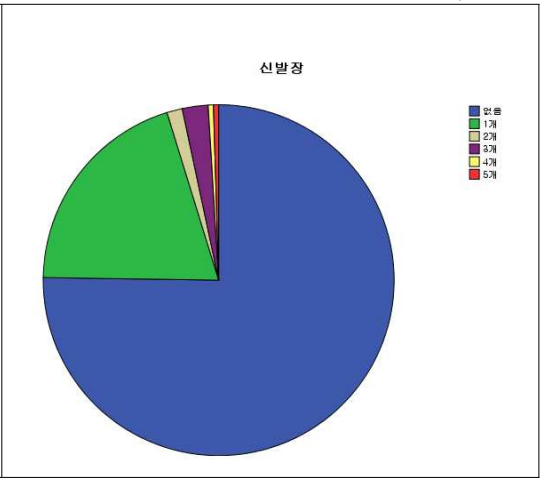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욕시설 중 신발장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52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42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2개 설치한 경우는 3곳, 3개 설치한 경우는 5곳, 4개와 5개가 설치된 곳은 각각 1곳 이었다.

<표 3-8> 1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카운터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14 | 54.3 |
| 1개 | 71 | 33.8 |
| 2개 | 18 | 8.6 |
| 3개 | 6 | 2.9 |
| 4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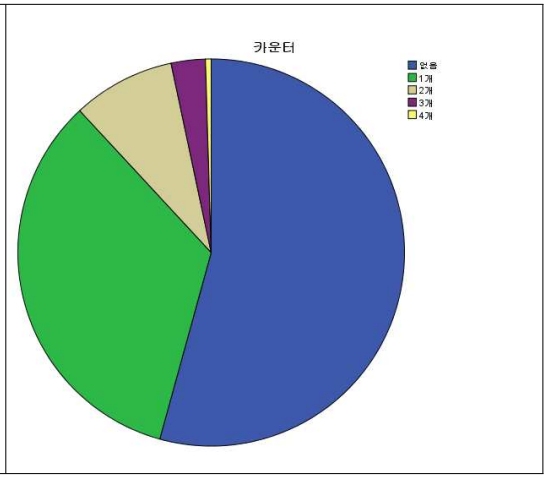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욕시설 중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96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71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카운터에 2개 설치한 경우는 18곳, 3개 설치한 경우는 6곳, 4개가 설치된 곳은 1곳 이었다.

<표 3-9> 1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탈의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70 | 81.0 |
| 1개 | 14 | 6.7 |
| 2개 | 7 | 3.3 |
| 3개 | 10 | 4.8 |
| 4개 | 2 | 1.0 |
| 5개 | 4 | 1.9 |
| 6개 | 1 | .5 |
| 8개 | 1 | .5 |
| 9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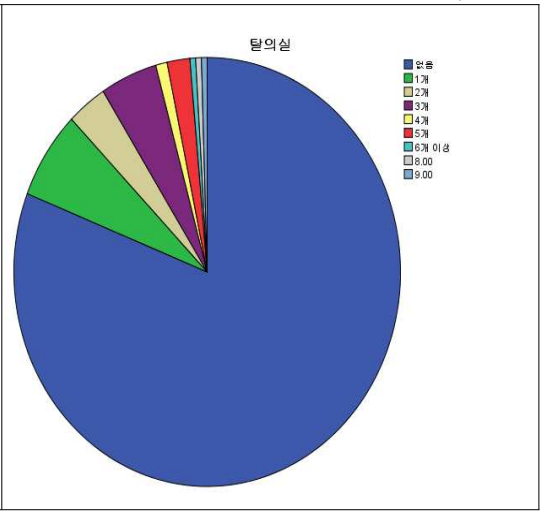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목욕시설 이용자가 탈의하기 전에 CCTV에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옷을 입고 노출되는 경우임으로 어느 정도 이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의과정이나 탈의 후에 노출되는 것은 이해할 성질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조사결과 목욕시설 중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40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14곳, 2개 설치한 경우는 7곳, 3개 설치한 경우는 10곳, 4개가 설치된 곳은 2곳, 심지어 5개 이상 설치한 시설도 7곳이나 되었다.

<표 3-10> 1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화장실 앞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203 | 96.7 |
| 1개 | 6 | 2.9 |
| 2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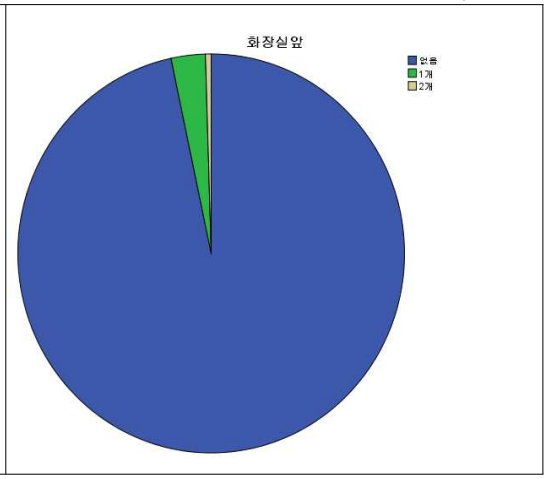


위의 탈의실에 설치한 경우의 연장선에서 목욕시설 내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결과 화장실 부근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7곳으로 1개를 설치한 곳은 6곳, 2개를 설치한 곳은 1곳 이었다.

<표 3-11>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목욕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207 | 98.6 |
| 1개 | 3 | 1.4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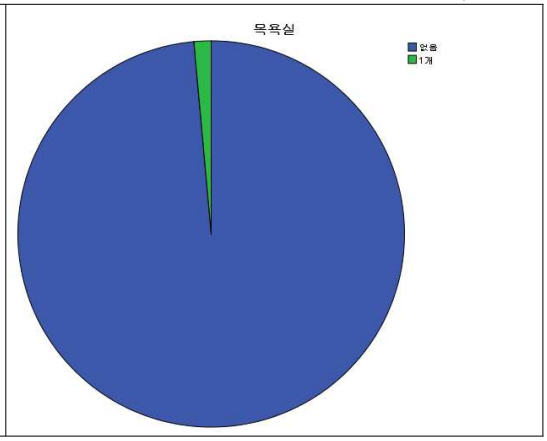


다음 위의 탈의실에 설치한 경우의 연장선에서 목욕시설 내 목욕실은 이용자가 나체 상태임을 감안할 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결과 목욕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3곳으로 전부 1대의 CCTV를 발견하였다.

<표 3-12>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복도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204 | 97.1 |
| 1개 | 3 | 1.4 |
| 5개 | 1 | .5 |
| 6개 | 1 | .5 |
| 7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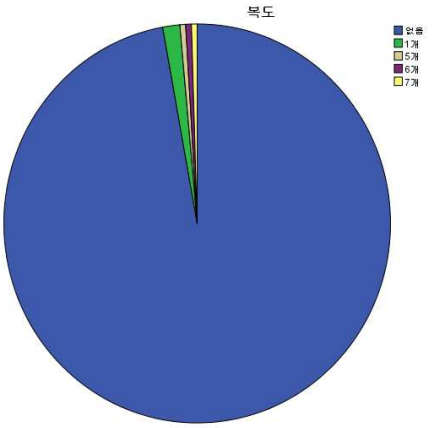


다음 복도의 경우도 주로 목욕시설 이용자가 탈의한 후 이동통로 상에 설치된 경우이며, 찜질시설을 갖춘 사우나의 경우 찜질복을 입었다고는 하나, 속옷을 입지 않고 발한실이나 수면실을 이용하고자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런 상황의 이용자가 CCTV에 노출되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복도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6건으로 1개를 설치한 곳은 3곳, 5개, 6개, 7개를 설치한 곳이 각각 1곳 이었다.

<표 3-13>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수면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93 | 79.4 |
| 1개 | 10 | 8.5 |
| 2개 | 10 | 8.5 |
| 3개 | 3 | 2.6 |
| 4개 | 1 | .8 |
| 합계 | 117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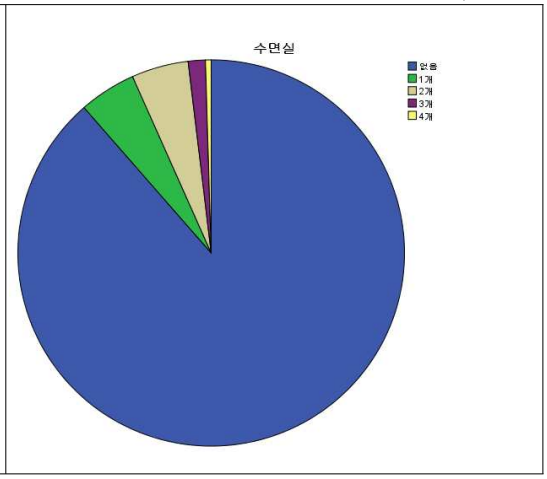


수면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수면에 들어간 경우이다. 수면실을 이용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잠자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수면실을 이용할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는 무의식중에 인권이 침해상태를 맞이하고 침해된 상태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CCTV를 통한 수면실의 감시인 것이다.

조사결과 목욕시설 중 수면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수면실이 있는 목욕시설 총 117곳 중 24곳 이었다. 그리고 수면실에 설치된 CCTV의 개수는 1개인 곳이 10곳, 2개인 곳이 10곳, 3개와 4개인 곳이 각각 3곳과 1곳 이었다.

<표 3-14> 1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발한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91 | 91.0 |
| 1개 | 7 | 3.3 |
| 2개 | 4 | 1.9 |
| 3개 | 3 | 1.4 |
| 4개 | 2 | 0.9 |
| 5개 | 2 | 0.9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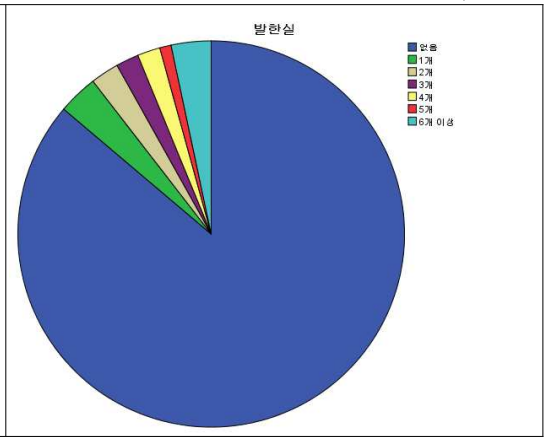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한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수면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찜질복을 입고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땀으로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보통이며 얼굴의 홍조와 땀범벅으로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상상만으로 이용자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조사결과 발한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총 19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설치대수는 1개를 설치한 곳은 7곳, 2개는 4곳, 3개를 설치한 곳은 3곳, 4개와 5개를 설치한 곳은 각각 2곳 이었다.

<표 3-15> 1차조사 대상중 CCTV설치 고지유무와 고지 장소의 수 현황

(단위: 곳, %)

| 고지유무 | 빈도 | 퍼센트 | 장소의 수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33 | 63.3 | 없음 | 133 | 63.3 |
| | | | 1곳 | 43 | 20.5 |
| | | | 2곳 | 17 | 8.1 |
| 있음 | 77 | 36.7 | 3곳 | 6 | 2.9 |
| | | | 4곳 | 5 | 2.4 |
| | | | 5곳 | 2 | 1.0 |
| | | | 6곳 | 2 | 1.0 |
| 전체 | 210 | 100.0 | 7곳 | 1 | .5 |
| | | | 10곳 | 1 | .5 |
| | | | 전체 | 210 | 100.0 |

한편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사하였다. 사용자들이 CCTV에 노출되

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CCTV의 설치에 따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 <3-15>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210곳의 목욕시설에 CCTV가 있다고 고지된 곳은 77곳 이었고 133곳은 고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고지된 장소의 수는 1곳에 설치한 목욕시설이 43곳으로 가장 많았고, 10곳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10곳 등 많은 곳에 고지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를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표 <3-15>에서 조사대상 210곳 중 153곳에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CCTV설치고지에 대한 조사결과 77곳만이 설치고지를 하였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CCTV가 발견된 시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76곳의 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고도 설치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CCTV에 노출되는 지도 모르는 체 자신들의 신체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표 3-16> 1차조사 대상 중 인권침해우려장소의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고지유무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38 | 65.7 |
| 있음 | 72 | 34.3 |
| 전체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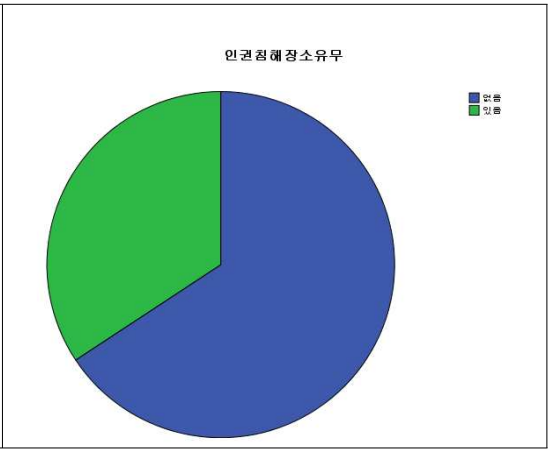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설치된 CCTV의 활용에 따른 인권침해우려 가능성 정도를 기준으로 탈의실, 수면실, 발한실, 목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장소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신발장, 출입문, 카운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권침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인권침해우려장소가 발견된 시설은 전체 72곳으로

조사대상의 34.3%였다. 이들 시설에서 실제 CCTV를 활용하여 인권침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설치한 CCTV중 상당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2차조사의 장소별 특성

이하에서는 1차조사의 CCTV가 발견된 장소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목욕시설 중 출입문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총93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17> 2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출입문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19 | 56.7 |
| 1개 | 74 | 35.2 |
| 2개 | 16 | 7.6 |
| 3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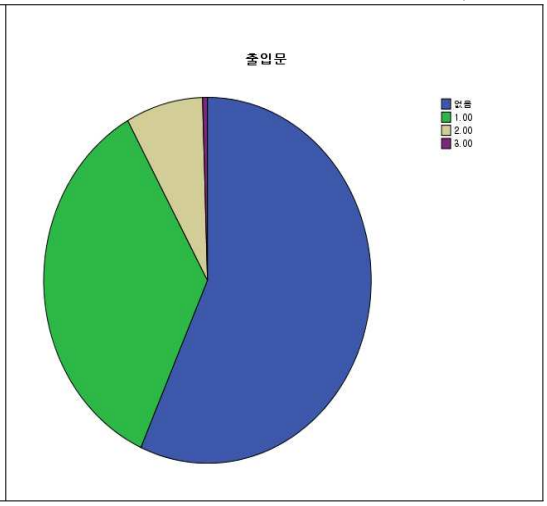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74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출입문에 2개설치한 경우는 16곳, 3개를 설치한 곳은 1곳 이었다.

<표 3-18> 2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신발장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65 | 78.9 |
| 1개 | 35 | 16.7 |
| 2개 | 2 | 1.0 |
| 3개 | 5 | 2.4 |
| 4개 | 1 | .5 |
| 5개 | 1 | .5 |
| 합계 | 209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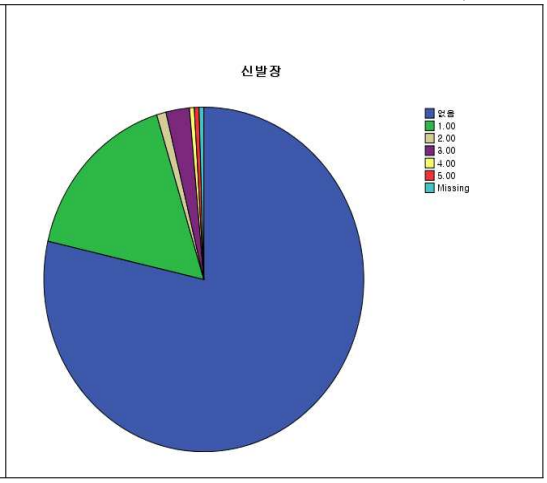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욕시설 중 신발장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44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35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2개 설치한 경우는 2곳, 3개 설치한 경우는 5곳, 4개와 5개가 설치된 곳은 각각 1곳 이었다.

<표 3-19> 2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카운터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11 | 52.9 |
| 1개 | 67 | 31.9 |
| 2개 | 22 | 10.5 |
| 3개 | 7 | 3.3 |
| 4개 | 3 | 1.4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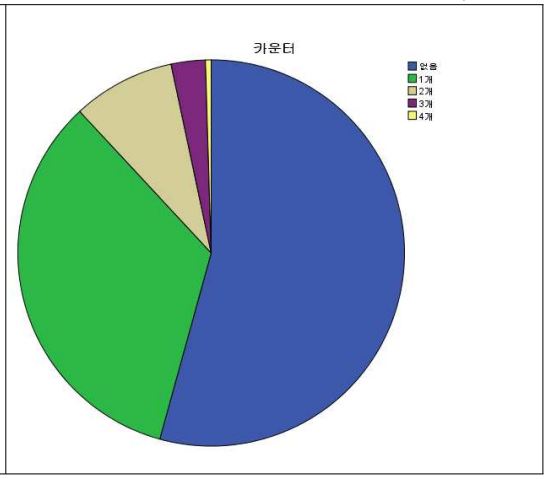

다음으로 목욕시설 중 카운터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99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67곳으로 설치한 경우의 대부분이며, 카운터에 2개 설치한 경우는 22곳, 3개 설치한 경우는 7곳, 4개가 설치된 곳은 3곳 이었다.

<표 3-20> 2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탈의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71 | 81.4 |
| 1개 | 15 | 7.1 |
| 2개 | 7 | 3.3 |
| 3개 | 7 | 3.3 |
| 4개 | 3 | 1.4 |
| 5개 | 4 | 1.9 |
| 8개 | 1 | .5 |
| 9개 | 1 | .5 |
| 14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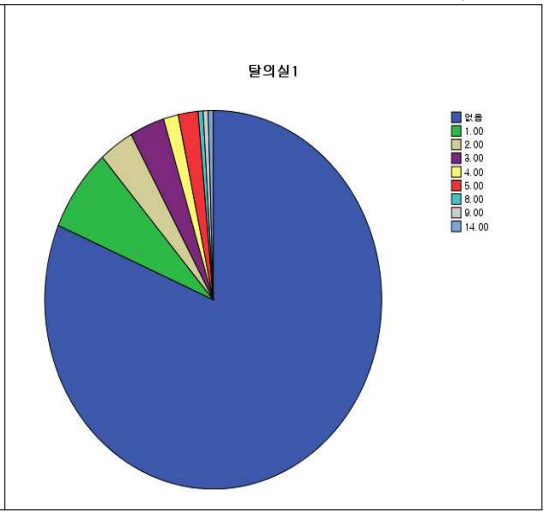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목욕시설 이용자가 탈의하기 전에 CCTV에 노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옷을 입고 노출되는 경우임으로 어느 정도 이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탈의과정이나 탈의 후에 노출되는 것은 이해할 성질의 경우가 아니라고 보여 진다.

조사결과 목욕시설 중 탈의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총 39개 시설에서 CCTV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몇 개가 설치되었는지를 조사하여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CCTV에 노출되는 정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조사결과 위의 표와 같이 1개만 설치된 곳은 15곳, 2개 설치한 경우는 7곳, 3개 설치한 경우는 7곳, 4개가 설치된 곳은 3곳, 심지어 14개 이상 설치한 시설도 있었다.

<표 3-21> 2차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화장실 앞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204 | 97.1 |
| 1개 | 5 | 2.4 |
| 2개 | 1 | .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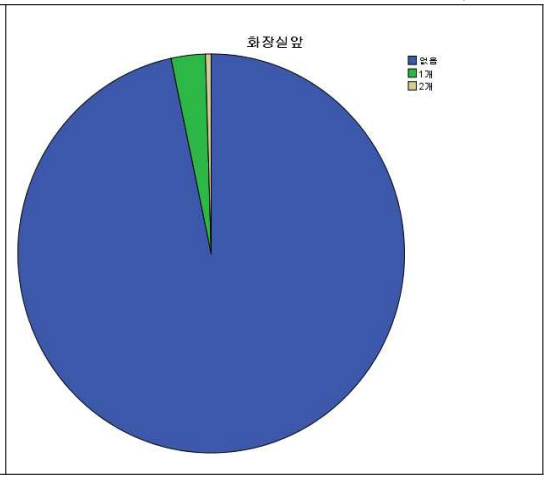


위의 탈의실에 설치한 경우의 연장선에서 목욕시설 내 화장실 앞에 CCTV를 설치하는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결과 화장실 부근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6곳으로 1개를 설치한 곳은 5곳, 2개를 설치한 곳은 1곳 이었다.

<표 3-22>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목욕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207 | 98.6 |
| 1개 | 3 | 1.4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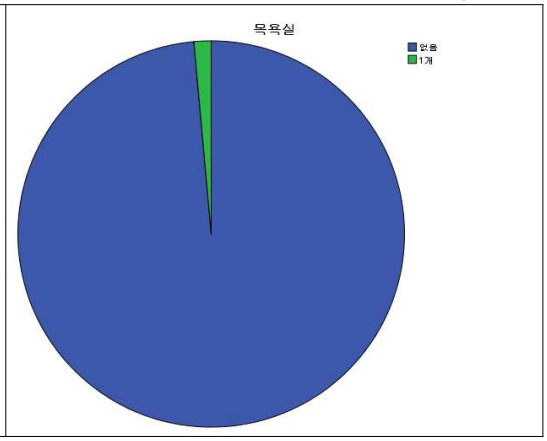


다음 위의 탈의실에 설치한 경우의 연장선에서 목욕시설 내 목욕실은 이용자가 나체 상태임을 감안할 때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문제를 안고 있다. 조사결과 목욕실 내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3곳으로 전부 1대의 CCTV를 발견하였다.

<표 3-23>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찜질방 공용시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13 | 53.8 |
| 1개 | 14 | 6.7 |
| 2개 | 10 | 4.8 |
| 3개 | 5 | 2.4 |
| 4개 | 6 | 2.9 |
| 5개 | 1 | .5 |
| 7개 | 1 | .5 |
| 9개 | 1 | .5 |
| 13개 | 1 | .5 |
| 15개 | 1 | .5 |
| 합계 | 153 | 72.9 |
| 결측치 | 57 | 27.1 |
| 전체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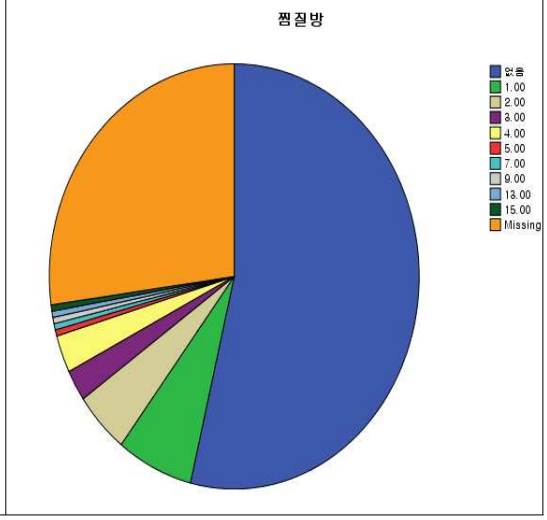


다음은 찜질방 공용시설에 CCTV가 설치된 경우이다. 찜질방 공용시설은 찜질복을 입었다고는 하나, 속옷을 입지 않고 발한실이나 수면실을 이용하거나 발한실 이용 후 휴식이나 수면을 취하는 장소이다. 속옷을 입지 않고 발한된 상태의 몸이 CCTV에 그대로 노출될 수 있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찜질방 공용시설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총 40건으로 1개를 설치한 곳은 14곳에서 심지어 15개를 설치한 곳까지 있었다. 그리고 찜질방공용시설이 없는 57개 시설을 제외하면 이 공용시설에 CCTV가 설치된 비율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24>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수면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38 | 65.7 |
| 1개 | 6 | 2.9 |
| 2개 | 5 | 2.4 |
| 5개 | 1 | .5 |
| Total | 150 | 71.4 |
| 결측치 | 60 | 28.6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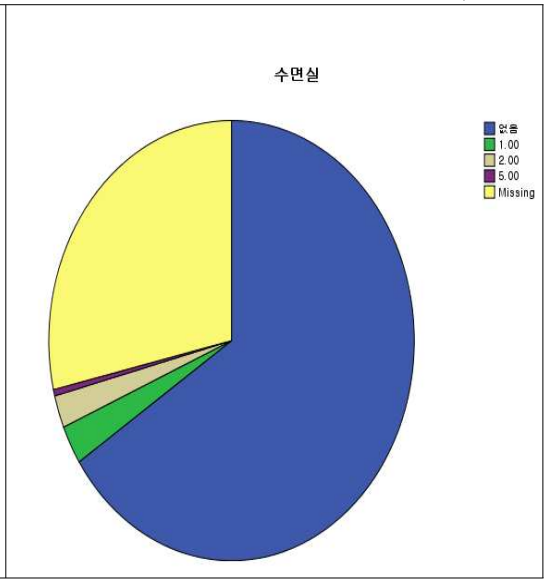


수면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완전한 무방비 상태인 수면에 들어간 경우이다. 수면실을 이용하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잠자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상상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 수면실을 이용할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이처럼 이용자는 무의식중에 인권이 침해상태를 맞이하고 침해된 상태조차도 인지할 수 없는 것이 CCTV를 통한 수면실의 감시인 것이다.

조사결과 목욕시설 중 수면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수면실이 있는 목욕시설 총 150곳 중 12곳 이었다. 그리고 수면실에 설치된 CCTV의 개수는 1개인 곳이 6곳, 2개인 곳이 5곳, 5개인 곳이 1곳 이었다.

<표 3-25> 2차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발한실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구분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97 | 93.8 |
| 1개 | 7 | 3.3 |
| 2개 | 2 | 1.0 |
| 4개 | 2 | 1.0 |
| 6개 | 1 | 0.5 |
| 9개 | 1 | 0.5 |
| 합계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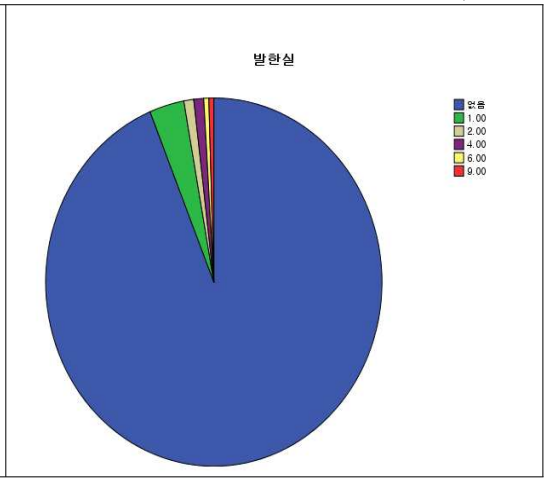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발한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수면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찜질복을 입고 시설을 이용한다고 해도 땀으로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경우가 보통이며 얼굴의 홍조와 땀범벅으로 누군가가 감시한다는 상상만으로 이용자들은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조사결과 발한실에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총 1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설치대수는 1개를 설치한 곳은 7곳, 2개는 2곳, 4개를 설치한 곳은 2곳, 심지어 6개와 9개를 설치한 곳은 각각 1곳 이었다.

<표 3-26> 2차 조사대상 중 CCTV설치 고지유무와 고지 장소의 수 현황

(단위: 곳, %)

| 고지유무 | 빈도 | 퍼센트 | 장소의 수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30 | 62.2 | 없음 | 130 | 62.2 |
| | | | 1곳 | 40 | 19.1 |
| | | | 2곳 | 20 | 9.6 |
| 있음 | 79 | 37.8 | 3곳 | 10 | 4.8 |
| | | | 4곳 | 4 | 1.9 |
| | | | 5곳 | 1 | .5 |
| | | | 7곳 | 2 | 1.0 |
| 전체 | 209 | 100.0 | 10곳 | 1 | .5 |
| | | | 11곳 | 1 | .5 |
| | | | 전체 | 209 | 100.0 |

한편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지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조사하였다. 사용자들이 CCTV에 노출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CCTV의 설치에 따른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의 표 <3-26>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209곳의 목욕시설에 CCTV가 있다고 고지된 곳은 79곳 이었고 130곳은 고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고지된 장소의 수는 1곳에 설치한 목욕시설이 40곳으로 가장 많았고, 11곳에 설치한 경우도 있었다. 10곳 등 많은 곳에 고지한 경우는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설치를 고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위의 표 <3-26>에서 조사대상 210곳 중 148곳에서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CCTV설치고지에 대한 조사결과 79곳만이 설치고지를 하였다는 점이다.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CCTV가 발견된 시설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69곳의 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고도 설치고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이들 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CCTV에 노출되는 지도 모르는 체 자신들의 신체 노출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각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표 3-27> 2차 조사대상 중 인권침해우려장소의 CCTV설치현황

(단위: 곳, %)

| 고지유무 | 빈도 | 퍼센트 |
|---|---|---|
| 없음 | 155 | 73.8 |
| 있음 | 55 | 26.2 |
| 전체 | 21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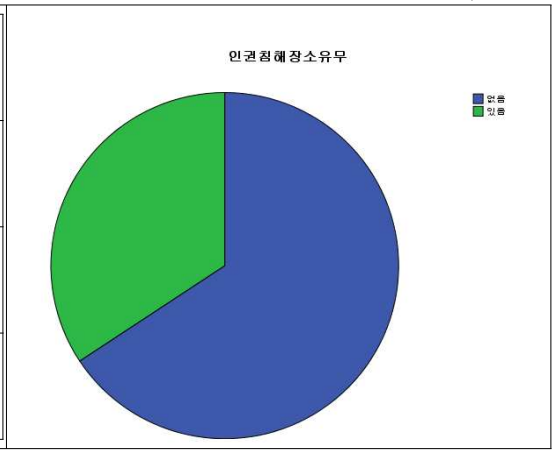


다음으로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설치된 CCTV의 활용에 따른 인권침해우려 가능성 정도를 기준으로 탈의실, 수면실, 발한실, 목욕실, 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경우를 인권침해장소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외 신발장, 출입문, 카운터 등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권침해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인권침해우려장소가 발견된 시설은 55곳으로 조사대상의 26.2%였다. 이들 시설에서 실제 CCTV를 활용하여 인권침해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에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조사대상 목욕시설에서 설치한 CCTV중 상당수는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4) 목욕시설유형별·성별·지역별 차이분석

이하에서는 2차조사 목욕시설을 중심으로 각 시설에 설치된 CCTV의 일반적인 현황분석을 보다 심층적으로 하여 각 목욕시설의 유형별, 남녀목욕시설의 차이에 따른 또는 지역별로 CCTV가 설치된 장소가 차이가 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심층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보다 정확한 목욕시설의 CCTV활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겠다.

### 1) 목욕시설유형별 차이분석

<표 3-28> 목욕시설 유형별 CCTV설치 차이분석

| | | 제곱합 | df | 평균 제곱 | 거짓 | 유의확률 |
|---|---|---|---|---|---|---|
| 출입문 | 집단-간 | 6.869 | 2 | 3.435 | 15.906 | **.000** |
| | 집단-내 | 44.697 | 207 | .216 | | |
| | 합계 | 51.567 | 209 | | | |
| 신발장 | 집단-간 | 7.055 | 2 | 3.527 | 7.058 | **.001** |
| | 집단-내 | 102.955 | 206 | .500 | | |
| | 합계 | 110.010 | 208 | | | |
| 카운터 | 집단-간 | 28.821 | 2 | 14.410 | 21.547 | **.000** |
| | 집단-내 | 138.436 | 207 | .669 | | |
| | 합계 | 167.257 | 209 | | | |
| 화장실 | 집단-간 | .219 | 2 | .110 | 2.655 | .073 |
| | 집단-내 | 8.547 | 207 | .041 | | |
| | 합계 | 8.767 | 209 | | | |
| 목욕실 | 집단-간 | .026 | 2 | .013 | .905 | .406 |
| | 집단-내 | 2.931 | 207 | .014 | | |
| | 합계 | 2.957 | 209 | | | |
| 발한실 | 집단-간 | 6.294 | 2 | 3.147 | 4.280 | **.015** |
| | 집단-내 | 152.201 | 207 | .735 | | |
| | 합계 | 158.495 | 209 | | | |
| 탈의실 | 집단-간 | 1.775 | 2 | .888 | 6.129 | **.003** |
| | 집단-내 | 29.982 | 207 | .145 | | |
| | 합계 | 31.757 | 209 | | | |
| 찜질방 | 집단-간 | 21.544 | 2 | 10.772 | 2.584 | .079 |
| | 집단-내 | 625.175 | 150 | 4.168 | | |
| | 합계 | 646.719 | 152 | | | |
| 수면실 | 집단-간 | .190 | 1 | .190 | .587 | .445 |
| | 집단-내 | 47.870 | 148 | .323 | | |
| | 합계 | 48.060 | 149 | | | |
| 인권침해장소 cctv설치 | 집단-간 | 5.002 | 2 | 2.501 | 14.546 | **.000** |
| | 집단-내 | 35.593 | 207 | .172 | | |
| | 합계 | 40.595 | 209 | | | |
| 모니터유무 | 집단-간 | .771 | 2 | .386 | 1.655 | .194 |
| | 집단-내 | 48.257 | 207 | .233 | | |
| | 합계 | 49.029 | 209 | | | |
| 설치고지유무 | 집단-간 | 6.016 | 2 | 3.008 | 14.368 | **.000** |
| | 집단-내 | 43.123 | 206 | .209 | | |
| | 합계 | 49.139 | 208 | | | |

위의 <표 3-28>은 조사대상 목욕시설의 유형에 따라 CCTV설치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목욕시설의 출입문, 신발장, 카운터, 탈의실, 화장실앞, 목욕탕내, 발한실, 수면실, 복도 등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고지하는지 유무, 인권침해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 유무 및 모니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내용이 조사대상 목욕시설유형 즉 목욕탕, 사우나(찜질방), 기타 수영장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위의 표와 같이 출입문, 신발장, 카운터, 발한실, CCTV가 한곳이라도 설치되었는지 유무, 인권침해우려장소에 설치되었는지 유무, 설치고지가 있는지 유무 등을 조사대상으로 했을 때 목욕시설의 유형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사후분석의 결과 파악할 수 있다.

<표 3-29> 출입문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1500 | |
| 기타(수영장 등) | 28 | | .6071 |
| 사우나(찜질방) | 122 | | .5328 |
| 유의확률 | | 1.000 | .729 |

동일 집단군에 있는 집단에 대한 평균이 표시됩니다.

a. 조화평균 표본 크기 27.718을(를) 사용합니다.

b. 집단 크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집단 크기의 조화평균이 사용됩니다. I 유형 오차 수준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위의 <표 3-29>은 목욕탕시설보다는 사우나시설에서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목욕시설 중 목욕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규모가 작고 이용자도 상대적으로 적은 영세한 목욕시설일 경우가 많다고 보여 지며, 따라서 굳이 CCTV라는 고가의 장비를 설치하지 않고도 목욕시설운영에 크게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CTV의 설치가 적었다고 보여 진다.

다음으로 신발장에 CCTV를 설치한 경우를 조사한 결과도 위의 분산분석표나 아래의 <표 3-30>의 사후분석 결과에서 보듯이 목욕시설유형별로 신발장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차이를 보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목욕탕시설보다는 사우나나 수영장 시설을 포함한 대형목욕시설에서 신발장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표 3-30> 신발장의 사후분석

Scheffe[a,b]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 1 | 2 |
| 목욕탕 | 60 | .0667 | |
| 사우나 | 122 | .3361 | .3361 |
| 기타 | 27 | | .6667 |
| Sig. | | .175 | .073 |

또한 아래 <표 3-31>은 목욕탕시설보다는 사우나시설이나 수영장을 포함한 대형 시설에서 카운터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출입문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목욕탕시설보다는 사우나시설에서 많았던 것처럼, 같은 이유라고 보여 진다.

<표 3-31> 카운터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1 | 2 | 3 |
| 목욕탕 | 60 | .1833 | | |
| 사우나 | 122 | | .7787 | |
| 기타(수영장 등) | 28 | | | 1.3571 |
| 유의확률 | | 1.000 | 1.000 | 1.000 |

다음으로 화장실 및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목욕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목욕탕시설에서 설치한 경우보다는 기타(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화장실과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많았다.

<표 3-32> 화장실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0000 | |
| 사우나(찜질방) | 122 | .0328 | .0328 |
| 기타(수영장 등) | 28 | | .1071 |
| 유의확률 | | .725 | .193 |

아래 <표 3-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한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목욕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목욕탕시설에서 설치한 경우보다는 기타(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발한실내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많았다.

<표 3-33> 발한실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0000 | |
| 사우나(찜질방) | 122 | .1475 | .1475 |
| 기타(수영장 등) | 28 | | .5714 |
| 유의확률 | | .694 | .051 |

아래 <표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도 목욕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목욕탕시설에서 설치한 경우보다는 기타(수영장 등)의 시설에서 탈의실과 그 주변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도록 많았다.

<표 3-34> 탈의실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0500 | |
| 사우나 | 122 | .2213 | .2213 |
| 기타 | 28 | | .3214 |
| 유의확률 | | .084 | .426 |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화장실, 목욕실, 발한실, 수면실, 탈의실을 특히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큰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권침해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목욕시설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위의 분산분석표에 의하면,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를 알기 위하여

사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3-35>와 같이 기타시설, 사우나, 목욕탕 순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35> 인권침해장소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 1 | 2 | 3 |
| 목욕탕 | 60 | .0500 | | |
| 사우나 | 122 | | .3033 | |
| 기타(수영장 등) | 28 | | | .5357 |
| 유의확률 | | 1.000 | 1.000 | 1.000 |

아래 <표 3-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CCTV를 설치한 경우 이를 고지하는 경우도 목욕시설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즉 목욕탕시설에서 설치를 고지하는 경우보다는 사우나(찜질방)나 수영장 등 대형 목욕시설에서 CCTV를 설치를 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3-36> 고지유무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1167 | |
| 사우나(찜질방) | 121 | .2213 | .4628 |
| 기타(수영장 등) | 28 | | .5714 |
| 유의확률 | | 1.000 | .499 |

마지막으로 목욕시설 유형별로 CCTV의 설치유무가 차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위의 분산분석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그 구체적인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 3-37>과 같았다. 즉 목욕탕 시설에 설치한 경우보다는 사우나나 가타 즉 대형 목욕시설에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구체적인 비율을 보면 목욕탕 시설의 경우 40%의 시설에서 CCTV를 설치한 반면, 사우나시설의 경우는 79%, 기타 대형시설에서는 거의 전부인 96%시설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표 3-37> 설치유무의 사후분석

Scheffe[a,b]

| 유형 | N | 유의수준 = 0.05에 대한 부집단 | |
|---|---|---|---|
| | | 1 | 2 |
| 목욕탕 | 60 | .4000 | |
| 사우나(찜질방) | 122 | | .7951 |
| 기타(수영장 등) | 28 | | .9643 |
| 유의확률 | | 1.000 | .499 |

## 2) 지역별 차이분석

조사대상 지역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하고 CCTV설치장소의 유의미한 차이를 조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치장소 즉 조사장소는 목욕시설의 출입문, 신발장, 카운터, 탈의실, 락카주변, 화장실앞, 목욕탕내, 발한실, 수면실, 복도 등이었고, 전체적으로 CCTV설치유무와 고지유무, 인권침해장소에 설치유무 및 모니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내용들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탈의실, 화장실 및 인권침해장소CCTV설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참고, 지역별 CCTV설치실태와 관련된 T-검증 도표는 부록에 수록함).

즉 <표 3-38>의 표와 같이 조사대상 수도권의 목욕시설 총148개 시설 중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한 경우는 22곳으로 14.9%인데 반해, 지방의 경우는 총62개 시설 중 17곳으로 27.4%가 설치하고 있고, 이러한 차이는 카이제곱검정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지역구분과 탈의실의 교차분석

| | | | 탈의실 | | 전체 |
|---|---|---|---|---|---|
| | | | 없음 | 있음 | |
| 지역구분 | 수도권 | 빈도 | 126 | 22 | 148 |
| | | 지역구분 중 % | 85.1% | 14.9% | 100.0% |
| | 지방 | 빈도 | 45 | 17 | 62 |
| | | 지역구분 중 % | 72.6% | 27.4% | 100.0% |
| 전체 | | 빈도 | 171 | 39 | 210 |
| | | 지역구분 중 % | 81.4% | 18.6% | 100.0% |

<표 3-38-1> 지역구분과 탈의실의 카이제곱 검정

| | 값 | 자유도 |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 정확한 유의확률 (양측검정) | 정확한 유의확률 (단측검정) |
|---|---|---|---|---|---|
| Pearson 카이제곱 | 4.554[a] | 1 | .033 | | |
| 연속수정[b] | 3.762 | 1 | .052 | | |
| 우도비 | 4.317 | 1 | .038 | | |
| Fisher의 정확한 검정 | | | | .050 | .028 |
| 선형 대 선형결합 | 4.532 | 1 | .033 | | |
| 유효 케이스 수 | 210 | | | | |

a. 0 셀 (.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입니다. 최소 기대빈도는 11.43입니다.

b. 2x2 표에 대해서만 계산됨

지방의 목욕시설에서 탈의실에 CCTV설치를 많이 한 이유는 지방의 영세한 목욕시설에서는 관리인 1인이 전체목욕시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도난이나 분실 등에 대비하여 탈의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화장실의 경우도 탈의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상대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에 가까운 결과임을 아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3-39> 지역구분과 화장실의 교차분석

| 구분 | | | 화장실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46 | 2 | 148 |
| | | % within 지역 | 98.6% | 1.4% | 100.0% |
| | 지방 | Count | 58 | 4 | 62 |
| | | % within 지역 | 93.5% | 6.5% | 100.0% |
| Total | | Count | 204 | 6 | 210 |
| | | % within 지역 | 97.1% | 2.9% | 100.0% |

<표 3-39-1>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4.095(b) | 1 | .043 | | |
| Continuity Correction(a) | 2.464 | 1 | .116 | | |
| Likelihood Ratio | 3.639 | 1 | .056 | | |
| Fisher's Exact Test | | | | .064 | .064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4.076 | 1 | .044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화장실, 탈의실 등에 CCTV를 설치하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심각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은 이들 지역 중 한곳이라도 CCTV가 설치된 경우를 조사하였고, 특히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수도권의 경우 총 148곳 중 34곳(23.0%)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CCTV를 설치한 반면, 지방의 경우는 총62곳 중 21곳(33.9%)에서 설치되어 있었다. 즉 지방의 시설에서 인권침해적 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목욕시설의 경우 CCTV의 인권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의 둔감, 영세 목욕시설의 관리상의 편의 등 여러 원인에 의해 인권침해우려 장소에 CCTV를 설치하고 있어, 향후 목욕시설내의 CCTV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보여 진다.

<표 3-40>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교차분석

| 구분 | | | 인권침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14 | 34 | 148 |
| | | % within 지역 | 77.0% | 23.0% | 100.0% |
| | 지방 | Count | 41 | 21 | 62 |
| | | % within 지역 | 66.1% | 33.9% | 100.0% |
| Total | | Count | 155 | 55 | 210 |
| | | % within 지역 | 73.8% | 26.2% | 100.0% |

<표 3-40-1> 지역구분과 인권침해장소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2.685(b) | 1 | .101 | | |
| Continuity Correction(a) | 2.150 | 1 | .143 | | |
| Likelihood Ratio | 2.606 | 1 | .106 | | |
| Fisher's Exact Test | | | | .122 | .073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2.672 | 1 | .102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6.24.

그런데 조사내용 중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결과는 화장실, 탈의실 및 인권침해가능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에 국한되는 결과이고, 아래 <표 3-41>과 같이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목욕시설은 오히려 수도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으로 판단할 때, 지역별 CCTV설치상의 차이는 특징적인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표 3-41> 지역구분과 CCTV설치유무의 교차표

| | | | 설치유무 | | 전체 |
|---|---|---|---|---|---|
| | | | 없음 | 있음 | |
| 지역구분 | 수도권 | 빈도 | 42 | 106 | 148 |
| | | 지역구분 중 % | 28.4% | 71.6% | 100.0% |
| | 지방 | 빈도 | 20 | 42 | 60 |
| | | 지역구분 중 % | 32.3% | 67.7% | 100.0% |
| 전체 | | 빈도 | 62 | 148 | 210 |
| | | 지역구분 중 % | 29.5% | 70.5% | 100.0% |

<표 3-41-1> 지역구분과 CCTV설치유무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316(b) | 1 | .574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57 | 1 | .692 | | |
| Likelihood Ratio | .313 | 1 | .576 | | |
| Fisher's Exact Test | | | | .620 | .343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315 | 1 | .575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 3) 성별 차이분석

조사대상 목욕시설 중 남녀시설에서 CCTV의 설치운영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설치장소 즉 조사장소는 목욕시설의 출입문, 신발장, 카운터, 탈의실, 화장실주변, 목욕실, 발한실, 수면실, 찜질방 공용부분 등이었고, 전체적으로 CCTV설치유무와 고지유무, 인권침해장소에 설치유무 및 모니터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유무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내용들이 성별 즉 남녀목욕시설 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탈의실, 인권침해우려장소에의 설치, CCTV설치 고지유무 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42> 성별과 탈의실의 교차표

| 구분 | | | 탈의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77 | 31 | 108 |
| | | % within 성별 | 71.3% | 28.7% | 100.0% |
| | | % within 탈의여부 | 45.0% | 79.5% | 51.4% |
| | | % of Total | 36.7% | 14.8% | 51.4% |
| | 여탕 | Count | 94 | 8 | 102 |
| | | % within 성별 | 92.2% | 7.8% | 100.0% |
| | | % within 탈의여부 | 55.0% | 20.5% | 48.6% |
| | | % of Total | 44.8% | 3.8% | 48.6% |
| Total | | Count | 171 | 39 | 210 |
| | | % within 성별 | 81.4% | 18.6% | 100.0% |
| | | % within 탈의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81.4% | 18.6% | 100.0% |

<표 3-42-1> 성별과 카운터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15.095(b) | 1 | .000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3.747 | 1 | .000 | | |
| Likelihood Ratio | 16.007 | 1 | .000 | | |
| Fisher's Exact Test | | | | .000 | .000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15.023 | 1 | .000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8.94.

위의 표에서와 같이 조사대상 목욕시설 전체의 CCTV설치여부를 남녀목욕시설별로 차이점을 조사한 결과, 남성목욕시설의 경우는 조사대상의 28.7%(108개시설중 31곳)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반면 여성목욕시설의 경우는 조사대상의 7.8%(102개 시설중 8곳)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이러한 남녀시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다음으로 위에서 분류한 인권침해우려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가 남녀목욕시설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목욕시설의 경우 15.7%에서 CCTV가 발견된 반면, 남성목욕시설의 경우는 36.1%에서 발견되어 큰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표 3-43> 성별과 인권침해장소유무와의 교차표

| 구분 | | | 인권침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69 | 39 | 108 |
| | | % within 성별 | 63.9% | 36.1% | 100.0% |
| | | % within 인권침해 | 44.5% | 70.9% | 51.4% |
| | | % of Total | 32.9% | 18.6% | 51.4% |
| | 여탕 | Count | 86 | 16 | 102 |
| | | % within 성별 | 84.3% | 15.7% | 100.0% |
| | | % within 인권침해 | 55.5% | 29.1% | 48.6% |
| | | % of Total | 41.0% | 7.6% | 48.6% |
| Total | | Count | 155 | 55 | 210 |
| | | % within 성별 | 73.8% | 26.2% | 100.0% |
| | | % within 인권침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73.8% | 26.2% | 100.0% |

<표 3-43-1> 성별과 인권침해장소유무와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11.321(b) | 1 | .001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0.289 | 1 | .001 | | |
| Likelihood Ratio | 11.617 | 1 | .001 | | |
| Fisher's Exact Test | | | | .001 | .001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11.267 | 1 | .001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6.71.

이러한 결과는 위의 탈의실이나 목욕시설 전체에서 CCTV가 발견된 통계의 결과 분석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CCTV설치에 대한 고지유무가 남녀목욕시설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성목욕시설에서 CCTV설치를 고지한 경우는 30.4%에 불과하지만 남성목욕시설의 경우는 44.9%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시설에 CCTV설치를 고지하면 이용여성들이 CCTV의 설치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을 예상하여 목욕 업주들이 설치고지를 고의로 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

시설에 CCTV의 설치가 적기 때문에 설치 고지된 경우도 적은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표 3-44> 성별과 고지유무와의 교차표

| 구분 | | | 고지유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59 | 48 | 107 |
| | | % within 성별 | 55.1% | 44.9% | 100.0% |
| | | % within 고지유무 | 45.4% | 60.8% | 51.2% |
| | | % of Total | 28.2% | 23.0% | 51.2% |
| | 여탕 | Count | 71 | 31 | 102 |
| | | % within 성별 | 69.6% | 30.4% | 100.0% |
| | | % within 고지유무 | 54.6% | 39.2% | 48.8% |
| | | % of Total | 34.0% | 14.8% | 48.8% |
| Total | | Count | 130 | 79 | 209 |
| | | % within 성별 | 62.2% | 37.8% | 100.0% |
| | | % within 고지유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62.2% | 37.8% | 100.0% |

<표 3-44-1> 성별과 고지유무와의 카이제곱 검정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4.649(b) | 1 | .031 | | |
| Continuity Correction(a) | 4.054 | 1 | .044 | | |
| Likelihood Ratio | 4.677 | 1 | .031 | | |
| Fisher's Exact Test | | | | .033 | .022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4.627 | 1 | .031 | | |
| N of Valid Cases | 209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38.56.

어떠한 경우이든지 목욕시설의 이용자들이 인권보호에 철저하기 이해서는 CCTV를 설치하여 이용자를 감시하고 있음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용자들에게 잘 보이는 장소에 CCTV의 설치를 명확히 고지하여야 할 것이다.

## 제2절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조사

### 1. 조사설계

본 연구는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를 조사하는데 있다. 이에 2010년 6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15일간 서울, 경기지역 등 수도권 지역과 충남 천안지역을 중심으로 하루 일과 중 CCTV에 노출되는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 집단과 일반인 집단을 구분하고, 조사원을 선발하여 관련교육을 시행하였으며, 사례를 중심으로 개인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CCTV 노출실태를 분석하였다.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의 경우 민간부문 CCTV가 아니라 공공부문 CCTV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 관리하의 공공부문 CCTV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민간부문 CCTV로 분류하였다. 또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보호와 관련하여 법률적 권한이 없는 지하철공사 등에서 CCTV 촬영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시설의 CCTV를 공공부문 CCTV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교통시설을 민간부문 CCTV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 2. 조사결과

#### 1) 대학생 사례연구

(1) A 남학생, 방학중 실습장소 중심

A 남학생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주로 방학중 실습장소 출퇴근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CCTV에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지하철 1호선, 5호선 등을 환승하면서 계단, 매표소, 환승구 등 약 50여곳의 CCTV에 노출되었으며, 1개 역사를 기준으로 약 5회~ 10회정도 노출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5> A 남학생, 방학중 실습장소 중심 CCTV 노출실태

2010. 6. 19 (토)

| 시간 | 위치 | 내용 |
|---|---|---|
| 6:30 | 가산역 | 계단 |
| 6:31 | 가산역 | 표파는 곳 |
| 6:31 | 가산역 | 계단 |
| 6:32 | 가산역 | 탑승 |
| 6:42 | 신도림역 | 하차 |
| 6:43 | 신도림역 | 계단 |
| 6:43 | 신도림역 | 환승하는 곳 |
| 6:43 | 신도림역 | 계단 |
| 6:46 | 신도림역 | 탑승 |
| 6:59 | 까치산역 | 하차 |
| 6:59 | 까치산역 | 환승하는 곳 계단 |
| 7:03 | 까치산역 | 탑승 |
| 7:14 | 송정역 | 하차 |
| 7:14 | 송정역 | 개찰구쪽 계단 |
| 7:15 | 송정역 | 개찰구 |
| 7:15 | 송정역 | 에스컬레이터 상황감시 |
| 7:16 | 송정역 | 계단 |
| 7:20 | 국민은행 | ATM기기 |
| 7:26 | 용환건물입구 | 엘리베이터 앞 |
| 7:26 | 용환건물 | 엘리베이터 안 |
| 12:50 | 용환건물입구 | 엘리베이터 앞 |
| 13:06 | 송정역 | 출구 계단 |
| 13:06 | 송정역 | 에스컬레이터 상황감시 |
| 13:07 | 송정역 | 개찰구 |
| 13:08 | 송정역 | 타는곳 계단 |
| 13:10 | 송정역 | 탑승 |
| 13:21 | 까치산역 | 하차 |
| 13:22 | 까치산역 | 환승하는 곳 계단 |
| 13:27 | 까치산역 | 탑승 |
| 13:42 | 신도림역 | 하차 |
| 13:42 | 신도림역 | 환승하는 곳 |
| 13:44 | 신도림역 | 계단 |
| 13:46 | 신도림역 | 탑승 |
| 13:52 | 가산역 | 하차 |
| 13:52 | 가산역 | 계단 |

| | | |
|---|---|---|
| 13:52 | 가산역 | 표파는 곳 |
| 13:53 | 가산역 | 계단 |
| 14:43 | 가산역 | 계단 |
| 14:43 | 가산역 | 표파는 곳 |
| 14:44 | 가산역 | 계단 |
| 14:49 | 가산역 | 승차 |
| 15:04 | 대방역 | 하차 |
| 15:04 | 대방역 | 계단 |
| 15:04 | 대방역 | 표파는 곳 |
| 15:05 | 대방역 | 계단 |
| 15:05 | 대방역 | 출구쪽 계단 |
| 15:14 | 성애병원사거리 | 방범cctv |
| 15:12 | 성애병원사거리 | 방범cctv |
| 19:20 | 성애병원사거리 | 방범cctv |
| 19:21 | 성애병원사거리 | 방범cctv |
| 19:30 | 대방역 | 출구쪽 계단 |
| 19:31 | 대방역 | 계단 |
| 19:31 | 대방역 | 표파는 곳 |
| 19:32 | 대방역 | 계단 |
| 19:35 | 대방역 | 승차 |
| 19:48 | 가산역 | 하차 |
| 19:48 | 가산역 | 계단 |
| 19:49 | 가산역 | 표파는 곳 |
| 19:49 | 가산역 | 계단 |
| 계 | | 59개 |

2) B 여학생, 강남구 쇼핑몰 중심

B 여학생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주로 강남지역의 쇼핑몰과 대중교통시설을 중심으로 CCTV에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강남구 쇼핑몰의 경우 1시간의 체류시간동안 민간에서 관리하는 35개의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6> B 여학생, 강남구 쇼핑몰 중심 CCTV 노출실태

2010. 6. 17(목)

| 장소 | | 시간 | 갯수 | 횟수 | 계 |
|---|---|---|---|---|---|
| 남현동 | 사거리 주.정차 단속 | am. 10 : 43 | 2 | 1 | 2 |
| 사당역 | 사당역 내 | am. 10 : 50 | 1 | 1 | 1 |
| | | am. 10 : 56 | 1 | 1 | 1 |
| | 사당역 개찰구 내 | am. 11 : 00 | 1 | 1 | 1 |
| 삼성역 | 삼성역 개찰구 내 | am. 11 : 17 | 4 | 1 | 4 |
| | 삼성역 내 | am. 11 : 19 | 2 | 1 | 2 |
| 코엑스 | 코엑스 지하 통로 | am. 11 : 22 ~ 11 : 25 | 10 | 2 | 20 |
| | 코엑스 지상 세미나 홀 | am. 11 : 27 ~ 11 : 29 | 2 | 2 | 4 |
| | 코엑스 지하 통로 | am. 11 : 28 ~ 12 : 01 | 4 | 1 | 4 |
| | 코엑스 유니클로 매장 | pm. 12 : 02 ~ 12 : 04 | 5 | 1 | 5 |
| | 코엑스 지하 통로 | pm. 12 : 05 | 1 | 1 | 1 |
| | 코엑스 옷가게 매장 | pm. 12 : 09 ~ 12 : 16 | 6 | 1 | 6 |
| | 코엑스 지하 통로 | pm. 12 : 17 ~ 12 : 21 | 7 | 1 | 7 |
| 삼성역 | 삼성역 내 | pm. 12 : 25 | 2 | 1 | 2 |
| | 삼성역 개찰구 내 | pm. 12 : 27 | 2 | 1 | 2 |
| 역삼역 | 역삼역 개찰구 내 | pm. 12 : 32 ~ 12 : 33 | 5 | 1 | 5 |
| | 역삼역 내 | pm. 12 : 33 ~ 12 : 36 | 10 | 1 | 10 |
| 역삼동 | 원할매 보쌈 내 | pm. 01 : 15 | 1 | 1 | 1 |
| 역삼역 | 역삼역 내 | pm. 01 : 30 ~ 01 : 33 | 8 | 1 | 8 |
| | 역삼역 개찰구 내 | pm. 01 : 34 | 4 | 1 | 4 |
| 사당역 | 사당역 개찰구 내 | pm. 01 : 54 ~ 01 : 55 | 4 | 1 | 4 |
| | 사당역 내 | pm. 01 : 55 ~ 02 : 01 | 11 | 1 | 11 |
| | 사당사거리 주정차 단속 | pm. 02 : 02 | 3 | 1 | 3 |
| 남현동 | 사거리 주.정차 단속 | pm. 02 : 12 | 2 | 1 | 2 |
| 총 계수 | | | | | 110 |

3)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3일간)

C 여학생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3일간 조사한 결과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을 중심으로 1일 최소 62회에서 최대 112회로 1일 평균 83.4회 CCTV에 노출되고 있었다.

<표 3-46-1>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1)

2010. 6. 16(수)

| 시간 | 위치 | 내용 |
|---|---|---|
| 6:20 | 경기 구리시 교문동 한성아파트 입구 | 동마다 입구에 1대씩 |
| 6:30 | 한성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95번 버스 | 운전석 위쪽 1대 |
| 6:40 | 구리 롯데 백화점 버스정류장 | 버스정류소에 각 1대, 총3대 |
| 8:30 | 백석대학교 지하2층 | 엘리베이터 옆 계단 1대, 매점안 1대 |
| 8:40 | 백석대학교 4층 법정헌 | 법정헌 내 1대 |
| 12:00 | 백석대 7층 계단 | 1대 |
| 13:20 | 백석대 3층 중앙 화장실 | 화장실 앞 1대 |
| 13:30 | 백석대 버스 정류장 | 14번 버스안 운전석 위 |
| 14:00 | 천안 야우리 미스터피자 | 매장내 3대 |
| 15:20 | 천안시내 스티커사진집 쁘디오디션 | 매장내1대 |
| 15:40 | 야우리 버스종류장 | 14번 버스안 운전석 위 |
| 17:00 | 복지동2층 | 복도중앙1대, 왼쪽 끝1대, 총2대 |
| 17:02 | 복지동1층 | 중앙 계단 옆4대 |
| 17:05 | 복지동 1층 제일은행 인출기 | 인출기 중앙 1대 |
| 17:44 | 백석대 정문 수위실 앞 | 양쪽 2대 |
| 17:50 | 학교앞 편의점 GS25 | 매장내 3대 |
| 18:20 | 학교앞 놀자호프 | 매장내 4대 |
| 19:00 | 학교앞 편의점 바이더웨이 | 매장내 3대 |
| 20:40 | 학교앞 버스정류장 | 14번 버스안 운전석 위 |
| 21:00 | 천안 야우리 크리스피도넛 | 계산대 앞1대, 주방1대 |
| 21:20 | 야우리 1층 시외버스터미널 | 매표소앞 1대 |
| 21:25 | 야우리 1층 화장실 | 화장실앞1대 |
| 21:35 | 야우리1층 시외버스터미널 | 버스정류소 4대 |
| 21:40 | 동서울 시외버스 | 버스 운전석위 1대 |
| 23:00 | 잠실역 | 잠실역 1층 매표소 2대 |
| 23:12 | 잠실역 지하철 계단 | 양쪽 1대씩, 화장실 앞 1대, 총 3대 |
| 23:13 | 잠실역 지하철 타는곳 | 5-2칸 앞 1대 |
| 23:20 | 강변역 지하철 내리는곳 | 2대 |
| 23:21 | 강변역 계단 | 양쪽 1대씩, 총2대 |
| 23:21 | 강변역 입구 매표소 | 4번 출구쪽 3대 |
| 23:22 | 강변역과 버스정류장 사이 신호등 | 도로교통관리신호등1대 |
| 23:24 | 강변역 버스정류장92번 버스 | 운전석 위쪽 1대 |
| 23:49 | 교문동 한성아파트앞 4거리 신호등 | 불법주차단속 1대 |
| 23:50 | 경기 구리시 교문동 한성아파트 입구 | 수위실 앞 1대 |
| | | 총 : 62대 |

<표 3-46-2>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2)

2010. 6. 18(금)

| 시간 | 위치 | 내용 |
|---|---|---|
| 9:45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성 아파트 앞 | 아파트 앞 1대씩, 총 3대 |
| 9:46 | 한성 아파트 수위실 앞 | 1대 |
| 9:52 | 한성 아파트 버스정류장 95번 버스 | 운전석 위 1대 |
| 10:11 | 강변역 4번 출구 앞 | 1대 |
| 10:11 | 강변역 안 | 3대 |
| 10:15 | 강변역 테크노마트 입구 | 2대 |
| 10:16 | 테크노 마트 지하1층 입구앞 | 1대 |
| 10:17 | 강변역 커피전문점 파스쿠찌 | 계산대 1대 |
| 10:20 | 강변역 양계단 | 중앙 1대, 양쪽 1대씩 총3대 |
| 10:21 | 강변역안 | 엘레베이터앞 1대, 2대 총 3대 |
| 10:44 | 을지로 입구역 계단 | 양 1대씩, 중앙1대 총3대 |
| 10:45 | 을지로 입구부터 롯데백화점 가는길 | 3대 |
| 10:46 | 롯데백화점 입구 | 1대 |
| 10:47 | 롯데 백화점 지하1층 식품관 | 13대 |
| 10:50 | 롯데 백화점 내 참스틱 가든 | 7대 |
| 12:30 | 시청역 소공동 지하상가 | 5대 |
| 12:32 | 시청역 카드기 입구 | 3대 |
| 12:58 | 사당역 내리는 곳 | 4대 |
| 13:00 | 사당역14번 출구 | 엘레베이터앞1대, 게단앞1대 총2대 |
| 13:10 | 대항병원 1층 | 입구1대, 안에 2대 총 3대 |
| 13:12 | 대항병원 4층 | 접수대 1대 |
| 16:50 | 잠실역 계단 | 양1대씩, 가운데 1대, 총 3대 |
| 16:50 | 잠실역 교통카드 충전소 | 3대 |
| 16:52 | 잠실역에서 롯데 백화점 가는길 | 4대 |
| 16:55 | 롯데 잠실점 편의점 세븐 일레븐 | 계산대위 2대, 냉장고앞 1대 총3대 |
| 17:20 | 롯데 백화점 지하1층 푸트 코트 | 4대 |
| 17:55 | 잠실 아이스링크장 가는길 | 9대 |
| 18:00 | 롯데 잠실점 스무디킹 | 2대 |
| 19:10 | 롯데 잠실점 신한은행 | 2대 |
| 19:12 | 신발가게 Lesmore앞 | 1대 |
| 19:15 | 에뛰드 하우스 | 5대 |
| 19;16 | 롯데백화점 앞 | 1대 |
| 19:50 | 샤롯데 씨어터 | 입구1대, 층마다 1대 , 총3대 |
| 22:40 | 잠실역 3번출구 | 1대 |
| 22;45 | 잠실역 교통카드 충전소 | 3대 |
| 23:10 | 잠실역 계단 | 양 1대씩, 총2대 |
| 23:12 | 강변역 양 계단 | 1대씩,총 2대 |
| 23:20 | 강변역 사거리 | 불법주차 단속 1대 |
|  | 강변역 버스정류장 91번 버스 | 운전석 위1대 |
|  |  | 총 : 112대 |

<표 3-46-3> C 여학생, 천안지역 및 학원통학 중심 CCTV 노출실태(3)

2010. 6. 25(금)

| 시간 | 위치 | 내용 |
|---|---|---|
| 11:10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한성아파트 | 수위실 위1, 동마다 1대씩, 총4대 |
| 11:20 | 교문동 교문서적 | 카운터 1대, 각2대, 총 3대 |
| 11:35 | 커피전문점 커피마마 | 2대 |
| 12:10 | 2번 마을버스 | 운전석 위 1대 |
| 12:35 | 구리 미스터 피자 | 2대 |
| 2:45 | 구리신한은행 | ATM위 1대, 위에2대, 총3대 |
| 2:55 | 구리 돌다리 '즐' 노래방 | 2대 |
| 4:43 | 카페 티아모 | 3대 |
| 5:32 | 구리역 | 역앞 1대 |
| 5:33 | 구리역안 계단 | 2대 |
| 5:50 | 97버스 | 운전석 위1대 |
| 6:16 | 강변역 사거리 | 강변역 사거리 불법단속 1대 |
| 6:19 | 강변역4번출구 입구 | 1대 |
| 6:20 | 강변역 안 | 4대 |
| 6:21 | 강변역 안 | 양계단 1대씩, 중간1대, 총3대 |
| 6:26 | 군자역 | 엘리베이터 앞1대, 중간2대, 총3대 |
| 6:40 | 뚝섬유원지역 | 엘레베이터앞1대, 계단2대, 총3대 |
| 6:44 | 뚝섬 전망 문화 콤플렉스 | 6대 |
| 7:12 | 뚝섬역 아래 | 2대 |
| 7:44 | 뚝섬역 편의점 내 | 계산대1대, 냉장고 앞1대, 총2대 |
| 8:50 | 뚝섬역 2번 출구 계단위 | 1대 |
| 8:52 | 뚝섬역 안 | 4대 |
| 9:00 | 건대입구 | 건대입구 안2대 |
| 9:02 | 건대입구 갈아타는 에스컬레이터 | 3대 |
| 9:06 | 2호선 건대입구역 | 역내 2대 |
| 9:09 | 강변역 내 | 3대 |
| 9:10 | 강변역 계단 | 양쪽1대씩, 중앙1대, 총3대 |
| 9:11 | 강변역 입구 | 4내 |
| 9:11 | 강변역 4번 출구 | 1대 |
| 9:13 | 강변역 사거리 | 불법주차 단속 |
| 9:20 | 91번 버스 | 운전석위 1대 |
| 9:44 | 한성아파트 앞 | 수위실 위1, 동마다 1대씩, 총4대 |
| | | 합계 : 76대 |

<그림 3-1> 대학생 사례연구 CCTV 주요사진

정리하면,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실태는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시설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에 집중적으로 노출되고 있었으며,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의 상업시설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2) 일반인 사례연구

(1) D 직장인, 출퇴근 장소 중심

D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주로 출퇴근길에 노출되는 상점들의 CCTV와 대중교통시설 CCTV에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직장인의 근무지를 포함하여 직장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철역사, 지하상가, 식당, 도로변의 상점 등에서 1일 약 70건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7> D 직장인, 출퇴근장소 중심 CCTV 노출실태

2010. 6. 22(화)

| 시간 | 위치 | 내용 |
|---|---|---|
| 7:20 | 사당동 빌라 앞 수퍼 | 카운터에 1대 |
| 7:22 | 출근길 편의점 | 출입문 방향 1대 |
| 7:25 | 버스정류장 부근 커피전문점 | 출입문 방향 1대 |
| 7:25 | 버스정류장 부근 전자제품점 | 주차장 1대 , 쓰레기투기방지 1대 |
| 7:27 | 사당역 | 에스컬레이터 2대 |
| 7:30 | 사당역 개찰구, 화장실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5대 |
| 7:45 | 강남역 개찰구, 엘리베이터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7대 |
| 7:50 | 강남역 지하상가(도너츠전문점 등) | 3대 |
| 7:52 | 강남역 지하상가(출입구, 계단) | 1대 |
| 7:55 | 버스정류장(커피전문점 등) | 1대 |
| 8:05 | 회사 입구(로비, 출입구, 출근기록기 등) | 총 6대 |
| 8:06 | 회사 엘리베이터 | 2대 (실내, 내리는 곳 포함) |
| 10:05 | 회사 내 복도 | 1대 |
| 11:50 | 회사 내 복도 | 1대 |
| 11:52 | 회사 엘리베이터 | 2대 (실내, 내리는 곳 포함) |
| 11:53 | 회사 입구(로비, 출입구, 출근기록기 등) | 총 6대 |
| 11:54 | 버스정류장(커피전문점 등) | 1대 |
| 11:57 | 인근지역 보험회사건문 | 3대(출입구, 주차장 등) |
| 12:01 | 부대찌개전문점 | 카운터(출입구 포함) 1대 |

| | | |
|---|---|---|
| 12:47 | 커피전문점 | 계산대 앞1대, 출입구 1대 |
| 12:55 | 회사 입구(로비, 출입구, 출근기록기 등) | 총 6대 |
| 12:56 | 회사 엘리베이터 | 2대 (실내, 내리는 곳 포함) |
| 12:57 | 회사 내 복도 | 1대 |
| 15:40 | 회사 내 복도(3층 총리팀) | 2대 |
| 15:55 | 회사 엘리베이터 | 2대 (실내, 내리는 곳 포함) |
| 19:10 | 회사 내 복도 | 1대 |
| 19:12 | 회사 엘리베이터 | 2대 (실내, 내리는 곳 포함) |
| 19:13 | 회사 입구(로비, 출입구, 출근기록기 등) | 총 6대 |
| 19:15 | 버스정류장(커피전문점 등) | 1대 |
| 19:20 | 강남역 지하상가(출입구, 계단) | 1대 |
| 19:21 | 강남역 지하상가(도너츠전문점 등) | 3대 |
| 19:23 | 강남역 개찰구, 엘리베이터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7대 |
| 19:40 | 사당역 개찰구, 화장실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5대 |
| 19:42 | 사당역 | 에스컬레이터 2대 |
| 19:47 | 버스정류장 부근 전자제품점 | 주차장 1대 , 쓰레기투기방지 1대 |
| 19:49 | 버스정류장 부근 커피전문점 | 출입문 방향 1대 |
| 19:51 | 출근길 편의점 | 출입문 방향 1대 |
| | | 총 : 93대 |

(2) E 직장인, 직장 및 주거지역 중심

여성인 E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주로 출퇴근에 따른 대중교통시설의 CCTV 외에도 시장, 스포츠센터 등 주거지역에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퇴근이후 주거지역에서 방문하게 된 시장, 스포츠센터 등의 장소에서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1시간동안 20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8> E 직장인, 직장 및 주거지역 중심 CCTV 노출실태

2010. 6. 25(금)

| 시간 | 위치 | 내용 |
|---|---|---|
| 8:05 | 출근길 바이더웨이 편의점 | 출입문 방향 1대 |
| 8:07 | 남사초등학교 범죄예방용 | 2대 |
| 8:10 | 버스정류장 부근 베이커리 | 출입문 방향 1대 |

| | | |
|---|---|---|
| 8:12 | 이수역 | 에스컬레이터 2대 |
| 8:13 | 이수역(개찰구, 화장실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5대 |
| 8:22 | 고속터미널역(플렛홈, 개찰구) | 각 1~2대, 총 5대 |
| 8:25 | 고속터미널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 총 7대 |
| 8:35 | 사무실 건물(입구, 엘리베이터) | 각 1대, 총 2대 |
| 18:10 | 사무실 건물(입구, 엘리베이터) | 각 1대, 총 2대 |
| 18:20 | 고속터미널역(지하상가, 에스컬레이터) | 총 7대 |
| 18:22 | 고속터미널역(플렛홈, 개찰구) | 각 1~2대, 총 5대 |
| 18:30 | 이수역(개찰구, 화장실 입구, 플렛홈) | 각 1~2대, 총 5대 |
| 18:32 | 이수역 | 에스컬레이터 2대 |
| 18:35 | 남사시장(금은방 입구, 노래방 입구 등) | 2대 |
| 18:50 | 남사시장(편의점, 대형슈퍼 등) | 총 3대 |
| 18:55 | 남사시장(보습학원 입구 등) | 2대 |
| 18:57 | 태평스포츠센터 입구 | 2대 |
| 18:58 | 태평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등록처 등 | 2대 |
| 19:00 | 태평스포츠센터 휴게실, 자판기 앞 | 1대 |
| 19:15 | 태평스포츠센터 엘리베이터, 등록처 등 | 2대 |
| 19:17 | 태평스포츠센터 후문(주차장) | 3대 |
| 19:21 | 버스정류장 부근 베이커리 | 출입문 방향 1대 |
| 19:27 | 남사초등학교 범죄예방용 | 2대 |
| 19:30 | 출근길 바이더웨이 편의점 | 출입문 방향 1대 |
| | | 총 : 67대 |

(3) F 주부,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중심

F 주부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주로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에서 중점적으로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백화점에서는 체류하는 약 3시간동안 총 45회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49> F 주부, 아파트단지 및 백화점 중심 CCTV 노출실태

2010. 6. 30(수)

| 시간 | 위치 | 내용 |
|---|---|---|
| 09:30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09:32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09:35 | 참사랑어린이집 | 출입문 1대 |
| 09:40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 | |
|---|---|---|
| 09:43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11:05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11:07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11:30 | 범죄예방용, 교통정보용, 신호단속용 CCTV | 각 1대, 총 3대 |
| 11:45 | 롯데백화점 주차장(입구, 차단기, 각 지하층) | 각 1~2대, 총 5대 |
| 11:55 |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각 지상층) | 각 1~2대, 총 7대 |
| 12:01 | 롯데백화점 식당가(카운터 등) | 2대 |
| 12:55 | 롯데백화점 식당가(카운터 등) | 2대 |
| 12:59 |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각 지상층) | 각 1~2대, 총 7대 |
| 13:30 | 롯데백화점 여성의류, 잡화, 식품코너 등 | 매장, 복도, 계단 등 총 8대 |
| 14:40 | 롯데백화점 에스컬레이터(각 지상층) | 각 1~2대, 총 7대 |
| 14:47 | 롯데백화점 주차장(입구, 차단기, 각 지하층) | 각 1~2대, 총 5대 |
| 15:10 | 교통정보용, 신호단속용 CCTV | 각 1대, 총 2대 |
| 15:42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15:45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16:25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16:27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16:30 | 참사랑어린이집 | 출입문 1대 |
| 16:34 | 아파트 단지내(주차장, 계단, 단지앞 등) | 4대 |
| 16:37 | 아파트 출입구(엘리베이터 포함) | 2대 |
| | | 총 : 86대 |

<그림 3-2> 일반인 사례연구 CCTV 주요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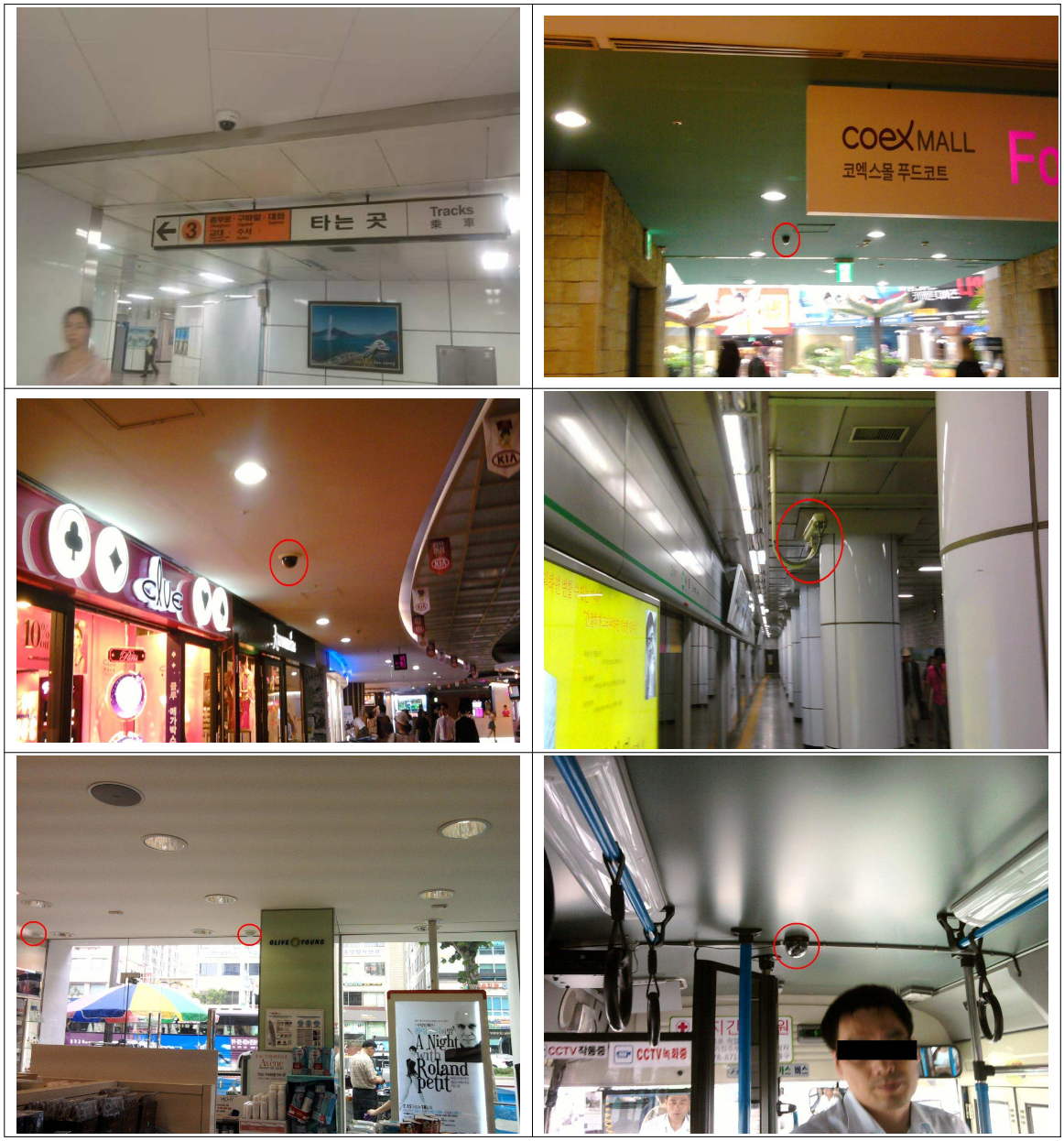


(4) H 직장인, 출퇴근길 동선중심

H 직장인의 하루 일과에 따른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 실태는 지하철역에서 귀가하기 전까지 총거리 511M(소요시간 3분) 주택단지 내에서 상가 및 주택 등에서 총 20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산하면 9초에 한번씩 CCTV에 노출되는 것에 해당하며, 25M에 한개 꼴로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해당한다. 특히 주택가에 위치한 CCTV의 경우 주택과 주택 사이 벽에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으며, CCTV 설치 고지도 되어 있지 않

아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었다.

<그림 3-3> 일반인 동선중심 CCTV 주요사진

**낙성대 주변 조사 지역 주변 지도(조사거리: 511M, 소요시간: 도보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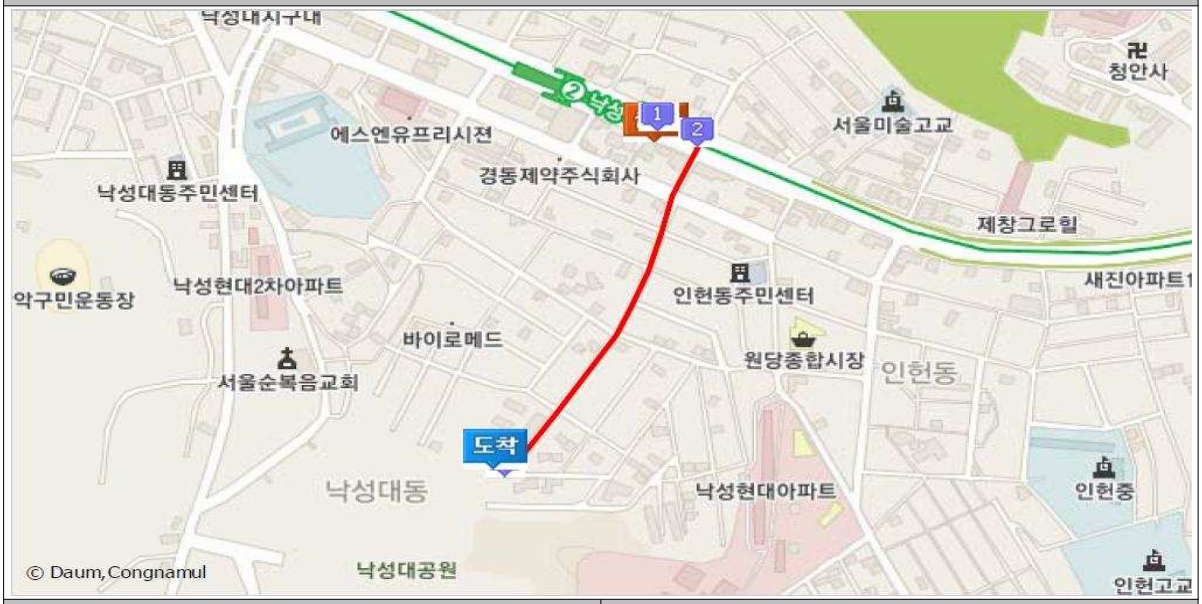


| CCTV 설치 및 각도 | 투영 영역 |
|---|---|
| | |
| | |

영어회화교실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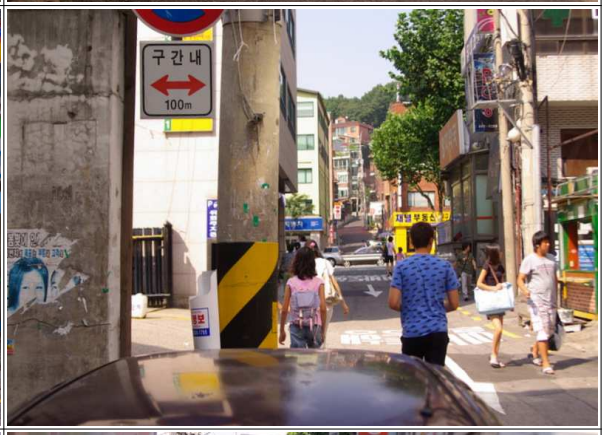
구간내
10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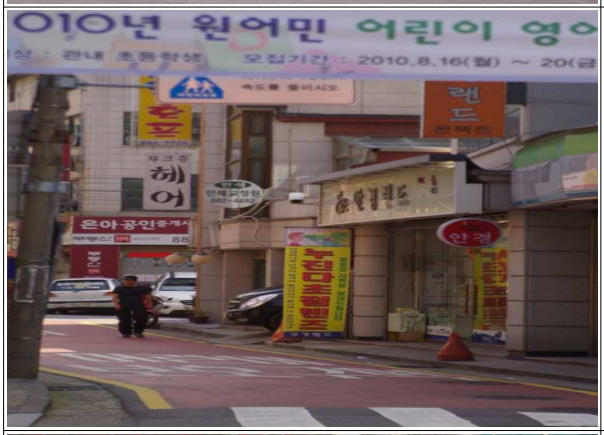
헤어
은아공인중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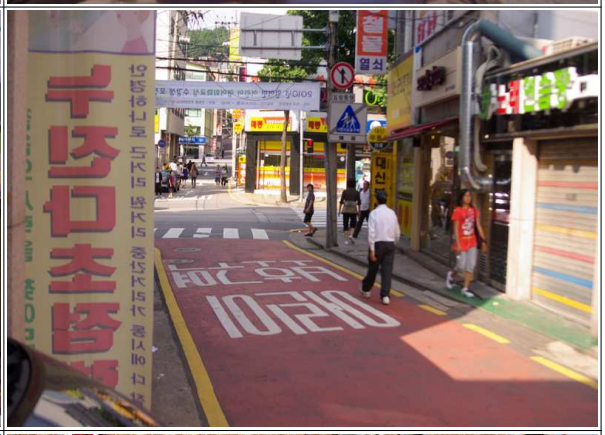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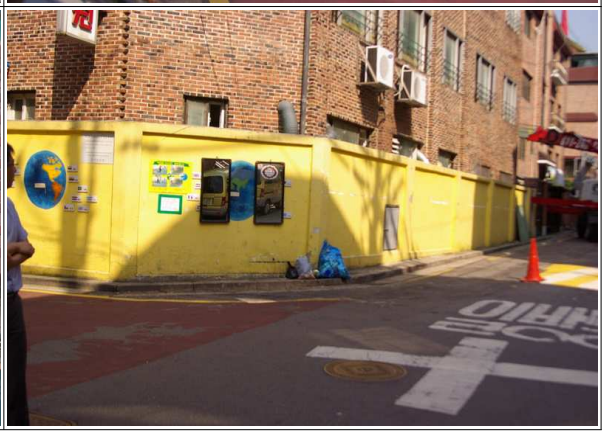

일방통행

정리하면, 일반인의 경우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 대부분의 시설에서 CCTV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밖에 역세권, 백화점, 스포츠센터 등 일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도 CCTV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일반인이 많이 이용하는 역세권과 백화점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고 상거래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CCTV가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 3)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의 문제점

(1) CCTV 촬영거리와 각도

일반상점을 포함하여 민간부문 CCTV의 성능과 기술의 고도화는 CCTV 촬영거리를 증가시켜 원거리촬영이 가능해졌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채널 분할 모니터화면에서 관리하고 CCTV 촬영거리 중 하단 오른쪽 화면(CAM4)은 주차장 외곽 일반도로의 횡단보도와 인도까지 촬영범위에 포함되고 있다.

<그림 3-4> CCTV 촬영거리 사례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물 출입자를 확인하기 위한 방범용 CCTV로 설치되었으나, 촬영각도에 따라 공적영역인 일반도로를 근접한 촬영범위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5> CCTV 촬영각도 사례

따라서, 민간부문 CCTV 설치에 관한 법규가 명확히 CCTV 촬영거리 및 촬영각도를 규정하지 않을 경우, 민간부문 CCTV의 공적영역 투영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CCTV 성능과 기술이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고도의 해상도를 활용한 불법 목적의 민간부문 CCTV 설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2) CCTV 관리주체의 문제

민간부문 CCTV의 설치 목적이 대부분 범죄예방용이라고 가정할 때, CCTV 관리주체의 문제는 최종적으로 민간부문 영역으로만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한 기준 마련도 중요하지만, 사후 범죄발생시 민간부문 CCTV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다면 현재 민간부문 CCTV에서 촬영되고 있는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규제와 데이터관리가 불가능할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의점 등 일반 상점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정보는 업주 및 관계자만 이용하는 사무실 또는 창고 등에 방치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의 기록보존 또한 민간부문에서 관리하게 되는 상황이다.

<그림 3-6> CCTV 촬영주체 사례

따라서, 민간부문 CCTV 촬영데이터 관리에 있어서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만약에 민간부문 CCTV가 설치된 지역에서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법절차를 거쳐 촬영된 CCTV 데이터를 경찰을 포함한 공공부문에서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 3. 결과분석 및 시사점

### 1) 조사결과 분석

민간부분 CCTV의 공적투영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민간부분의 CCTV는 크게 상점 및 쇼핑센터 등의 상업지역과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 주거지역, 그리고 지하철 및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학교, 은행 등의 시설도 민간부분에서 설치 및 관리하고 있는 대표적인 CCTV인 바, 이러한 CCTV의 공적투영 문제는 사생활 침해에 심각한 사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 (1) 상점 및 쇼핑센터

상점 및 쇼핑센터의 경우 도난방지 및 사고발생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편의점이나 문구점과 같이 부피가 작은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백화점 또는 전자상가와 같이 고가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을 경우 CCTV 설치를 통하여 사안에 대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점 및 쇼핑센터의 CCTV 는 설치방향이 계산대 또는 진열대에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통행이 잦은 도로나 출입구를 향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공적 투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7> 상업지역의 CCTV 설치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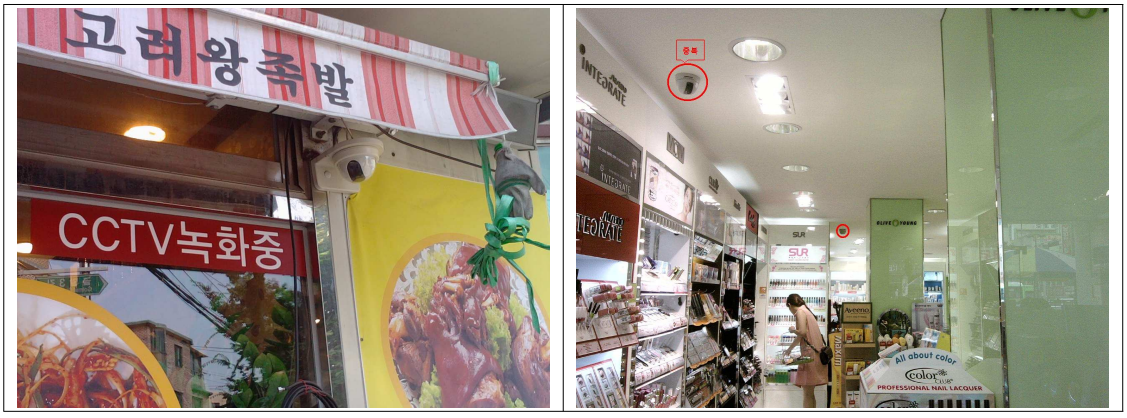

### (2)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도시지역의 경우 대부분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를 중심으로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고 시민들은 출퇴근 및 일상생활활동이 대부분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에 민간부분 CCTV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 개인의 노출빈도는 그만큼 많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에서 방범효과 및 사고발생시 증거확보를 위하여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경비원의 대체하는 방범설비로 CCTV 설치를 입주민들이 더욱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하주차장 또는 비상계단 등 범죄에 취약한 장소의 경우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방향별 또는 각층별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CCTV 설치에 대하여 일부 입주민이 반대의견을 개진한다 하여도 반상회 또는 관계자회의를 통하여 개인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아파트단지에 CCTV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된다 하겠다.

<그림 3-8> 주거지역의 CCTV 설치사례

(3) 대중교통시설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시설은 안전사고 방지 등을 목적으로 CCTV 설치가 일반화되어 있다. 지하철의 경우 도로와 연결된 출입구에서부터 에스컬레이터, 개찰

구, 이동통로, 플랫홈, 엘리베이터 등 시민들의 동선에 따라 1개 승하차역당 최소 6회이상 CCTV에 노출되고 있으며, 버스의 경우 승차구 및 운전석을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특히 버스운전기사의 범죄피해방지 등을 위하여 CCTV 영상 외에도 음성까지 녹음할 수 있는 장비가 보급형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차량용 CCTV가 택시, 콜밴 등에 설치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3-9> 대중교통시설의 CCTV 설치사례

대중교통시설의 CCTV 영상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행중 또는 24시간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수집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될 수 있으며, 특히 음성녹음 기능은 사생활침해에 심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 2) 시사점

#### (1) 설치 및 관리감독

민간부분 CCTV 설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CCTV의 촬영대상이 공적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공부분 CCTV의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하고 있으나, 민간부분 CCTV의 경우 촬영대상자의 설치반대 의견이 수용될 수 있는 절차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해당 민간시설은 범죄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증거확보 등을 위하여 설치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기록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과 안내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간부분 CCTV 설치에 대한 촬영대상자의 의견반영과 함께, 기록된 정보의 관리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리감독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서 민간부문 CCTV 관련 내용이 포함될 경우, 민간부문의 200여만대의 CCTV를 일일이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과 악용 등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 또한 시급하다 하겠다.

#### (2) 가이드라인의 제시

민간부분 CCTV 설치에 따른 기록보존 및 관련 규제를 위해서는 인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촬영대상자의 의견 반영과 접근권이 보장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CCTV를 포함한 개인정보에 관한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으로는 1980년 9월 23일 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히 '사용제한의 원칙', '보안 확보의 원칙', '공개의 원칙', '개인 참가의 원칙' 등을 통하여 CCTV와 같이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에 주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개인의 의견 반영 및 접근권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3-50> 프라이버시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OECD)

| 기본 원칙 | 주요 내용 |
|---|---|
| 수집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
| 개인정보의 질에 대한 원칙 |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해야 하고, 사용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
| 목적 명확화의 원칙 |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
| 사용 제한의 원칙 |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 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 보안 확보의 원칙 |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수정, 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
| 공개의 원칙 |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의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
| 개인 참가의 원칙 | 정보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
| 책임의 원칙 |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

특히 가이드라인 중에서 '사용 제한의 원칙'과 '보안 확보의 원칙'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를 분명하게 규정하고, 개인의 요구에 의한 정보의 접근, 파괴, 수정 등을 명시함으로써 CCTV 촬영에 의해 기록된 개인정보를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 (3) 인권침해적 요소의 최소화

상점 및 쇼핑센터 등 상업지역의 경우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난방지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증거확보를 위한 CCTV 설치는 부분적으로 그 권리를 인정될 수 있으나,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편의점 등 상점의 계산대 또는 진열대 등에 설치한 CCTV가 설치방향으로 인하여 공적영역인 도로나 건물 외곽을 가시거리에 포함하고 있다면, 설치방향을 변경함으로써 불필요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단지 및 주택가 등 주거지역에서는 주차장 또는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한 건물 외곽, 담벼락, 통행로 등에서는 고해상 CCTV 설치를 규제하여 일반 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개인의 동선이나 기타활동에 대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주차장 출입구의 '차량번호 자동인식기'의 경우 관련 정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폐기함으로써 인권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는 차량용 CCTV를 포함하여 다양한 기종의 CCTV가 음성녹음 기능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자칫 개인 사생활의 직접적인 침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음성녹음 기능을 제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제4장 CCTV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법적 논의

## 제1절 기본권 침해의 법적 논의

### 1. 사생활불가침과 개인정보보호

#### 1) 헌법상 사생활 자유의 보호

종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홀로 있을 권리인 소극적으로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않고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의미하였다. 오늘날에 와서는 이에 더하여 자신의 정보를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도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사생활이 보호되지 않고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기대할 수 없다. 헌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 제17조에 개개인의 사적 생활의 평온을 교란받지 아니하고 사적 사항을 함부로 공표당하지 않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개념은 원래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에서 유래한다. 이 프라이버시권은 미국에서 Warren· Brandeis의 논문[4]이 나온 것이 계기가 되어 권리로서 인정되었다. 즉 비록 미국 수정헌법에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미 연방대법원은 1965년 Grisworld v. Connecticut 사건[5]에서 비로소 프라이버시가 헌법상 하나의 독립된 권리로서 보장되게 된 것이다.

개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적인 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은 금지된다. 개인의 신체상의 특징, 성관계 등 개인이 비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을 신문이나, 잡지, T.V., 영화, 컴퓨터망에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이를 공개하는 경우에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여 불법행위가 되려면 첫째, 사생활의 공개로 사실을 공공연하게 공표하여야 하고, 둘째, 공개된 사실이 사적 사항이어야 하고, 셋째, 공개된 사실이 통상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심리적 부담 또는 불안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넷째, 공개된 사적 사항이 자신에 관한

4) Warren·Brandeis,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1890, p.193.
5) 381 U.S. 479. 피임도구의 사용은 부부사이의 프라이버시권으로서 수정 제14조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한 사건.

것이라는 동일성(Identification)이 입증되어야 한다.

또한 사생활의 자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감시, 도청, 도촬 등 사생활의 비밀을 탐지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방해하여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해를 낳게 하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공표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래서 통상인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도의 평온 침해나 오해를 낳게 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된다. 그리고 개인이 고유한 인격적 징표인 성명, 초상, 경력, 이미지 등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 사생활 침해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인은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개를 방해받지 않으며, 자신의 인격발현에 관해 자율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권리를 갖는다. 개인은 결혼, 이혼, 임신, 피임, 성생활, 교육, 장발, 취미생활 등의 자유를 간섭받거나 방해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생활을 적극적으로 형성하고 전개할 권리를 지닌다.

### 2) 개인정보보호 필요성 증대

현대에 들어와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이라는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와 관련한 사생활보호문제는 새로운 차원의 헌법문제로 대두되었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개인의 많은 정보들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개되고 유통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가능성이 날로 증가하여 개인정보의 무단사용 및 유출, 공개유통, 이용 등을 통한 사생활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기책임 하에 스스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보의 처리, 이용여부를 결정하는 개인정보자기통제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다.

종래 개인정보를 지칭하는 용어로는 '비밀'이나 '프라이버시'라는 말이 사용되어왔다. 여기서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특정된 것으로 적은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장영민, 1999: 7). '개인정보'란 종래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의 비밀처럼 완전한 은닉의 대상은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통제 하에서 정보주체의 자기결정의 활용대상이 되는 개인관련정보를 말하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개인적이라는 말은 객관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1980년 OECD 이사회의 권고에서 개인정보는 '식별된 또는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개인정보"라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대사회에서 개인과 관련된 정보는 개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개인정보는 생산되고 이용되는 것이다.

### 3)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의 관계

프라이버시는 '홀로 있을 권리'인 소극적 의미와 '자기정보의관리통제의 권리'인 적극적인 의미인데 대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들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에 대해 프라이버시가, 개인정보를 포함한다는 견해와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를 포함한다는 견해로 양자를 구별하기도 한다. 전자는 프라이버시를 영역 프라이버시, 신체 프라이버시, 정보 프라이버시로 분류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가 자기정보통제권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보호대상이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의 개념이 프라이버시에 포함된다고 본다. 이에 대해 후자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고 개인정보는 한 사람 그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프라이버시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차이를 엄밀히 고찰한다면 프라이버시는 주관적 성격이 강하고 그 외연이 불분명하여 추상적이고 포괄적 개념인 반면, 개인정보는 객관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범위를 확정하기 용이한 개념으로 수집된 개인정보에 더 신뢰를 두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늘날 프라이버시는 자기정보통제권을 포함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정보보호에 있어 양자 간 궁극적인 차이는 없다고 보여 진다. 다만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개인정보의 침해가능성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다룰 때에

프라이버시침해문제가 소극적 프라이버시 보호관점보다는 적극적인 프라이버시인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관점으로 변화된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개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허락없이 개인에 관한 정보의 자의적 수집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이는 배제되어야 한다. 또한 개인은 자신에 관한 정보에 대해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고 정보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2. 개인정보의 분류와 보호범주의 확대

### 1) 개인정보의 분류

개인정보를 분류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과 관계되고 이를 둘러싼 권리관계를 다루는 제도의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개인정보를 분류하는 견해는 아직 틀이 정립되지 않은 논의 상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 관리주체별 분류, 성격별 분류, 내용별 분류, 정보주체별 분류가 있고 기본정보와 그 외 정보로의 분류, 정보등급별 분류 등이 주장되고 있다. 여기서는 공공이나 민간여부, 주체여부를 떠나 활용될 수 있는 분류인 성격별, 내용별 분류를 소개하고 그 외 좀 더 세분화된 분류를 살펴본다.

#### (1) 성격별 분류

개인정보를 개인의 성격적 성향과 관련하여 구분하는 경우에도 민감도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인격적 정보와 재산적 정보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여기서 인격적 정보나 재산적 정보 내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정보와 낮은 정보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인격적 정보 중에서 차별적 처우 기준은 민감도가 높은 정보라 할 수 있고, 재산적 정보에서 신용불량기록 등은 재산적 정보 중에서도 민감도가 높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일반정보, 신분이나 가족정보 등은 기본적인 정보이지만, 이를 제외하면 개인정보는 인격적 특성과 재산적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 분류기준도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명확한 기준으로 분류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 (2) 내용별 분류

가. Weible의 분류

Weible은 개인정보를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등으로 상세하게 분류하고 있다. Weible은 개인정보를 1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본적지, 성별, 국적 등

② 가족정보-부모 성명 및 직업, 배우자 성명 및 직업, 부양가족의 성명, 가족구성원의 출생지 및 생년월일,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③ 교육 및 훈련정보-학생기록부, 학력, 학교성적, 기술자격증, 전문면허증, 서클활동, 상벌사항, 성격 및 행태보고 등

④ 병역정보-군번, 계급, 제대유형, 근무부대 등

⑤ 부동산정보-소유주택, 소유토지, 소유상점 및 건물 등

⑥ 동산정보-자동차, 보유현금, 저축현황, 현금카드, 주식, 채권, 유가증권, 수집품, 고가의 예술품, 보석 등

⑦ 소득정보-연봉, 이자소득, 임대소득, 기타 소극의 원천 등

⑧ 기타 수익정보-보험가입현황, 보험수익자, 회사의 판공비, 투자프로그램, 퇴직 프로그램, 휴가, 병가 등

⑨ 신용정보-대출상황, 저당권설정여부, 신용카드 연체 및 미납의 수, 담보설정여부 등

⑩ 고용정보-고용형태, 고용주, 회사주소, 상관의 성명, 직무수행 평가기록, 훈련기록, 상벌기록 등

⑪ 법적정보-전과기록, 교통위반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납세기록 등

⑫ 의료정보-본인 및 가족병력, 과거의 의료기록, 정신질환기록, 신체장애, 혈액형 등

⑬ 조직정보-노조가입, 종교단체가입, 정당가입, 클럽회원 등

⑭ 습관 및 취미정보-흡연량, 음주량, 취미의 종류, 여가활동, 도박성향, 비디오 대여기록 등

나. 총무처의 분류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관장하던 총무처에서 개인정보를 5개 항목으로 분류한 바 있다.

① 내면의 비밀-사상, 신조, 종교, 가치관, 양심 등
② 심신의 상태-체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병력 등
③ 사회경력-학력, 범죄경력, 직업, 자격, 소속정당 및 단체 등
④ 경제관계-재산상황, 소득, 채권채무관계
⑤ 생활·가정·신분관계-성명, 주소, 본적, 가족관계, 출생지, 본관 등

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분류

2004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분류체계를 좀 더 광역화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②, ③, ④, ⑤, ⑥, ⑦은 활동정보로 보아 크게 속성정보, 활동정보, 민감정보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① 속성정보-이름, 성별, 나이,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혈액형, 신장, 체중, 사진, 지문, 장애, 기타 개인을 타인으로부터 식별하고 특성을 규정짓는 정보
② 가족, 출신 및 생활환경-결혼, 이혼경력, 가족관계, 습관, 주거, 여행, 레저활동, 자선단체가입 등
③ 학력 및 교육-학력, 출신학교, 성적, 학교생활, 기능, 자격 등
④ 고용 및 경력-취업, 사업경력, 구직, 채용, 인사, 근태, 근무평정기록 등
⑤ 재산·신용·납세-수입, 임금, 투자, 지출, 채무, 보험, 재산, 연금, 보조금, 납세사실 등
⑥ 사회보장 및 형성서비스-정부로부터의 급부, 급여, 면허, 특허, 인가, 행정계약 등
⑦ 기타-기타 개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정보
⑧ 민감정보-인종, 민족, 국적, 정치적 성향, 종교, 노조·사회단체활동, 보건·의료, 성생활, 행정처분사실, 전과·수형기록, 병역사항, 기타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

라. 기타

그 밖에 개인정보를 기본정보, 색인정보, 부가정보, 민감정보로 분류하고, 그 민감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여 보호수준을 정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① 기본정보-개인의 생명과 생년월일, 주소 및 주민번호, 성별 등

② 색인정보-지문, 홍채 등

③ 부가정보-개인의 신용등급, 금융자산, 재산규모, 납세액, 신용카드번호, 은행계좌내역, 소비형태 등

④ 민감정보-사상 및 양심 관련자료, 성적 취향, DNA정보, 정신질환이나 특유한 유전질환의 진료정보 등

이같이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분, 사회적 지위, 재산, 정신, 신체 등에 관한 사실과 판단 및 평가를 나타내는 일체의 개인에 관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견해들을 참고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

<표 4-1> 개인정보 분류표

| 분류 | 내용 |
|---|---|
| 기초적인 개인정보 | 이름, 주소, 전화번호, 성별, 생년월일, 신체, 출신지, 본적, 본관 등 |
| 사회적 지위, 경력 | 직업, 근무지, 학력, 경력, 전과, 자격, 소속 정당 및 단체 등 |
| 경제력 관계 | 소득, 재산상태, 채권채무관계 등 |
| 가족관계 | 배우자, 가족 등 |
| 심신상태 | 체력, 병력, 건강상태, 신체적 특징 등 |

다만 개인정보의 공개나 취급에 따라 개인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에 대해 느끼는 정도에 대한 차이는 개개인에 따라 다르고, 처리방법이나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범위는 모든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개인정보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

### 2) 개인정보보호 범주의 확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등의 발달로 종래 가능하였던 통제의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많은 부분 불가능하게 되고 개인의 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은 심히 증대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의 출현은 1980년대에 인식된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확대시켰다.

가상공간에서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문제는 과거에 통제하던 방식으로는 개인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었다. 개인이 지닌 정보가 단순히 기록의 형태로 관리,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네트워크화 됨으로써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단시간내에 거대한 양의 정보를 가공, 유통, 처리되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정보의 심각한 침해와 이를 통한 기본권 침해는 날로 증가일로에 있다. 즉 종래의 정태적인 개인정보보호법으로는 유동적이고 광범위한 형태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없게 되어 개인정보의 침해에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침해로 발생하는 기본권은 단순히 프라이버시권의 침해만이 아닌 가상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사이버공동체 결사권, 익명을 요구할 권리, 역감시권으로서 개인정보보호권의 문제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제는 오프라인상에서만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기본권보호문제도 개인정보보호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논의가 전개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의 인정범주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의 해결 또한 앞으로의 해결해야할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의 논의 현황

### 1. 국제적 차원의 논의

#### 1) OECD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컴퓨터에 의해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고 자유롭게 유통되면서 이를 위한 적

절한 보호가 필요하고, 각국의 법제도를 통일할 필요성에서 OECD가이드라인[6]과 같은 국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요구되었다.

세계 각국의 법률은 개인정보 보호와 규제에 관해 자기 나라의 국내사정을 반영하여 그 방식도 서로 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국제화로 국제간 개인정보의 유통이 국제적인 규모로 커져감에 따라 각국 상호간 법제도의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각국은 OECD권고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와 자유로운 상거래가 이루어지도록 각국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을  각국 법제도의 정비에 합의한 것이 바로 'OECD'권고이다.

OECD 권고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8대원칙을 채택하였다. 즉 첫째, 개인에 관하여 수집할 수 있는 정보의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서 제한이 가해진다는 수집제한의 원칙(Collection Limitation Principle), 둘째, 개인정보는 사용목적과 사용범위가 부합해야 하며, 개인정보는 정확하고 완전하게 항상 갱신되어야 한다는 정보정확성의 원칙(Data Quality Principle), 셋째, 개인정보가 수집되는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에도 최초의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명확화의 원칙(Purpose Specification Principle), 넷째,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확화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이용제한의 원칙(Use Limitation Principle), 다섯째,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은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안전보호의 원칙(Security Safeguards Principle), 여섯째, 자기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이의제기 및 정정·삭제·보완청구권을 갖는다는 개인참가의 원칙(Individual Participation Principle), 일곱째, 개인정보의 존재, 목적 등 개인정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의 원칙(Openness Principle), 여덟째, 정보관리자는 개인정보보호원칙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임을 진다는 책임의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이다.

### 2) EU의 대응

EU에서 1990년 9월에 각국의 국내법을 조정함으로써 개인 데이터의 자유로운

6)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1980년 9월 23일에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사회권고'로 국제기구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대응방법으로 지침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을 확보할 목적으로 지침의 기초안을 제의하였고, 1995년 10월 24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5/46/EC지침[7]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전기통신분야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1997년 12월 15일 '전기통신분야에 있어서의 개인 데이터 처리 및 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97/66/EC지침'[8]이 제정되어 있다.

EU지침의 특색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EU지침의 적용을 받는 지역은 유럽연합에 가맹한 15개국[9]과 유럽경제지역[10]에 적용되고, 중앙 및 동유럽 각국은 적용되지 않는다. EU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는 나라는 EU지침에서 말하는 제3국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는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의 정비를 위한 검토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림 4-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국제적 논의

- ▶ 1980년 OECD 가이드라인(Guide lines for the Pretections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개인정보에 대한 8개 원칙
- ▶ 1995년 EU 지침(European Directive on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회원국에 강제력, 비회원국(제3국)의 사실상 강제력
- ▶ 1995년 EU 지침(European Directive on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전기통신분야에서의 치침

## 2.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논의

### 1)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7) Directive 95/46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October 1995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on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395 L0046, Official Journal L 281, 23/11/1995 pp.0031~0050(http://www.europa.eu.int/eurlex/en/lif/dat/1995/en_3951J)046.html).

8) Directive 97/66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December 1997 concern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protection of privacy in the telecommunications sector, 397L0066, Official Journal L024, 30/01/1998 pp.0001~0008(supra site).

9)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룩셈부르크, 네델란드,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오스트리아, 핀란드, 스웨덴.

10)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헌법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져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정보의 전산화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1994년에 제정되었다. 민간부문에서는 1995년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신용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제한적으로 이용해 관련 사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일반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했다. 그 이후 정보통신망의 확충과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통이 일반화되어 1999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바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적 기틀을 마련하였다. 2001년에는 법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명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현행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제는 헌법을 근거로 하여 공공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민간분야에서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각각 일반법으로서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주민등록법, 예금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개별 법률은 특별법으로서 위 일반법에 우선하여 개별 상황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2> 개인정보보호법 체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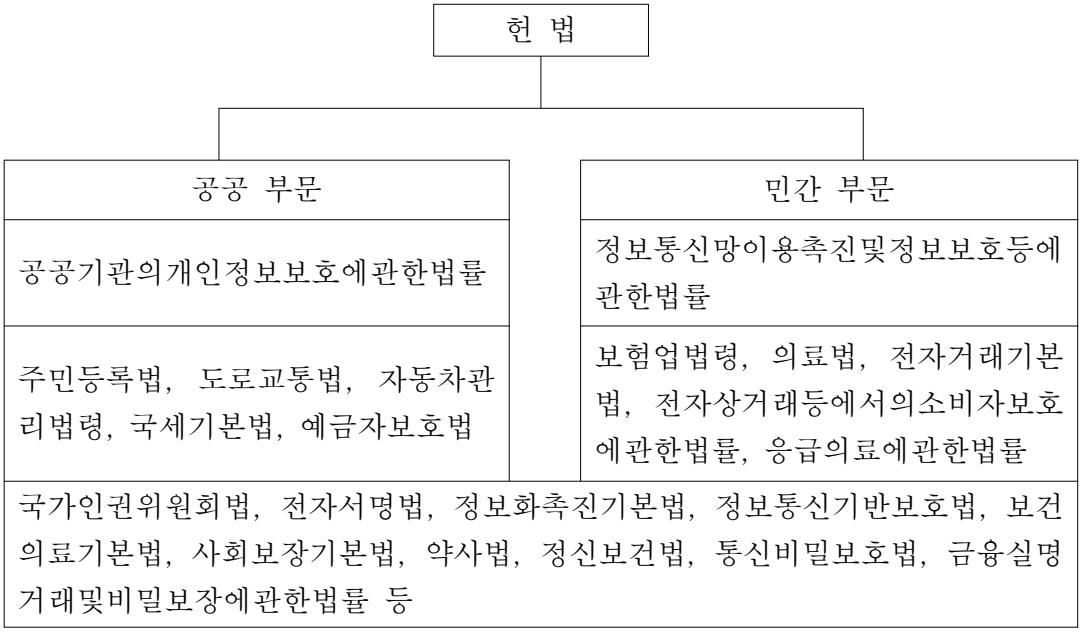

### 2) 개인정보보호법 발의안의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면 민간 영역 CCTV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는 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안들에서 규정하고 있는 CCTV 관련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표 4-2> 개인정보보호법 정부제출안

| 구 분 | 주요내용 |
|---|---|
| 정부제출안 |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된다.<br>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br>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br>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br>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br>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br>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br>⑥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제27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br>⑦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

<표 4-2> 개인정보보호법 국회제출안

| 구 분 | 주요내용 |
|---|---|
| 이혜훈의원 발의안 | 제14조(개인정보수집장치의 이용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장치 또는 기기(이하 "개인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 고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br>② 개인정보처리장치를 설치·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장치 운영·관리지침을 정하여 게시 또는 공개하고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열람(사본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br>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종류, 설치목적, 설치장소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치·절차·방법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의무, 제8조제1항에 따른 고지 및 동의 획득 의무를 면제한다.<br>⑤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장치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변재일의원 발의안 | 제18조(자동정보처리장치를 통한 처리 제한) ① 자동화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정보주체를 감시·추적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기(이하 "자동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고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현저한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br>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자동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 내역 등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하여야 한다.<br>③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용도, 설치금지 구역, 설치 절차 및 방법, 이용 방법 및 조건, 수집된 정보의 보호 및 폐기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br>④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자동정보처리장치의 설치·운영 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의무와 제10조제1항의 고지·설명 의무를 면제하고,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 내역 등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 의무를 면제한다.<br>⑤ 자동정보처리장치의 범위 또는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 개인정보보호 입법체계에 대한 논의 및 과제

헌법과 개별 법률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법제에서 개별법은 국가와 개인 간 관계라고 하는 공공부문(public sector)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제와 개인과 개인 간 관계라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의 개인정보보호법제로 나뉜다.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정보의 전산화로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기간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그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일반법적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공공업무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를 통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보호하도록 정비가 잘 되어 있다. 그 외 특별법으로서 주민등록법, 국세기본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령 등이 개별상황에 우선 적용된다.

한편 민간부문에서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은 신용정보를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제한적으로 이용해 관련 사업을 진흥하려는 목적이 강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일반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이후 정보통신망의 확충과 이를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유통이 일반화되어 1999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바꾸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활용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제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001년에는 법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명하면서 개인정보 관련 조항을 대폭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민간부문에서 비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 규정되어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처럼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일반법적인 역할을 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민간부문에서 적용될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국회에 표류 중에 있다. 입법기관이 필요한 입법을 하지 않는 동안 개인이 정보처리, 정보이용 등을 통해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한시라도 빨리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명실상부한 국민의 기본권의 최대한 보호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 제3절 CCTV 관련기관의 의견

### 1. CCTV와 개인정보 권리 관련

#### 1)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10월 구금시설의 CCTV에 대한 진정사건에서 CCTV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CCTV는 재생 및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수 있으며, 특정 부위를 정밀하게 촬영할 수 있고 촬영된 내용을 편집할 수 있다. 또한, 24시간 연속으로 대상자의 모든 행동이 감시되고 동태적인 삶의 흐름이 정보의 형태로 녹화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고, CCTV가 설치된 사실 자체가 주는 '위축효과'로 인해 일반적인 행동의 자유도 현저하게 제한되며, 녹화된 개인정보의 유출등 악용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에 CCTV에 대한 진정 및 상담 등이 꾸준하게 제기되는 현황을 보면, CCTV로 인한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시각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표 3-1> 국가인권위원회 CCTV 관련 민원현황

| 연도별 | 진정 | 상담 | 민원 | 안내 | 합계 |
|---|---|---|---|---|---|
| 2001년 | 1 | 0 | 0 | 0 | 1 |
| 2002년 | 7 | 0 | 1 | 0 | 8 |
| 2003년 | 16 | 5 | 3 | 3 | 27 |
| 2004년 | 53 | 14 | 6 | 10 | 83 |
| 2005년 | 52 | 38 | 21 | 20 | 131 |
| 2006년 | 30 | 50 | 18 | 26 | 124 |
| 2007년 | 73 | 72 | 19 | 30 | 194 |
| 2008년 | 85 | 96 | 18 | 22 | 221 |
| 2009년 | 92 | 124 | 16 | 6 | 238 |
| 합계 | 409 | 399 | 102 | 105 | 1,015 |

이와 함께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CCTV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첫째, 목적 내 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있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용도는 크게 교통흐름 조사용, 교통법규위반차량 단속용, 방범용, 쓰레기무단 투기 단속용 등이 있다. CCTV등 무인단속장비가 오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초 설치된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해야 하며, 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새롭게 동의를 받는 등 오·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임의의 조작 금지. 최근의 CCTV 등 무인단속장비는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조작이 가능하며 가시거리가 몇 백미터에 이를 정도로 가시성능과 줌(Zoom)기능이 뛰어나다. 따라서 모니터링 과정에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화면에 잡힌 사람의 얼굴을 줌(Zoom) 기능을 이용하여 확대 촬영할 수 없도록 하거나, CCTV 등 무인단속장비가 공공 도로가 아닌 개인의 집안을 촬영할 수 없도록 회전 기능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제3자 제공 제한. CCTV 등 무인단속장비로 촬영된 녹화기록에는 개인의 초상 및 언제 어느 곳에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에 관한 개인의 행적을 담고 있으며, 그 녹화기록물은 보유목적 외에 다른 행정목적이나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사자의 동의나 적법한 근거에 따라서만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파기의 원칙. 보유기간에 대해서도 필요이상 오랜 기간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수사나 재판자료로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범죄예방이라는 목적과 무관함이 판명되는 대로신속하게 정보를 파기하도록 해야 한다.

### 2) 보육시설의 IPTV 관련

보육시설의 IPTV는 서울특별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된 보육시설에 대해 자녀들의 교육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어린이집 전용방송 채널을 말한다. IPTV 시스템을 설치하면 이 방송은 인터넷망을 통해, 가정의 TV뿐 아니라 직장 및 핸드폰으로 중계가 가능하다.

서울특별시는 '안심보육'이라는 명목하에 2009년 4월부터 시스템을 무료로 설치, 지원하겠다며 각 자치구에 공문을 보내 신청을 받았다. 공공노조에 따르면, 3월까

지 서울형 어린이집에 공급된 IPTV는 총 386개소에 달하며, 이는 전체 서울형 어린이집 1543개소의 25%에 달하는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형 어린집의 IPTV 시스템은 최근 보육시설 내 아동 폭행 사건 등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의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안심보육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로 인한 보육교사의 근로감시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있어 왔으며, 관계기관의 자문요청, 보육교사의 진정, 학부모의 민원 등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08년 3월 공공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에서는 CCTV로 촬영한 내용은 얼마든지 무제한 복사가 가능하고 편집까지 할 수 있으므로 CCTV 관리자에 의해 아동의 생활이나 보육노동자의 노동활동이 사실과 다르게 왜곡 표현될 위험도 있다는 사실과 특히 대부분의 보육시설이 소규모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또한 CCTV로 녹화된 내용이 부적절하게 유출될 가능성도 높고 실제로 유출된다면 해당 아동과 보육노동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히게 되며, 보육노동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CCTV는 아동들과 보육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보육노동자들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수단이 된 것에 우려의 의견을 표명하였다.

## 2.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관련

### 1) 천주교인권위원회 권고안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010년 4월 개인정보보법 정부발의안의 기본 입법 목적은 첫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기본적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법률로써 규정하여 그 동안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점, 둘째,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점(다만, 그 예외가 너무 광범위해 남용의 여지가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셋째, 일반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점에서 찬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를 금지하면서도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예외로 두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입법취지와 배치되며,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용거실에 설치하여 24시간 수용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촬영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은 하루 24시간 내내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감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머릿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고 따라서 그의 행동이 이러한 사실의 자각에 의해 위축받을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태 하에서는 "하고 싶은 일은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하는" 행동의 자유가 보장되기 힘들어진다는 점에서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수용거실에 설치하는 것이 수용시설 내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보호 및 다수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인권 보장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덜 제한하고도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교도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여 많아진 교도관들이 대면계호를 통해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촬영은 하되 24시간 내내 수용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 내의 질서유지나 수용자의 안정적인 수용생활 등과 별 관계가 없는 사항(목욕이나 탈의, 용변보는 모습)은 촬영하지 않고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는 모호한 법적 근거로 수용거실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그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임을 밝혔다.

# 제5장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해결과 개선방안

## 제1절 CCTV의 기본권침해 문제

### 1. CCTV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전제

#### 1)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우리 헌법 제10조 후문에서는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가는 국가기관이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여야 할 뿐 만아니라 사인이 제3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보호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인이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설치한 CCTV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와 인격권 등을 침해하는 경우 국가는 이러한 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 2) CCTV의 기본권 침해 여부

CCTV는 개인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의 침해가능성을 동반하는 것으로 그 설치, 운용에 대한 합헌성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견해로는 합헌론과 위헌론이 대립되고 있다.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합헌적인 것이라는 견해는 CCTV설치가 범죄로부터 안전할 권리와 통행인이나 시설이용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것으로 보고 기본권 충돌시 법리에 의해 해결하고자 한다. 즉 법익형량 및 실제적 조화에 의해 인격권 제약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권 충돌은 두 명이상의 권리주체가 등장하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을 전제로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는 행위[11]로 인한 충돌일 것이라는 기본권침해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11) 기본권의 충돌처럼 보이지만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 않는 행위로 인해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는 기본권의 남용 또는 기본권 한계일탈이 된다. 예를 들면 출판의 자유를 보장을 주장하면서 출판업자가 종

이에 대해 CCTV의 설치 및 운영이 위헌적이라는 견해는 국가권력이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개인의 이미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는 법률유보없는 국가권력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침해행위라고 한다. 이 견해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관할경찰서가 협력하여 CCTV를 설치하여 운용하는 행위는 합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CCTV 설치 및 운용은 기본권의 제한(침해)[12]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그러한 제한의 의도성 그리고 법률유보원칙 위배여부로 판단되어지게 된다. CCTV는 그 운용형태에 따라 얼마든지 인격권의 과도한 제한 없이 운용될 수 있다. 확실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운용되는 CCTV의 위험성만을 들어 기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본다.

기본권제한의 근거가 되는 입법이 있기 전까지 CCTV운용은 어디까지나 기본권 침해가 없을 뿐 아니라 침해의 예측가능성은 없는 형태로 그 운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허용되어질 것이다. 사적 장소와 달리 공공의 장소나 공공이용의 시설에는 공중에게 자유로운 통행권이 인정되므로 찍히기 싫으면 다른 길로 통행하라고 하든지 카메라 설치가 없는 곳만을 피해 이용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인격권제한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CCTV 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상황인가는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본다.

### 3) 민간부문 CCTV의 기본권 효력(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란 기본권의 구속력이 국가적 행위 이외에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확장되어 적용된다는 것으로,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면서부터 사법의 영역에서도 기본권이 적용된다는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사인에 의해 사적 작업장이나 목욕장에 설치된 CCTV나 지역주민들이 설치하고 관리하는 CCTV의 경우에는 사인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경우이다. 기

---

이를 절취하여 출판하는 행위, 타인의 땅에서 집회행위를 신고하거나 타인의 건조물을 파괴하는 행위 등은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해당되지 않는 기본권 유사충돌에 해당된다.

12) 기본권 제한과 기본권 침해를 정당성 여부에 따라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가 되나 기본권제한은 정당성의 여부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여 양자를 구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으나(최갑선, 1995: 412), 궁극적으로 기본권의 제한이 정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양자를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여부에 대한 견해로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는 기본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적용부인설, 사인간의 법률관계에도 기본권규정이 직접 적용된다는 직접적용설,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사법이므로 기본권은 직접 적용될 수 없고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적용된다는 간접적용설이 주장되어진다. 우리 헌법상에서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상 혹은 기본권의 성질상 사인간의 법률관계가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참정권, 근로3권 등을 들고 있고, 그 밖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간접적용설을 취하는 것이 통설적인 견해이다.

따라서 민간 CCTV설치 및 운용으로 인한 개인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 위 견해를 적용하여 해결할 수 있게 된다.

## 2. CCTV와 기본권침해

### 1) CCTV와 프라이버시권침해

CCTV가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가에 대해 독일의 인격영역론에 기초하면 전통적 사생활영역이라 볼 수 없는 공공장소에서의 CCTV감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권의 이름으로는 보호되지 않는다고 하여야 한다. 즉 공개된 장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출현을 타인에게 비밀로 하겠다는 의사가 없고 그러한 상황에서 타인이 보아서는 안된다고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으므로 이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출입자의 촬영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 프라이버시권 개념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도 사적 사항은 존재하는 것이므로 자기결정권 영역에 속하는 정보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인정될 수 있게 된다(김연태, 2001:173~174). 미국에서는 '프라이버시에 대한 합리적 기대이론'이나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단순조망이론'에 의해 공개된 장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를 적용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의 상당한 기대가 없다면 그 침해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해 미대법원은 경찰순찰차의 앞유리에 부착된 비디오카메라 활용을 허용하는 판결을 하고 있고, 경찰순찰차의 카메라 이용이 대체로 허용되고 있다.

촬영과 관련한 권리침해 여부는 구체적인 개인의 행위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

고 볼 수 있다. 공개된 장소에서의 행위는 남에게 알려지거나 불간섭을 받겠다는 의도가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대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방범목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된 장소에 국가기관이나 사인이 CCTV를 설치하여 그 장소를 출입하는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 자신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 2) CCTV와 초상권 침해

일반적으로 초상권이란 자신에 관한 용모나 자태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인격권과 명예 및 신용을 포함하는 권리이다. 촬영된 초상사진이나 제작된 초상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얻은 이익은 재산권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초상권은 초상이용거부권으로서의 초상권인 인격권 이외에 상업적 이용 거부권으로서의 초상권인 재산권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 초상권은 프라이버시권의 일종에 속하며, 초상권침해란 어떤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황환교, 1983:56-57). 이에 대해 대륙법계국가에서의 초상권은 인격적 속성을 대상으로 하여 자유로운 발전을 위하여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해 보호되지 않으면 안되는 프라이버시권과 독립된 권리로 승인되고 있다(황환교:55). 영국에서 초상권은 저작권법에 규정되고 있어 자기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로 인격권이 인정되고 있다.

우리 헌법에는 초상권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은 없고, 다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불가침의 규정에서 간접적으로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의하지 않은 경우 CCTV에 의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촬영이 되는 경우에 이는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침해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면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또한 가능하다. 공개된 영역에서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에 프라이버시권이 아닌 초상권 침해가 문제가 된다. 결국 비공개의 장소는 물론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국가기관이나 사인이 CCTV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초상권을 침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초상권도 절대적,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 3) CCTV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오늘날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기술과 정보통신망의 발달로 개인의 정보는 대량적· 집단적· 무제한적으로 유통됨으로써 개인의 사적 영역이 자주 침해당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문제가 제기되게 된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알려지고 이용되는 범위와 대상을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등에서 구하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등 위헌확인사건결정[13]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상 근거를 위 규정 중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다.

CCTV에 의한 촬영은 피촬영자가 예상치 않는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이 보여진다는 것과 자신의 행동을 공개할 범위 결정을 타인이 하게 된다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여러 모니터를 통해 같은 화면을 송출할 수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되고 수집된 자료가 저장, 활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촬영된 사람이 특정될 수 있게 된다는 점 등에서 단순히 촬영이라는 개념을 넘는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방된 영역에서 감시카메라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특정인을 촬영하려는 목적이 없이 사후적인 평가를 위하여 녹화 또는 저장을 해 두게 되어 기본권의 제한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가 많다.

## 3. 민간설치 CCTV의 기본권 침해 해결

### 1)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

CCTV로 인한 개인의 권리의 침해시 사법상의 구제수단으로는 민법상 불법행위제도, 형사상으로는 CCTV 촬영 및 녹음의 경우에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처

13) 헌재 2005.5.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벌, 촬영된 화면을 공개하여 개인의 명예훼손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국가권력이 불법적인 감시, 촬영 등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행정주체를 대상으로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오늘날 기본권은 사인도 침해할 수 있다는 대사인적 효력이 인정되고 있는 것으로 민간CCTV설치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가 인정된다. 이하에서는 사인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인 민간 CCTV 설치로 인해 개인의 기본권 침해시 해결에 대해 알아본다.

### 2)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 해결 방법

#### (1) 유지청구권 행사

유지청구권이란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장래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침해나 아직 침해발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행위가 개시되면 초래될 위해발생에 대하여 그 원인을 제거하는 조치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격권의 침해를 이유로 유지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으나 판례는 이를 인정한 바 있다.[14]

인격권의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그 침해상태를 제거하고 기타 의무위반의 예방을 위하여 법원은 민법 제214조와 제389조 제3항 및 민사소송법 제692조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693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침해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배병일, 1992: 130).

CCTV의 경우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의 설치를 반대하거나 설치된 CCTV를 철거할 것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또한 이미 촬영한 사진원판에 대한 인도청구를 예상할 수도 있다. 이는 촬영거절권이 침해된데 따른 초상권침해라는 방해제거청구권의 행사로 볼 수도 있다.

---

14) 대법원은 인격권은 그 성질상 일단 침해된 후의 구제수단(금전배상이나 명예회복 처분 등)만으로는 그 피해를 완전한 회복이 어렵고 손해전보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는 사전(예방적) 구제수단으로 침해행위 정지· 방지 등의 금지청구권도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대판 1996.4.12, 93다40614).

### (2) 국가배상청구소송 및 손해배상청구

CCTV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자는 관련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그 손해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배상소송은 성격이 공법관계를 원인으로 하는 당사자소송이지만 소송실무에서는 사법상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통상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지고 있다.[15)]

인격권 침해에 대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1조의 규정에 의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750조의 일반적 불법행위 규정에 의해 제751조에 열거되지 아니한 인격권 침해의 경우도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입증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3) 민간설치 CCTV와 관련한 헌법소원 가능성

#### 가. 헌법소원 가능성

CCTV에 의해 개인의 기본권의 제한 내지 침해는 기본적으로 국가공권력의 작위에 의하여 발생하며 공권력의 부작위에 의해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기본권이 방어권이 아닌 보호권으로서 기능하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최갑선, 1995: 406~411).

즉 공공기관이 설치한 CCTV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인이 설치한 CCTV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음에도 보호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예컨대 개인 주택이나 금은방, 은행 등에서 공도쪽으로 설치한 CCTV나 목욕장 등에서 설치한 CCTV에 의해 촬영 및 감시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다.

#### 나. 헌법재판소 입장

##### (가)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원

15) 대판 1972.10.10, 69다701.

헌법재판소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하나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소원을 인정하고 이에 관하여 심판하고 있다. 헌법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국회의 입법권도 국가의 공권력에 포함되므로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고[16], 이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기도 하였다.[17]

따라서 개인이 국가의 보호의무에 상응하여 갖게 되는 보호청구권을 소송의 방식으로 행사함에 있어서는 헌법소원을 택할 수 있게 되나 청구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8] 여기서 입법부작위가 헌법적으로 구제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의 단순한 입법부작위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헌법상 위헌상태가 초래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은 극히 한정적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바,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전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19]고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사인의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이에 대한 보호입법의 부작위를 주장하는 헌법소원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입법조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입법부작위를 주장할 수 있다할 것이다.

### (나) 집행행위인 공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

기본권침해의 주장은 공권력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대하여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가능하게 한다. 제3자의 행위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로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지만[20], 기본권보호영역

16) 헌재 1989.3.17, 88헌마1.
17) 헌재 1994.12.29, 89헌마2.
18) 법적 관련성은 제3자가 청구인의 기본권적 법익에 현재 구체적으로 위해를 가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어야 하고, 침해의 현재성이나 가까운 장래에 기본권을 침해할 것이 명백한 경우여야 하나, 집행행위나 행정처분과 달리 직접성 요건이나 보충성 요건은 문제되지 않는다.
19) 헌재 1989.3.17 결정.
20) 헌재 1993.3.11, 91헌마87.

에 속하는 어떤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제약하는 경우에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원인으로 하는 기본권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21]

다만 민간CCTV의 경우는 집행행위의 근거법률이 없으므로 입법부작위를 주장하지 않고 남용우려가 있는 민간CCTV설치 및 운용을 공권력으로 규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직접 집행행위의 부작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3) CCTV 관련 판례

#### (1) 헌재 2008. 5. 29. 2005헌마137・47・376, 2007헌마187・1274(병합) 전원재판부(계구사용행위 등 위헌확인 등)
#### -교도소내 CCTV 설치의 기본권 침해여부(기각결정)

엄중격리대상자는 CCTV가 설치된 독거실에 수용되는데, 청송제2교도소의 독거실에 설치된 CCTV는 상하좌우 이동기능 및 줌(zoom) 기능이 없고, 관찰 모니터는 19인치 화면을 16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형자의 미세한 동작이나 표정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루 24시간 동안 녹화된 영상은 화면으로만 나타나고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며 특별히 저장하지 아니하는 이상 용량관계로 1주 내지 2주 이내에 자동으로 삭제된다.

CCTV 아래 약 50㎝ 정도는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공간이어서(수형자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두 다리를 쭉 펴는 경우 무릎 아래만 보임) 수형자가 의복을 갈아입는 등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거실 내의 화장실은 변기 방향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CCTV를 통하여 용변을 보는 수형자의 하반신은 관찰할 수 없고 상반신의 움직임만 관찰할 수 있다.

……교도관에 의한 시선계호(視線戒護)를 보완하는 물적 계호수단으로서 CCTV가 설치・이용되고 있는데, CCTV는 수형자 감시의 효율성 및 경제성이 높고 교정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커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재 전국 구금시설의 수용거실 13,970개 중 9.6%인 1,341개 거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엄중격리대상자를 수용하는 청송제2교도소의 독거실 111개에는 모두 CCTV가 설치되어 있다.

---

21) 헌재 1997.9.25, 96헌마133.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CCTV 설치행위가 헌법 제17조,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견해가 나뉘어졌다.

① 위헌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24시간 내내 수형자의 사생활 전반을 감시함으로써, 수형자의 사생활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수형자의 독거실 내에서의 행동의 자유도 제한하게 되고, 나아가 녹화된 수형자의 영상정보는 유출되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독거실의 수형자를 24시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수형자의 사생활에 극심한 제약을 주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기본권 침해가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요건과 방법 및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법률로 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금시설 내 CCTV 설치·운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법률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법무부 훈령 및 예규인 보안장비관리규정과 법무시설기준규칙에 규정된 CCTV의 설치기준 및 관리요령에 의하여 실시되었다. 2005. 8. 17. 제정된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제53조 제3항에서 엄중격리대상자의 자해·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용거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지만, 이는 법무부 예규에 불과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피청구인은 CCTV를 통한 수형자의 감시는 교도관의 시선감시를 대신하는 계호활동이므로 일반적인 계호활동의 근거규정인 행형법 제14조 내지 제17조의2에 의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교도관의 시선계호와 CCTV에 의한 녹화는 기본권 제한의 정도에서 현저하게 다르다. 교도관에 의한 시선계호는 인간의 불완전한 기억

속에 보관될 뿐이고 재현될 수 없지만, CCTV에 의하여 녹화된 내용은 얼마든지 재생이 가능하고 복사되어 유포될 수 있으며, 원하는 특정부분을 정밀하게 촬영하거나 확대할 수 있고 편집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교도관의 시선계호를 전제로 한 행형법 규정을 수형자의 사생활에 중대한 제약을 가져오는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근거법률로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개정되어, 2008. 12. 22.부터 시행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제94조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계호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지만,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를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결국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헌법 제17조가 보장하고 있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도 없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기각의견(합헌의견)(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의 법적 근거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독거실에서 생활하는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를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규정은 없다.……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이러한 시선계호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호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교도관의 육안에 의한 시선계호를 CCTV 장비에 의한 시선계호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에 대한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계호활동을 허용하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CCTV는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를 대신하는 기술적 장비에 불과하므로, 교도관의 시선에 의한 감시가 허용되는 이상 CCTV에 의한 감시 역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CCTV 설치행위가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

시하여 교정사고를 방지하고 수용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녹화함으로써 수형자 개인의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도로 실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 CCTV에 의하여 감시되는 엄중격리대상자는 상습적으로 폭행·소란·자살·자해 등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있는 수형자들 중에서 엄중한 격리와 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들이므로, 지속적이고 부단한 감시가 필요한데, 교도관의 인력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엄중격리대상자를 독거실에 수용함으로써 폭행·소란 등의 위험성은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살·자해나 흉기 제작 등의 위험성은 해소되지 못하므로 독거실 내의 생활도 계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CCTV 카메라는 상하좌우 이동기능 및 줌(zoom) 기능이 없어 특정부분을 확대하거나 정밀하게 촬영할 수 없고, 관찰 모니터는 화면만 나타날 뿐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며, 19인치 화면을 16분할하여 사용하고 있어 수형자의 미세한 동작이나 표정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CCTV 카메라 밑 부분에 CCTV 카메라로 촬영되지 않는 약 50cm 내외의 사각지대(수형자가 벽에 비스듬히 기대어 두 다리를 쭉 펴는 경우 무릎 이하만 보임)가 존재하여 옷을 갈아입는 사적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독거실 내의 화장실은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 CCTV를 통하여 용변을 보는 수형자의 하반신은 관찰할 수 없고 다만 상반신의 움직임을 통해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여부만 관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CCTV로 녹화된 자료들은 교정공무원에 의하여 관리되므로 교정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특별히 저장하지 않는 이상 용량부족으로 1-2주일 이내에 자동적으로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CCTV 설치행위가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이나 법익균형성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설치행위는 헌법 제17조 및 제3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인용하기에 필요한 정족수(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에

미달되므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 (2) 대법원 2009.11.12. 선고 2009도8949 판결(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CCTV 동영상 검증 및 조작여부관련

가. 현장검증 미실시 및 사실조회신청 미채택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건 현장에 대한 피고인의 검증신청을 채택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은 서울 동작구 흑석동 10에 있는 명수대 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09동 현관 및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던 폐쇄회로티브이(이하 'CCTV'라고 한다) 동영상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고 피고인 측과 검사 측에서 현장의 상황과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연한 동영상을 각각 제출하여 원심에서 이를 심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회 공판기일에 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진단서 발급경위에 관하여는 이미 제1심에서 차용훈, 조명철, 황선웅 등 영동세브란스병원의 의사들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신문을 마쳤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따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피고인의 사실조회신청을 채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사실심법원의 합리적인 심리방법의 선택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나. 엘리베이터 CCTV 동영상 검증에 관하여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 검증을 행한 경우에는 그 검증결과 즉 법원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가 바로 증거가 되고, 그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가 서증으로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2009. 1. 21.자로 실시한 CCTV 동영상에 대한 검증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0호 영상실에서 제6회 공판기일을 진행하면서 재판부 전원, 참여 사무관, 피고인, 검사, 피고인의 변호인, 송일국 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검증은 검증결과가 바로 증거가 된다고 할 것이

므로 설령 그 검증의 결과를 검증조서에 일부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심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현관 CCTV 동영상 원본 검증결과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 원본 검증결과에 관하여 피고인이 신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보안업체인 주식회사 에이디티캡스,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제조사인 주식회사 휘앤시스에 대한 사실조회만을 채택하고, 주식회사 다우리커뮤니케이션즈 및 카이스트 전산학과 교수 최광무 등에 대한 사실조회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현관 CCTV 동영상의 조작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 현관 CCTV 동영상이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 현관에 설치되어 있는 CCTV 기기 본체 및 하드디스크를 제출받았고 그 CCTV 동영상 원본에 대하여 검증을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동영상의 조작 여부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3) 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나17496 판결 : 확정 (원고청구기각판결)**

**-CCTV 기록을 사건 증거로 활용**

이 사건 아파트단지는 18개동, 1,688세대로 피고가 관리하는 면적이 52,451평, 그 중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16,462.50㎡나 될 정도로 넓어 매일 20여 명의 경비원들이 모든 곳을 제대로 순찰, 감시하기란 결코 용이하지 않고, 경비초소도 모두 지상에 있어 경비원들의 순찰과 순찰 사이에 지하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비록 지하주차장 벽면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그것이 경비실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무인카메라가 고정식인 데다가 지하주차장이 매우 넓어 모든 구역까지 세세하게 녹화촬영할 수는 없었을 것

으로 보인다(피고는 사고 당시 원고의 승용차가 사각지대에 위치하여 무인카메라가 작동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시 피고 주장대로 원고의 승용차는 사각지대에 주차되어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고의 경위나 절도범의 침투방법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막바로 피고 경비원들에게 순찰상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4) 수원지법 2009.12.15. 선고 2009나18547 판결
#### -CCTV 기록을 사건 증거로 활용

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차장 입구에 주차관리소를 설치하여 3~8명의 주차안내원을 배치하여 주차 안내 및 주차된 차량의 관리를 하도록 한 점, ② 이 사건 주차장에는 CCTV 10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장의 사무실 내에는 위 CCTV의 화면을 통하여 주차장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았던 점, ③ 이 사건 절도는 사건 당일 16:11경 1분이 채 안될 정도의 짧은 시간내에 이루어져 CCTV 화면에 의해서도 발각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④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승용차에 두고 내린 현금 및 수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임치의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 대한 안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제2절 CCTV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개선방안

### 1. CCTV 관련 법규의 정비

#### 1) 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 관련 규정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사생활 침해가 비교적 적은 목욕탕의 출

입문, 카운터, 신발장 등의 장소에 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최근 CCTV의 성능 등을 종합해 보면, 360도 회전이 가능한 팬틸트 카메라가 설치될 경우 CCTV의 각도 조정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CCTV의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고화질 및 줌기능의 향상, 소형화(핀홀 카메라), 물체이동 추적, 적외선 기능, 네트워크 전송 등의 부가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CCTV 성능 및 설치 방법에 따라 목욕탕 등을 포함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CCTV 영상 모니터가 확인되지 않음으로서 별도의 장소에서 관리자에 의하여 관리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이렇게 수집된 불특정 다수의 개인영상정보의 저장기록 여부, 활용여부, 폐기 등 관리감독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대중목욕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의 영상정보가 방치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연구조사를 통하여 일부 목욕탕 등의 시설에서는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는 목욕탕 홀, 탈의실, 발한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지 않고 숙면을 취하는 수면실과 목욕실 내부, 화장실 입구 등 대중목욕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전신이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 바, 심각한 인권침해의 사안이라 판단되었다.

따라서 목욕탕 등에 설치된 CCTV와 관련하여 관계부서 등의 일제 점검을 통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CCTV 설치를 제한하고, CCTV 촬영 관련 안내사항 고지와 모니터 화면 및 관리상태 고지 등을 명확히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상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등을 강화하여 정기적인 관계당국의 관리감독 체제를 구축해야할 것이다.

### 2) 민간부분 CCTV의 공적영역 투영 관련 규정

범죄예방 목적을 위해 인류가 발명한 첨단과학기술의 산물인 CCTV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간생활에 안전과 삶의 풍요를 가져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CCTV의 대량설치에 따라 곳곳에서 개인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초상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은 촬영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초상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 △사생활, 가정, 주거의 자유와 이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헌법 제17조)를 제한하고 침해할 수 있다. 이는 범죄 예방 및 범죄 수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CCTV 등 무인단속장비를 공공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CCTV를 사용한 영상기록의 녹화는 그 설치지역과 운영방법 등에 따라 개인의 초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특정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 바, 초상권 외에도 심각한 인권침해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이 법률에 근거를 두더라도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하지 않으면 이 역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과잉 제한이 되므로, 범죄예방과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원칙적이고 일반적인 조처들이 검토되고 강구된 후 그러한 조처들로도 범죄예방과 수사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없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동원되는 보충적 수단임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비록 CCTV설치가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 안전과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이 설치와 운용이 확실한 법적 근거 하에서 이루어질 때 개인의 기본권은 보호되어질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민간부문에서 설치되는 CCTV설치와 규제에 관해서 많은 부문에서 법의 사각지대가 나타나게 되고 기본권의 침해가 이루어지게 된다.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을 위시한 미비된 법제도의 정비는 가장 우선적인 기본권 보호를 위한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 가이드라인과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주체, 설치 장소, 설치할 수 있는 무인단속장비의 종류, 그 운영방법 및 절차, 개인의 관리·통제 방법, 감독기관의 감독 등을 포괄하는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함으로써, CCTV 등 무인단속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2. CCTV의 제한 및 관리 운용

각종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피촬영자의 신체, 생명, 재산에 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22]에 의해 개인 식별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 특히 사인이 운용하는 CCTV의 경우는 법률의 근거없이 인격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CCTV 감시는 할 수 없으며,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 기술적 수준에서의 상황감시만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23]

CCTV를 설치하는 목적, 장소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표지판이나 녹음된 음성 등을 통해 카메라가 평균인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설치장소에 공지하여야 한다. 초소형 카메라나 스프링클러와 화재탐지기 등과 혼동될 수 있어 그 기능이 불분명한 카메라의 경우는 특히 고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지를 통하여 개인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의 정보공개 및 행동방향을 정하도록 하거나 CCTV 설치가 범죄예방을 위한 것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 받지 않는다는 안정감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녹화된 자료의 보존기간을 정하고 원래의 수집목적만을 위해 이용하도록 하여 개인의 자기정보관리통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일 CCTV 촬용에 의해 취득된 영상자료에 관해 사후 발생범죄의 범인색출을 위해 개인식별 기타 정밀검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형사소송법상 검증에 해당되므로 법관의 검증영장을 받아야 한다.

CCTV설치부터 운영까지 자체감사, 감독을 실시하여 설치된 카메라가 제 역할을 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24] 카메라 오용행위 및 기타 제반규칙사항위반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즉 CCTV설치에 있어서 일정수의 주민의 동의를 요한다거나, 민간 CCTV설치의 확인을 통해 설치장소나 목적에 부합하는 CCTV가 설치되도록 하여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2) ① 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 분마류 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23) 다만 이는 입법이전에 요구되는 기준수칙이며 입법에 의해 개인정보수집의 요건이 규정되면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24) 피고(상가주인)는 원고(입점 귀금속점 주인)와의 계약에 따라 점포의 도난 등을 방지해야 할 사고방지의 의무가 있다. 점포주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서울지판 2003.12.18, 2002가합37936).

## 3. CCTV 운용 가이드라인 설정

CCTV의 범죄예방과 높은 업무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초상권 등 개인의 기본권의 침해우려가 제기되는 경우에 그 침해를 정하는 국제적인 수준에 부응하는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개인데이터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유엔은 “전자화된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유럽연합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자유로운 전송에 관한 개인보호지침”을 두어 개인정보의 수집 등을 제한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또한, 영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에 근거하여 “CCTV카메라 단속운영에 관한 시행기준”을, 미국에서는 “공공안전을 위한 CCTV와 지역사회경찰활동 가이드라인”을, 호주 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책과 기준”을 두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벌률 제4조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를 통하여,

①공공기관의 장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이하 “공청회”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할 수 있다.

②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③공공기관의 장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④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가중요시설 중 원자력발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안내판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의 가이드라인을 세워놓고 있다.

따라서 CCTV설치, 확대를 통한 범죄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CCTV의 성능 및 설치, 운영주체와 자격 및 방법, 기록물의 보관과 활용 및 이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의 설정으로 국민들에게 CCTV가 제한된 원래 목적을 위한 한계 내에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간부문 CCTV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우선시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 CCTV의 설치 위치와 설치 각도, 설치된 CCTV의 해상도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 CCTV 데이터의 기록보존 책임을 강화하여 관련 제재방안을 모색하고, CCTV 불법 설치 및 CCTV 데이터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 제6장 결 론

정보화사회에 들어서 등장한 CCTV는 여전히 범죄발생시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고, 범죄예방의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CCTV 설치 특히 민간부문에서 설치하고 있는 CCTV는 개인의 기본권 침해의 여지를 지니고 있어 그 개선방안이 절실하다.

CCTV설치 및 감시는 직접적으로는 원하지 않는 촬영에 의해 초상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감시에 의해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집, 처리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자신의 행동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에 촬영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다.

CCTV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사전 예측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식별이 가능하도록 촬영하는 것과 CCTV 자체에 의해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받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식별 없는 촬영행위를 하고, CCTV설치 사실과 운영방법 등을 잘 정비하고 이를 공지한다면 기본권 침해의 여지는 감소된다고 할 것이다.

현재 설치되어 운용되는 CCTV는 생체인식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 개인에 대한 식별조치는 상황감시에서 벗어난 줌렌즈에 의한 확대정도인 것으로, 최소한 방범목적의 CCTV설치 사실을 현장에 공지하고 있는 경우 CCTV설치만으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수권조항 없이 무한정으로 확대 설치되고 운용되고 있는 민간부문에서의 CCTV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당국의 엄격한 관리로 악용의 우려가 없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국제적 지침을 참고하여 운용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OECD의 개인정보 관련 권고안 8개 원칙을 토대로, 영국의 정보보호법 시행령, 미국의 워싱턴DC 경찰청(MPD: Metropolitan Police Department)의 CCTV운용관련 조례를 참고하여 가이드라인을 작성,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는 보호되고 있지만 오히려 민간부문

에서의 개인정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개별법에서는 보호의 한계가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으나, 지난 4월 임시국회에 이어 6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제정이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노출과 도용 및 남용으로 개인의 기본권은 침해되고 있다. 알게 모르게 자신의 행동이 CCTV에 담겨지고 이것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초상권 그리고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루 속히 국제적 수준을 고려한 일반법 형태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에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시행될 경우 민간부문의 200여만대 CCTV를 관리 감독해야 행정안전부 산하에 전문가를 중심으로한 위원회 설치 및 현장실무 인력 배치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목욕탕, 발한실, 탈의실을 포함하여 CCTV 설치가 엄격히 제한되는 장소에 대한 관계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노력을 통하여 더 이상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국내문헌

(1) 단행본

국가인권위원회(2009),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국회사무처 법제실(2004), 공공기관의 CCTV설치 운영에 대한 법제 방향
권영성(2007), 헌법학원론, 법문사
법무부(2004), 「개인정보보호 정책 토론회 자료집」,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의 조화이념 측면을 중심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성낙인(2007), 헌법학, 법문사
정보통신부(2003.7.25), 전자정부시대 개인정보보호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최홍석(2009), 정보인권 관련 법제변화에 따른 시민의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2001), 정보통신용어사전, 두산동아.

(2) 논 문

권건보(2004), 방범용 CCTV 설치·운용에 따른 헌법적 문제점, 명지법학 제3호,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권헌영(2004), 전자정부시대에 정보보호법제의 쟁점, 정보화정책 제11권 제3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김동원(2004), 개인정보보호정책의 변천과 접근방법, 한국정책논집 제4권, 한국정책연구원
김석기(2007),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김양현(2007), 범죄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CCTV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3권 제2호, 한국범죄심리학회

김은미(2001), EU의 인터넷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3권 제2호, 한국통상정보학회

김종업(2009), 영국의 CCTV 정책: 한계와 딜레마, 지역정보화 통권 제55호 2009년 3월호,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김형훈(2004), 방범감시카메라(CCTV)와 기본권의 관계, 고려대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류시조(1999), 가상공간에 있어서의 프라이버시권리,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 (통권9·10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박도희(2005), 인격권으로서의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법리고찰, 한양법학, 제18권, 한양법학회

박종석(2009), CCTV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구제방안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주상(2006), 방범감시카메라(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7권, 한국민간경비학회

박홍윤(1994), 한국의 통합전산처리체계에서 개인정보프라이버시보호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위논문

박홍진(2006), CCTV 설치의 헌법적 문제점, 법학연구 제22권 제1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배병일(1992), 초상권에 관한 연구, 재산법 연구 제9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백윤철(2009), 개인정보보호법제의 최근 입법동향 및 과제, 토지공법연구 제43권 제2호, 한국토지공법학회

성낙인(1999),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영남법학 제5권 제1·2호(통권 제9·10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선제(2004), 정보화시대에서 프라이버시의 변화, 공법연구, 제32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

송갑수(2004), 방범용 CCTV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손영수(1998), 정보화 촉진에 따르는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의 문제에 관한 소고, 한국외대 외법논집 제5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신영진(2008), 공공기관의 CCTV 도입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제11권 제2호, 한국지역정보화학회
신영진(2009),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수준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보화정책 제6권 제1호,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양재영(2001),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의 과제-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운용상황과 과제를 중심으로, 일본연구 제9집, 명지대학교부설 일본문제연구소
이민영(2006), CCTV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적 쟁점, 전자정부법제연구 제1권 제2호, 행정자치부
_____(2006), CCTV 규제의 현황과 그 시사점, 정보통신정책 제18권 제12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봉림(2008), 프라이버시권과 개인정보보호권, 법학연구 제24권 제3호,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상원·박윤규(2006), 방범용 CCTV의 운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2집, 한국경찰학회
이상원·이승철(2005), 경찰CCTV 운용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10집, 한국경호경비학회
이승철, (2010),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이영화(2004), 정보기술 발달과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공법연구 제32권 제5호, 한국공법학회
이인호(2003), 전자정부에서 정보프라이버시의 실현 과제,「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이종석(2007), 방범용 CCTV의 활용에 따른 기본권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철호(2005), CCTV와 인권, 아-태공법연구 제13권, 아세아태평양공법학회
이희성(2001), 작업장내에서의 전자메일 및 CCTV의 감시와 근로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법학연구 제18집,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장영민(1996), 정보통신망발전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형사정책연구 제7권 제2호, 형사정책연구원
정영화(2000),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에 관한 연구,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정태호(2008), CCTV감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에 대한 헌법적 평가, 헌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한국헌법학회
최갑선(1995), 자유권적 기본권의 침해여부 판단구조 및 판단기준, 「공법학의 현대적 지평」, 심천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박영사
차건상·신용태(2009), CCTV 설치 증가에 따른 개인영상정보보호 주요이슈, 정보과학회지 제27권 제12호, 한국정보과학회
최승원(2006), 전자감시와 개인정보보호, 법학논집 제11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홍철(2006), 방범용 CCTV의 활용방안: -주민·경찰의 설문조사를 통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분석-,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홍성찬·황인호(2001), 사이버스페이스와 프라이버시권 -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14권 제1호,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황영선(2009), CCTV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환교(1983), 초상권의 헌법론적 고찰, 논문집, 제4권, 상지대학교

## 2. 외국문헌

David M. O'Brien(1979), Privacy Law and Publicy Policy, New York : Praeger Publishers
EU(2001), Directive 95/46/EC,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on the protection of individuals with regards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the free movement of such data,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Kent Greenawalt(1975), Legal Protections of Privacy, Washington D. C. : U. S. G. P. O.
McCarthy, J. Thomas Thomson(2009), The rights of publicity and privacy, v. 2, West Group

Raymond Wacks(1989), Personal Information-Privacy and the Law, Oxford University Press

Ricky J. Weibe(1993), Privacy and Data(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i State University

Ruth Gavison(1980), Privacy and the Limits of Law, Yale Law Journal, Vol. 89

Solove·Rotenberg(2003), Information Privacy Law, Aspen Publishers, New York

Stephen T. Margulis(1977), Conceptions of Privacy : Current Stays and Next Steps, The Journal of Social Issues, Vol. 33. No. 3

Warren·Brandeis(1990), The Right to Privacy, 4 Harvard Law Review 193.

Weible, R.J.(1993), Privacy and Data(doctoral dissertation), Mississipi State Univ.

3. 기 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do 대법원 판례검색

http://www.humanrignts. go. kr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court.go.kr 대법원 홈페이지

http://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npa.go.jp 일본 경찰청 홈페이지

http://www.met.police.uk 영국 수도경찰청 홈페이지

BBC News(2008), CCTV boom failing to cut crime, 2008. 5. 16

CCTV News(2009), 사생활 보호를 위한 CCTV 화상정보 보호 강화, 행안부

CCTV 통합관제센터 및 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기준 마련, 2009. 10.

# 부 록

## 1. 목욕시설유형별 CCTV설치에 관한 사후분석(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경우)

**성별 사후분석**

Scheffe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1 |
| 사우나 | 122 | 1.4426 |
| 목욕탕 | 60 | 1.5333 |
| 기타 | 28 | 1.5714 |
| Sig. | | .442 |

Means for groups in homogeneous subsets are displayed.

**화장실 사후분석**

Scheffe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1 |
| 목욕탕 | 122 | .0000 |
| 사우나 | 60 | .0328 |
| 기타 | 28 | .0714 |
| Sig. | | .104 |

**목욕실 사후분석**

Scheffe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1 |
| 목욕탕 | 122 | .0000 |
| 사우나 | 60 | .0164 |
| 기타 | 28 | .0357 |
| Sig. | | .330 |

**찜질방 사후분석**

Scheffe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1 |
| 목욕탕 | 122 | .6311 |
| 사우나 | 60 | 1.3214 |
| 기타 | 28 | 2.6667 |
| Sig. | | .142 |

**모니터 사후분석**

Scheffe

| 종류 | N | Subset for alpha = .05 |
|---|---|---|
| | | 1 |
| 목욕탕 | 122 | .1333 |
| 사우나 | 60 | .2500 |
| 기타 | 28 | .2705 |
| Sig. | | .370 |

## 2. 지역구분과 CCTV설치장소의 교차분석표

**지역과 출입문의 교차표**

| 구분 | | | 출입유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83 | 65 | 148 |
| | | % within 지역 | 56.1% | 43.9%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69.7% | 71.4% | 70.5% |
| | | % of Total | 39.5% | 31.0% | 70.5% |
| | 지방 | Count | 36 | 26 | 62 |
| | | % within 지역 | 58.1% | 41.9%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30.3% | 28.6% | 29.5% |
| | | % of Total | 17.1% | 12.4% | 29.5% |
| Total | | Count | 119 | 91 | 210 |
| | | % within 지역 | 56.7% | 43.3%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56.7% | 43.3%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070(b) | 1 | .791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13 | 1 | .911 | | |
| Likelihood Ratio | .070 | 1 | .791 | | |
| Fisher's Exact Test | | | | .879 | .457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070 | 1 | .792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6.87.

지역과 신발장 교차표

| | | | 신발유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22 | 26 | 148 |
| | | % within 지역 | 82.4% | 17.6% | 100.0% |
| | | % within 신발유무 | 73.9% | 59.1% | 70.8% |
| | | % of Total | 58.4% | 12.4% | 70.8% |
| | 지방 | Count | 43 | 18 | 61 |
| | | % within 지역 | 70.5% | 29.5% | 100.0% |
| | | % within 신발유무 | 26.1% | 40.9% | 29.2% |
| | | % of Total | 20.6% | 8.6% | 29.2% |
| Total | | Count | 165 | 44 | 209 |
| | | % within 지역 | 78.9% | 21.1% | 100.0% |
| | | % within 신발유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78.9% | 21.1%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3.706(b) | 1 | .054 | | |
| Continuity Correction(a) | 3.022 | 1 | .082 | | |
| Likelihood Ratio | 3.542 | 1 | .060 | | |
| Fisher's Exact Test | | | | .063 | .043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3.688 | 1 | .055 | | |
| N of Valid Cases | 209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2.84.

지역과 카운터 교차표

| | | | 카운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76 | 72 | 148 |
| | | % within 지역 | 51.4% | 48.6%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68.5% | 72.7% | 70.5% |
| | | % of Total | 36.2% | 34.3% | 70.5% |
| | 지방 | Count | 35 | 27 | 62 |
| | | % within 지역 | 56.5% | 43.5%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31.5% | 27.3% | 29.5% |
| | | % of Total | 16.7% | 12.9% | 29.5% |
| Total | | Count | 111 | 99 | 210 |
| | | % within 지역 | 52.9% | 47.1%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52.9% | 47.1%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456(b) | 1 | .499 | | |
| Continuity Correction(a) | .274 | 1 | .600 | | |
| Likelihood Ratio | .457 | 1 | .499 | | |
| Fisher's Exact Test | | | | .546 | .301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454 | 1 | .500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9.23.

지역과 화장실 교차표

| | | | 화장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46 | 2 | 148 |
| | | % within 지역 | 98.6% | 1.4% | 100.0% |
| | | % within 화장여부 | 71.6% | 33.3% | 70.5% |
| | | % of Total | 69.5% | 1.0% | 70.5% |
| | 지방 | Count | 58 | 4 | 62 |
| | | % within 지역 | 93.5% | 6.5% | 100.0% |
| | | % within 화장여부 | 28.4% | 66.7% | 29.5% |
| | | % of Total | 27.6% | 1.9% | 29.5% |
| Total | | Count | 204 | 6 | 210 |
| | | % within 지역 | 97.1% | 2.9% | 100.0% |
| | | % within 화장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7.1% | 2.9%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4.095(b) | 1 | .043 | | |
| Continuity Correction(a) | 2.464 | 1 | .116 | | |
| Likelihood Ratio | 3.639 | 1 | .056 | | |
| Fisher's Exact Test | | | | .064 | .064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4.076 | 1 | .044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2 cells (5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77.

지역과 목욕실 교차표

| | | | 목욕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47 | 1 | 148 |
| | | % within 지역 | 99.3% | .7%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71.0% | 33.3% | 70.5% |
| | | % of Total | 70.0% | .5% | 70.5% |
| | 지방 | Count | 60 | 2 | 62 |
| | | % within 지역 | 96.8% | 3.2%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29.0% | 66.7% | 29.5% |
| | | % of Total | 28.6% | 1.0% | 29.5% |
| Total | | Count | 207 | 3 | 210 |
| | | % within 지역 | 98.6% | 1.4%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8.6% | 1.4%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2.018(b) | 1 | .155 | | |
| Continuity Correction(a) | .613 | 1 | .434 | | |
| Likelihood Ratio | 1.790 | 1 | .181 | | |
| Fisher's Exact Test | | | | .209 | .209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2.008 | 1 | .156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2 cells (5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89.

지역과 발한실 교차표

| | | | 발한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40 | 8 | 148 |
| | | % within 지역 | 94.6% | 5.4% | 100.0% |
| | | % within 발한여부 | 71.1% | 61.5% | 70.5% |
| | | % of Total | 66.7% | 3.8% | 70.5% |
| | 지방 | Count | 57 | 5 | 62 |
| | | % within 지역 | 91.9% | 8.1% | 100.0% |
| | | % within 발한여부 | 28.9% | 38.5% | 29.5% |
| | | % of Total | 27.1% | 2.4% | 29.5% |
| Total | | Count | 197 | 13 | 210 |
| | | % within 지역 | 93.8% | 6.2% | 100.0% |
| | | % within 발한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3.8% | 6.2%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532(b) | 1 | .466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73 | 1 | .678 | | |
| Likelihood Ratio | .508 | 1 | .476 | | |
| Fisher's Exact Test | | | | .533 | .328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529 | 1 | .467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1 cells (25.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3.84.

지역과 찜질방 교차표

| | | | 찜질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86 | 29 | 115 |
| | | % within 지역 | 74.8% | 25.2%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76.1% | 72.5% | 75.2% |
| | | % of Total | 56.2% | 19.0% | 75.2% |
| | 지방 | Count | 27 | 11 | 38 |
| | | % within 지역 | 71.1% | 28.9%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23.9% | 27.5% | 24.8% |
| | | % of Total | 17.6% | 7.2% | 24.8% |
| Total | | Count | 113 | 40 | 153 |
| | | % within 지역 | 73.9% | 26.1%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73.9% | 26.1%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206(b) | 1 | .650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58 | 1 | .810 | | |
| Likelihood Ratio | .203 | 1 | .652 | | |
| Fisher's Exact Test | | | | .673 | .399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204 | 1 | .651 | | |
| N of Valid Cases | 153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9.93.

지역과 수면실 교차표

| | | | 수면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지역 | 수도권 | Count | 105 | 8 | 113 |
| | | % within 지역 | 92.9% | 7.1%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76.1% | 66.7% | 75.3% |
| | | % of Total | 70.0% | 5.3% | 75.3% |
| | 지방 | Count | 33 | 4 | 37 |
| | | % within 지역 | 89.2% | 10.8%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23.9% | 33.3% | 24.7% |
| | | % of Total | 22.0% | 2.7% | 24.7% |
| Total | | Count | 138 | 12 | 150 |
| | | % within 지역 | 92.0% | 8.0%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2.0% | 8.0%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527(b) | 1 | .468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42 | 1 | .706 | | |
| Likelihood Ratio | .496 | 1 | .481 | | |
| Fisher's Exact Test | | | | .491 | .338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524 | 1 | .469 | | |
| N of Valid Cases | 15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1 cells (25.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96.

## 3. 성별과 CCTV설치장소의 교차분석표

성별과 출입문 교차표

| 구분 | | | 출입유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60 | 48 | 108 |
| | | % within 성별 | 55.6% | 44.4%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50.4% | 52.7% | 51.4% |
| | | % of Total | 28.6% | 22.9% | 51.4% |
| | 여탕 | Count | 59 | 43 | 102 |
| | | % within 성별 | 57.8% | 42.2%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49.6% | 47.3% | 48.6% |
| | | % of Total | 28.1% | 20.5% | 48.6% |
| Total | | Count | 119 | 91 | 210 |
| | | % within 성별 | 56.7% | 43.3% | 100.0% |
| | | % within 출입유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56.7% | 43.3%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026(b) | 1 | .872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00 | 1 | 1.000 | | |
| Likelihood Ratio | .026 | 1 | .872 | | |
| Fisher's Exact Test | | | | 1.000 | .504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026 | 1 | .873 | | |
| N of Valid Cases | 209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1.47.

성별과 카운터 교차표

| 구분 | | | 카운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52 | 56 | 108 |
| | | % within 성별 | 48.1% | 51.9%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46.8% | 56.6% | 51.4% |
| | | % of Total | 24.8% | 26.7% | 51.4% |
| | 여탕 | Count | 59 | 43 | 102 |
| | | % within 성별 | 57.8% | 42.2%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53.2% | 43.4% | 48.6% |
| | | % of Total | 28.1% | 20.5% | 48.6% |
| Total | | Count | 111 | 99 | 210 |
| | | % within 성별 | 52.9% | 47.1% | 100.0% |
| | | % within 카운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52.9% | 47.1%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005(b) | 1 | .943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00 | 1 | 1.000 | | |
| Likelihood Ratio | .005 | 1 | .943 | | |
| Fisher's Exact Test | | | | 1.000 | .631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005 | 1 | .944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2 cells (50.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91.

**성별과 목욕실 교차표**

| 구분 | | | 목욕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105 | 3 | 108 |
| | | % within 성별 | 97.2% | 2.8%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50.7% | 100.0% | 51.4% |
| | | % of Total | 50.0% | 1.4% | 51.4% |
| | 여탕 | Count | 102 | 0 | 102 |
| | | % within 성별 | 100.0% | .0%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49.3% | .0% | 48.6% |
| | | % of Total | 48.6% | .0% | 48.6% |
| Total | | Count | 207 | 3 | 210 |
| | | % within 성별 | 98.6% | 1.4% | 100.0% |
| | | % within 목욕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8.6% | 1.4%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154(b) | 1 | .694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11 | 1 | .915 | | |
| Likelihood Ratio | .154 | 1 | .694 | | |
| Fisher's Exact Test | | | | .779 | .457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154 | 1 | .695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6.31.

**성별과 찜질방공용부분 교차표**

| 구분 | | | 찜질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65 | 16 | 81 |
| | | % within 성별 | 80.2% | 19.8%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57.5% | 40.0% | 52.9% |
| | | % of Total | 42.5% | 10.5% | 52.9% |
| | 여탕 | Count | 48 | 24 | 72 |
| | | % within 성별 | 66.7% | 33.3%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42.5% | 60.0% | 47.1% |
| | | % of Total | 31.4% | 15.7% | 47.1% |
| Total | | Count | 113 | 40 | 153 |
| | | % within 성별 | 73.9% | 26.1% | 100.0% |
| | | % within 찜질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73.9% | 26.1%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3.641(b) | 1 | .056 | | |
| Continuity Correction(a) | 2.971 | 1 | .085 | | |
| Likelihood Ratio | 3.648 | 1 | .056 | | |
| Fisher's Exact Test | | | | .067 | .042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3.617 | 1 | .057 | | |
| N of Valid Cases | 153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18.82.

**성별과 수면실 교차표**

| | | | 수면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74 | 6 | 80 |
| | | % within 성별 | 92.5% | 7.5%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53.6% | 50.0% | 53.3% |
| | | % of Total | 49.3% | 4.0% | 53.3% |
| | 여탕 | Count | 64 | 6 | 70 |
| | | % within 성별 | 91.4% | 8.6%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46.4% | 50.0% | 46.7% |
| | | % of Total | 42.7% | 4.0% | 46.7% |
| Total | | Count | 138 | 12 | 150 |
| | | % within 성별 | 92.0% | 8.0% | 100.0% |
| | | % within 수면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92.0% | 8.0%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058(b) | 1 | .809 | | |
| Continuity Correction(a) | .000 | 1 | 1.000 | | |
| Likelihood Ratio | .058 | 1 | .810 | | |
| Fisher's Exact Test | | | | 1.000 | .522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058 | 1 | .810 | | |
| N of Valid Cases | 15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5.60.

성별과 모니터 교차표

| 구분 | | | 모니여부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83 | 25 | 108 |
| | | % within 성별 | 76.9% | 23.1% | 100.0% |
| | | % within 모니여부 | 49.7% | 58.1% | 51.4% |
| | | % of Total | 39.5% | 11.9% | 51.4% |
| | 여탕 | Count | 84 | 18 | 102 |
| | | % within 성별 | 82.4% | 17.6% | 100.0% |
| | | % within 모니여부 | 50.3% | 41.9% | 48.6% |
| | | % of Total | 40.0% | 8.6% | 48.6% |
| Total | | Count | 167 | 43 | 210 |
| | | % within 성별 | 79.5% | 20.5% | 100.0% |
| | | % within 모니여부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79.5% | 20.5%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975(b) | 1 | .323 | | |
| Continuity Correction(a) | .666 | 1 | .414 | | |
| Likelihood Ratio | .979 | 1 | .322 | | |
| Fisher's Exact Test | | | | .393 | .207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970 | 1 | .325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20.89.

성별과 CCTV설치유무와의 교차표

| 구분 | | | 설치유무 | | Total |
|---|---|---|---|---|---|
| | | | 없음 | 있음 | 없음 |
| 성별 | 남탕 | Count | 30 | 78 | 108 |
| | | % within 성별 | 27.8% | 72.2% | 100.0% |
| | | % within 설치유무 | 48.4% | 52.7% | 51.4% |
| | | % of Total | 14.3% | 37.1% | 51.4% |
| | 여탕 | Count | 32 | 70 | 102 |
| | | % within 성별 | 31.4% | 68.6% | 100.0% |
| | | % within 설치유무 | 51.6% | 47.3% | 48.6% |
| | | % of Total | 15.2% | 33.3% | 48.6% |
| Total | | Count | 62 | 148 | 210 |
| | | % within 성별 | 29.5% | 70.5% | 100.0% |
| | | % within 설치유무 | 100.0% | 100.0% | 100.0% |
| | | % of Total | 29.5% | 70.5% | 100.0% |

Chi-Square Tests

| | Value | df | Asymp. Sig. (2-sided) | Exact Sig. (2-sided) | Exact Sig. (1-sided) |
|---|---|---|---|---|---|
| Pearson Chi-Square | .326(b) | 1 | .568 | | |
| Continuity Correction(a) | .176 | 1 | .675 | | |
| Likelihood Ratio | .326 | 1 | .568 | | |
| Fisher's Exact Test | | | | .650 | .337 |
| Linear-by-Linear Association | .324 | 1 | .569 | | |
| N of Valid Cases | 210 | | | | |

a Computed only for a 2x2 table

b 0 cells (.0%) have expected count less than 5. The minimum expected count is 30.11.

# 민간부문 CCTV 설치 및 운영 실태조사

(100-842) 서울 중구 무교동길 41 금세기빌딩 (을지로 가 16)

발 행 일 : 2010. 11

발 행 인 : 현 병 철

발 행 처 : 국가인권위원회

전　　화 : 02) 2125-9759　FAX : 02) 2125-9733

U　R　L : http://www.humanrights.go.kr

ISBN 000-00-0000-000-0